

2010 연차보고서

2011.3

『2010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08년 2월에 개원한 이래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정책 수립 그리고 국민경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년에는 보험업계 및 정책당국의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독립법인으로 출범함으로써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다소 침체되었던 보험산업은 FY2010 접어들어 다양한 제도적 대응 및 경영 선진화 조치를 취하면서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생명보험산업은 저축·투자형 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산업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시장 포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심각한 수지 악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연구원은 보험업계가 직면한 현안 과제는 물론 미래 지향적인 발전 과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차보고서는 보험연구원의 이러한 노력을 기초로 거둔 FY2010 연구성과와 FY2011 연구과제 계획 등을 포함하는 모든 연구활동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금융·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FY2010의 사업목표에 따라 분류된 연구성과 그리고 금융·보험 이슈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효과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 지원, 보험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 신뢰 제고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FY2011에 보험연구원이 수행할 주요 연구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이 FY2011 사업목표로 정한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보험산업 성장 비전 구축과 경쟁력 강화”, “소비자 보호 및 규제의 선진화”,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와 관련된 연구의 계획과 주요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보험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관련 활동입니다. 등재학술지인 “보험금융연구” 및 보험소비자의 니즈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등의 정기간행물 내용과, 보험·금융 산업과 관련된 세미나 및 공동연구 등 주요 대내외 활동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보험연구원의 일반 현황으로 연구조직과 각 연구실의 주요 연구영역 및 기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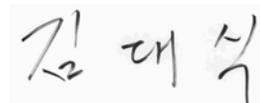
FY2011에도 전년에 이어 글로벌 금융규제의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속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금융부문의 정책적 대안제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험시장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퇴직연금시장에서 타 금융권과의 경쟁, 리스크 중심 경영 및 규제 강화, 보험 소비자 보호 및 신뢰의 문제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국내외 경영 및 규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경영 및 정책적 현안 이슈의 해결책 제시와 더불어 보험산업의 장기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및 사회변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구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장기 발전을 뒷받침할 기초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FY2011부터는 고령화 관련 연구와 보험산업의 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령화에 대한 심층 연구와 보험산업의 지속 발전 방안은 현안 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지속발전 및 국가 경쟁에 대한 기여를 위해 보험연구원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연구자원을 투입해야 할 영역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험연구원의 노력이 보험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보험업계의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보험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은 심도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2011년 3월

보험연구원장 김 대 식



I . FY2010 주요 연구

1. 금융·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14 201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24 생명보험회사의 생산성 변화 분석
- 25 자동차보험 성장원인 분석과 시사점(2000년대를 중심으로)
- 26 출구전략 추진에 따른 보험산업에의 영향 및 과제
- 27 저소득계층의 보험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
- 28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유기증권 투자 성과와 시사점
- 29 퇴직연금 세제의 종합검토와 개선방향
- 30 개인생명보험의 신계약 동향과 시사점
- 31 퇴직연금 지급보장체계 특징비교 및 개선과제

2. 보험회사 지속성장 기반 구축

- 3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역할 변화 연구
- 36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39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
- 41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3. 효과적인 경영전략 수립 지원

- 44 생명보험설계사의 활동 및 만족도 분석
- 46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49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52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영방안
- 55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연구
- 58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61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4. 보험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64 일반공제 규제의 합리화 방안
- 67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70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개선방안

5. 금융·보험 이슈 연구

보험금융연구

- 74 Long Memory and Structural Breaks in Extreme Value Estimators
- 74 개인의 민영건강보험과 개인연금 선택 간의 관계연구
- 75 시장금리의 변화가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76 Obesity and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 77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유인 검토
- 79 The Asset Price and Investment Technology
- 79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자 특성분석에 따른 가입강화 방안 연구
- 80 거시경제변수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 81 생명보험 정산거래와 한국 보험시장에서의 가용성

CEO Report

- 83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84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86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87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88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89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91 영국의 공동계정(General Retail Pool) 운영체계

KIRI Weekly

- 93 인도 보험시장의 현황 및 시사점
- 93 손해보험 부채의 리스크 마진
- 94 거시경제지표로 본 기준금리 인상 국가의 특징 및 시사점
- 95 DB형 퇴직연금 적립규제동향 및 시사점
- 95 행동재무론 관점에서 본 401(k)의 디폴트옵션 정책과 시사점
- 96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 97 금융위기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 97 자동차보험의 비용감소를 통한 손해율 개선 방안
- 98 평판리스크와 윤리경영의 역할
- 99 일본 보험법 시행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99 보험사기 용인도 분석에 의한 보험사기 방지방안

- 100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에 대한 논의
- 101 CDS와 DCDS, “동일위험, 동일규제” 의 원칙 적용해야
- 101 미국·일본의 지급여력제도 변화와 시사점
- 102 흡소핑 보험판매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103 유럽연합 경쟁법 상의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과 시사점
- 103 법률비용보험의 특성과 운영체계 구축방향
- 104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완 필요성
- 105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과 손해를 증가율의 관계 검토
- 105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옵션 현황 및 시사점
- 106 자동차보험산업 손해를 불균형 원인과 개선방안
- 107 미국 금융감독체계 개편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107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108 IFRS 등 환경변화가 손해보험 준비금에 미치는 영향
- 109 FY2009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성과 분석 및 과제
- 110 자동차보험 위장환자 유발요인 및 대응방안
- 110 금융소비자교육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 111 유럽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시장평가와 시사점
- 112 미국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 변화의 특징 및 시사점
- 112 중도인출금보증 변액연금보험의 현황과 시사점
- 113 최근 OECD국가의 퇴직연금시장 변화와 시사점
- 114 상조시장 관련 보험산업의 역할과 시사점
- 114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시장 참여동향 및 시사점
- 115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 초안의 공개와 향후 과제
- 115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 정책
- 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
- 117 보험산업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국제기구의 논의와 시사점
- 118 기업의 손해보험 구매와 기업가치의 관계
- 118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헤지 금융기법과 활용
- 119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120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광고 규제의 개선 방향
- 121 주요국 재보험감독기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 121 은행의 BIS 3와 보험업 건전성 규제
- 122 국내외 지급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특징 및 시사점
- 123 개인정보 유출리스크 증대에 따른 안전망 구축 필요성
- 123 유럽 Solvency II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 124 미국의 재보험규제 변화와 시사점
- 125 퇴직연금제도의 적합성 원칙 적용 방향

- 126 손해보험회사 현금 보유수준 검토 및 시사점
- 126 IAIS의 공통감독체계(ComFrame) 논의와 시사점
- 127 보험소비자 보호 중심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
- 128 현물지급형 상호보험과 상호서비스 제공방안
- 128 생명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주간포커스

- 130 남유럽 재정위기 추이 및 전망
- 130 미국 금융개혁법 상원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131 생보사 상장으로 살펴본 보험사 주식가치 평가 방식
- 131 물가연동국채 재발행 배경과 시사점
- 131 보험회사에 대한 은행세 부과 여부 검토
- 132 공동채권제도의 개념 및 전망
- 132 단기 외화차입 규제에 대한 소고
- 132 IFRS 시행과 비상위험준비금
- 132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및 인적자본 축적
- 133 북부 및 동부 유럽국가의 은행 민영화 사례
- 133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요인별 분석 및 시사점
- 133 공동보험제(coinsurance)의 특징 및 시사점
- 134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에 대한 소고
- 134 최근 가계부채 우려와 문제점
- 134 BIS의 거시건전성 체계 구축 내용
- 135 남유럽 국가의 과도한 공적연금 의존과 재정위기
- 135 자영업자수의 구조적 감소 추세에 대한 소고
- 135 자산재평가와 기업가치
- 136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 공개초안의 내용과 의미
- 136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유형 및 특징
- 136 ETF시장의 성장과 향후 과제
- 137 타카풀 시장의 최근 동향 및 진출 전략
- 137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소고
- 137 FY2009 국내 손해보험사와 외국계 손해보험사의 경영성과 비교
- 137 일본은행의 주가 금융완화조치 내용 및 시사점
- 138 커버드본드의 특징 및 전망
- 138 BCBS,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138 EU의 금융감독 개혁 방향
- 139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보험회사에의 시사점

- 139 생명보험 전매거래와 거래당사자 보호
- 139 주요국 환율전쟁에 대한 소고
- 140 교통법규 위반 건수 감소대책 필요성
- 140 Solvency II와 유럽 보험산업
- 140 미국의 제2차 양적완화조치와 G20 정상회의
- 141 외환보유액 확대와 문제점
- 141 G20 정상회의 환율 합의 이후의 과제
- 141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은 재고되어야
- 141 미소금융의 신용등급 적용에 대한 소고
- 142 금융회사 지배구조 논의
- 142 예금보험기금내 공동계정 신설 논의에 대한 소고
- 143 거시건전성부담금 개요 및 기대효과
- 143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민관 협력 필요성
- 143 EU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 144 국가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 144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향후과제
- 144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에 대한 소고
- 144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제반영향
- 145 환율의 사회적 비용과 책임

Ⅱ . FY2011 주요 연구계획

1. 보험산업 성장 비전 구축과 경쟁력 강화

- 150 보험상품 유통채널구조 평가와 개선방안
- 151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 연구
- 152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개선방안
- 153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방안
- 154 FY2011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2.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 156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보험회사 역할 제고 방안
- 157 퇴직연금 지배구조 체계 개선방안 연구
- 158 보험산업 비전 2020
- 159 은퇴시장에 관한 종합 연구

3. 소비자 보호 및 규제의 선진화

- 162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방안 연구
- 163 재보험거래의 안전성 제고방안 연구
- 164 보험회사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165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조화방안 연구
- 166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연구

4.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168 현금흐름방식 보험가격 산출이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 169 보험산업의 RBC제도 발전방향 연구
- 170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보험요율제도 도입 연구
- 171 보험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Ⅲ. FY2010 연구 관련 활동

- 174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 175 2.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176 3.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 177 4. 보험·금융 산업 연구 관련 세미나
- 179 5.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 179 6. 보험·금융 도서 정보제공

Ⅳ. 일반 현황

- 182 1. 경영비전
- 182 2. 연혁
- 183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184 4. 임직원 현황
- 184 5.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 188 6.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 2010년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연구보고서

경제·금융·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시

정책/경영보고서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경영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

조사보고서

금융·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상품·정책·시장 측면의 조사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보험금융연구(구 보험개발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3월, 7월, 11월 연3회 발간

CEO Report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주간이슈·포커스

웹 주간지 『KiRi Weekly』의 일부분으로 경제·금융·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I.

FY2010 주요 연구

금융·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보험회사 지속성장 기반 구축
효과적인 경영전략 수립 지원
보험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 신뢰 제고
금융·보험 이슈 연구

1

Chapter

금융·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201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생명보험회사의 생산성 변화 분석
- 자동차보험 성장원인 분석과 시사점(2000년대를 중심으로)
- 출구전략 추진에 따른 보험산업에의 영향 및 과제
- 저소득계층의 보험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
-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유가증권 투자 성과와 시사점
- 퇴직연금 세제의 종합검토와 개선방향
- 개인생명보험의 신계약 동향과 시사점
- 퇴직연금 지급보장체계 특징비교 및 개선과제

201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 정책보고서

14

연구배경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선진국 민간부문의 회복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 심화, 남유럽 및 선진국의 재정적자 확대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경제도 수출의 호조와 내수의 개선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세계경기의 둔화 가능성과 더불어 주택경기의 침체, 가계부채의 부담 등 위협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의 지속을 낙관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 보험산업은 이러한 경제적 여건변화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규제의 강화 추세, 소비자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보험업법의 본격적 시행, 보험상품의 가격공시 강화,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RBC제도의 의무 시행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경제 및 제도적 환경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국내외 경제 및 보험시장에 대한 동향을 기초로 내년도 실물경제·금융 및 보험시장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주요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경제전망 글로벌 금융시장은 남유럽의 국가부도위험이 완화되고, 주요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세계경제의 경상수지 불균형, 경기회복 속도의 격차 등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되어 주요국 간 환율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게 될 경우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남유럽의 과다채무국에서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 심화, 유로통화체제의 안전성 저해 등으로 유럽발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다채무국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한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도 세계경기의 회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주요국의 양적완화정책 지속으로 확대된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의 빠른 경기 회복에 의한 금리인상과 환율상승에 대한 기대로 금리 및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캐리트레이드 자금이 신흥국에 유입되면서 자산가격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의 엔진인 신흥국의 버블이 붕괴 될 경우 세계경제는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11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수출감소와 경기부양책 효과의 소진으로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불확실성의 잔존으로 2011년 세계경제는 신흥국의 견조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볼 때, 미국은 가계 소비와 기업투자 등 민간부분의 자생적 회복 능력이 취약한 상태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유로지역도 재정긴축 본격화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증가세 약화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세계경제의 성장속도 하락으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선진국 중 둔화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경제는 고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통화긴축과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유지되면서 경제성장률도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선진국의 경기부진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며, 정부의 긴축재정이 산업생산 등 내수부분의 활력을 다소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빠른 성장에 따른 경기과열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긴축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수출 증가세의 둔화로 성장 동력이 예년보다 약화될 전망이다.

국내 금융시장도 유럽발 재정위기로 변동성이 증가하였으나, 경기회복의 지속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 개선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간 신용차별화가 지속되면서

회사채의 등급 간 스프레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실물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국면으로 진입하였으나, 금년 초부터 경기선행지수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어 경기회복의 둔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수출호조의 지속과 내수의 호전으로 2010년 1/4분기 8.1%의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한 실질 GDP증가율은 2/4분기와 3/4분기 각각 7.2%와 4.5%를 나타내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향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로 인한 수출 및 내수 성장세 약화 등으로 2010년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1년에는 지속되는 수출감소와 함께 설비투자의 하락압력과 경기부양책 효과의 소진으로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고용여건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회복세 둔화로 인해 취업자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남유럽발 재정위기 우려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남북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일시적으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확대 등으로 점진적 하락이 전망된다. 다만, 글로벌 불균형의 심화, 재정적자의 장기화, 글로벌 유동성의 과잉 공급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

보험산업은 보험업법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연금관련 세제혜택 확대, 확보법 개정, 자동차 보험 및 건전성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요인이 확산될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압력의 가중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국고채금리(3년)와 회사채(3년, AA-)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및 환율하락 압력에 따른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주요국들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채권투자환경으로 지속적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보험제도 변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경제적 여건 속에서 보험산업은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 우선은 소비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2011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완전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독립채널의 비중과 역할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의 의무화하는 등 영업기준이 강화되었다. 판매과정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 부과, 적합성 원칙 적용,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공시 등이 요구된다.

반면 상품개발자의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여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부수업무 영위 및 자산운용 측면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다만, 상품개발 관련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회사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2010년 10월부터 상품공시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었던 퇴직급여제도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 12월 31일 이후 퇴직보험·신탁에 대한 추가불입이 금지됨에 따라 2011년에는 퇴직보험·신탁의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마무리될 것이다. 세제혜택 측면에서도 그동안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제공했던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2011년 1월부터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제공했던 45%의 퇴직소득공제 비율을 40%로 축소하여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있다.

화재보험과 관련해서는 특수건물에 한정되

어 있는 의무가입 대상이 공유건물·운수시설 및 10개 다중이용업소로 확대되는 화재보험법 개정안이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차량수리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Deductible) 제도가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Coinsurance)으로 전환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며,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확대된다.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였으나 2011년 4월부터는 지급여력제도를 폐지하고 RBC제도만 운영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에서는 2010년 9월부터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시범운영」을 실시기로 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에 의한 RBC 요구자본의 산출이 가능하다. 내부모형 승인기준(시안)은 승인신청, 예비점검, 임점검, 승인여부 결정, 사후관리의 절차를 따라 운영되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한 후 2011년 하반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2011년에는 국제회계기준(IFRS) 1단계가 도입되어 상품 구분, 부채 적정성 평가, 손해조사준비금 제도 도입, 재보험자산 구분 계상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자본 분류 등 보험회계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산업

전 망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경기회복과 함께 유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고 보험회사들의 신상품을 통한 보장성보험시장 확대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면서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을 부가한 상품 통합화와 새로운 유형의 암보험 출시 등과 같은 신상품 개발을 통해 전통적인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품전략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기존 보유계약을 통한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패턴이 지속되면서 성장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FY2011 보험산업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 둔화로 인해 성장세는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10.6%의 고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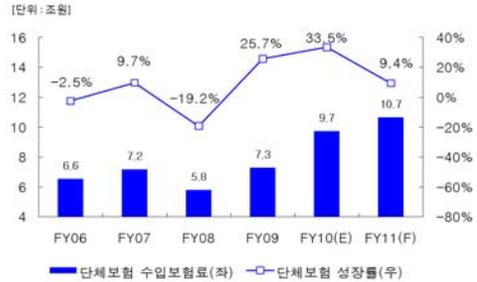
저축성보험은 일반저축성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변액저축성보험 수요 또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5%의 견조한 성장이 전망된다.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시중금리 상승이 예상되나 불확실한 경제환경으로 인해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일반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여건 개선으로 전반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연금수요 확대에 따른 변액연금의 고성장세도 유지될 전망이다.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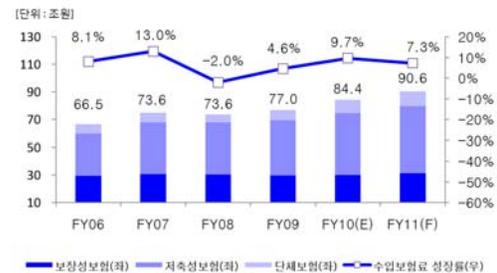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추가불입 및 세제혜택이 종료(2010년 말)되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증가하면서 9.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업권 간 경쟁격화로 생명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이상과 같은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전망을 종합하면, FY2011 생명보험산업은 개인보험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단체보험이 고성장하면서 7.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지속성장과 보장성보험의 회복에 따라 7.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보험은 개인보험보다 높은 9.4%의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단체보험시장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퇴직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권의 신계약 유치 규모에 따라 전체 수입보험료 성장률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에 해당하는 상해, 질병, 종합보험은 보험 가입대상 인구 감소와 업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초회보험료 성장은 불투명하지만, 계속보험료가 견조하게 유입되면서 두 자릿수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금리의 인상은 있겠지만 국내외적 불안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인상폭이 제한적일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성보험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물보험도 화보법 개정효과가 시장수요로 이어지면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FY2011 장기손해보험은 18.7%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E)	FY2011(F)
원수보험료	136,802	163,436	188,829	232,988	282,848	335,740
성장률	21.5	19.5	15.5	23.4	21.4	18.7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은 관련 제도 개정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장수요에 영향을 끼치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퇴직보험은 큰 폭의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가입과 기존가입자들

의 가입액이 증가하면서 50% 가까운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권의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시장 자체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도에 이어 견조한 성장률을 시현할 것이지만, 타 금융업권 대비 경쟁력의 비교열위, 대기업의 퇴직연금 전환 완료 등은 성장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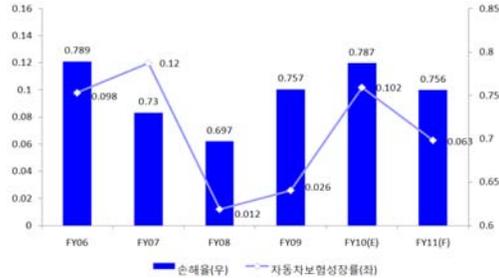
개인연금, 퇴직연금·보험 원수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E)	FY2011(F)
개인보험료	7,975	9,995	12,853	17,841	25,191	37,434
연금성장률	14.3	25.3	28.6	38.8	41.2	48.6
퇴직보험료	7,868	10,391	10,129	16,799	23,872	31,200
전체성장률	2.1	32.1	-2.5	65.8	42.1	30.7

자동차보험시장은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증가세 하락 및 직판시장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로 6%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가격경쟁의 심화, 정비수가 인상, 가처분소득의 증가 및 휴일증가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의 영향으로 75.6%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만, 손해율은 최근 정책당국에서 마련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의 영향에 따라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보험 성장률 및 손해율 전망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의 수요 증가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성장세 둔화 및 요율인하에 따른 여파로 전년 대비 4.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보험은 화보법 개정으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되겠지만, 제도 변화의 효과가 장기 재물보험과 특종보험의 종합보험으로 분산되면서 시장의 침체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상보험은 전년도 기저효과와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보험은 신용보증의 통신관련 부문 실적호조에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와 건설경기 침체가 이행보증 실적을 위축시키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특종보험은 의료비 상승과 기업의 복리후생 확대 분위기에 따라 상해보험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나타내겠지만, 경기의 성장둔화에 따라 성장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E)	FY2011(F)
화재	보험료	3,132	3,075	2,835	2,763	2,584	2,553
	성장률	-3.4	-1.8	-7.8	-2.5	-6.5	-1.2
해상	보험료	6,324	6,518	8,507	8,049	7,590	7,537
	성장률	19.9	3.1	30.5	-5.4	-5.7	-0.7
보증	보험료	11,427	9,939	11,529	12,287	12,803	13,264
	성장률	13.5	-13.0	16.0	6.6	4.2	3.6
특종	보험료	24,986	28,371	30,901	35,371	38,448	41,062
	성장률	9.1	9.9	8.9	14.5	8.7	6.8
합계	보험료	46,692	47,904	53,771	58,470	61,425	64,416
	성장률	10.9	2.6	12.2	8.7	5.1	4.9

이상과 같은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에 대한 전망을 종합하면, 손해보험산업은 FY2011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경기둔화로 인한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의 저성장, 장기성 손해보험의 성장세 위축으로 16.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장기성 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손해보험 전체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FY2011(F)	404,374	21.8	131,462	6.3	64,416	4.9	600,252	16.1

주 : 장기성 보험은 장기손해보험과 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을 합한 수치임.

보험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변화 속에서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환경변화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험산업 종합

FY2011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10.6%의 성장을 이어가겠으나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 둔화로 인해 성장세는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 : 총 보험료/경상GDP)는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성장세가 경상GDP의 성장세를 상회하면서 12.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 침투도는 전년도에 이어 7.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보험 침투도는 4.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침투도 전망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E)	FY2010(F)
생명보험	7.2	7.6	7.2	7.0	7.2	7.2
손해보험	3.2	3.4	3.7	4.0	4.4	4.8
전 체	10.4	11.0	10.9	11.1	11.6	12.0

FY2011의 국민 1인당 보험료인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30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의 보험밀도는 각각 185만 8천원, 122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6%, 15.8%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보험료 전망

(단위 : 천 원)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E)	FY2011(F)
생명보험	1,376	1,550	1,513	1,580	1,727	1,858
손해보험	613	701	771	899	1,058	1,225
전 체	1,988	2,251	2,285	2,478	2,785	3,074

주 : 인구는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장래추계인구로 2006년 11월 자료를 사용함.

주요 대응과제

보험산업의 지표들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경제환경변화와 함께 제도적 변화에도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보험가입률과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침투도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이 얼마나 힘겨운 도전일지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성장률과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퇴직연금 시장이 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무건전성 강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자산운용 및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등은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중요성을 확대시킬 것이다. 당장은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에 대한 영업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장변화에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주요국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퇴직연금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험회사가 절대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건강보험상품과 연금상품을 연계하는 등 해외 보험회사들의 경쟁전략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의 고령화는 손해보험산업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성장 둔화를 통해 보험수요를 억제하고 인구감소를 통해 잠재 보험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손해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은 손해율 예측이 어렵고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비 증가, 정책적인 변화와 같은 외부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는 금융기법이 부재하다. 그러므로 언더라이팅, 프라이싱(pricing) 및 상품개발 각각의 기능들이 서로 연계되어 리스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시장에 제공하는 기회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소득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므로 이 두 가지 기능을 연계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리스크 중심의 경영 및 재무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경영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투자 및 보험영업 구조가 금리 및 거시경제변수 충격에 민감해지고 있어 외부충격에 대응한 리스크 중심의 경영이 요구된다. 2011년에는 국제회계기준 1단계가 국내에 도입되고 향후 2단계 최종안이 마련되면 국내에 적용될 예정이므로 개별 보험회사는 실무 적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1단계 도입 시 부채적정성 평가, 손해조사준비금, 미경과보험료 평가 등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할 부채 규모 파악 및 준비금 부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 체계가 점진적으로 SolvencyII로 이행할 것이므로 개별 보험회사는 자사의 자본여력을 감안하여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통합하여 강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국내 보험산업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미 201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에서도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관련 제도 정비 및 내부통제를 통해 변화된 법·규제를 적극 반

테마진단

생명보험회사의 생산성 변화 분석

황진태(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0년 봄호

생명보험산업은 외환위기, 방카슈랑스, 카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일련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구조적 변화과정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감소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크게 감소하는 등 경영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본고는 외환위기 이후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투입과 산출의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생산성 분석을 행함으로써 효율성 관련 변화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자료포락분석(DEA)의 거리함수를 이용하여 기간 간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기술변화와 기술효율성변화로 분해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선정된 산출변수로는 생명보험회사의 초회보험료와 투자영업수익, 투입변수로는 임직원, 설계사, 점포 수를 사용했으며 국고채 5년 금리와 경기동행지수를 경기변동에 따른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분석대상 표본기간은 FY1997~FY2008으로 총 12년간이고 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한 21개의 생명보험회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은 경영효율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환경요인의 악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연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Y2003~FY2007년 동안은 방카슈랑스 판매채널 도입 덕분에 중소형사 및 외국사를 중심으로 경영효율성이 개선되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Y2008년 들어 금융위기로 인한 기술적 환경이 악화되고 경영의 비효율성도 나타나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정리하면 외환위기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기술적 환경의 악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술적 환경과 경영효율성 모두가 악화되면서 생산성이 급락하였다.

따라서 향후 하락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 개선과 함께 투입 및 산출요소 배합, 그리고 효율적인 규모수익 결정, 다변화된 판매채널을 이용한 산출 대비 투입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적 환경을 생명보험산업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새로운 상품개발이나 경영업무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영역 확보 등을 위해 연구개발과 신시장 개척 등을 종합하는 경영전략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한편, 효율적인 투입 및 산출요소의 배합을 위해서는 자사에 적합한 모집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독립채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특정 채널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판매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투입요소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투입요소 단위당 성과가 좋은 채널을 미세조정을 통해 늘려 나감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 성장원인 분석과 시사점(2000년대를 중심으로)

기승도(전문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0년 봄호

자동차보험시장은 1980년대 연평균 26.2%, 1990년대 13.1%씩 성장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연평균 6.8% 성장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보험금원가는 자동차보험료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시장경쟁도 증가 등은 보험료 감소요인(자동차보험시장 억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대수는 2000년대 초반에 연평균 5%씩 성장하다가 이후 약 3%수준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대수 증가율이 자동차보험료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 5.2%p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초 진입규제 완화로 직판 전업사가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하면서 자동차보험시장 경쟁강도는 증가하였다. 기존 보험회사도 직판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직판전업사의 상품에 대응하였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강도는 증가하였고, 직판상품의 시장점유율은 FY2008에 약 18%에 이르게 되었다. 저렴한 직판상품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억제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FY2008 자동차보험료 기준으로 1.8%p 내지 2.7%p의 시장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발생률과 1사고당 손해액 증가는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규모 성장의 원인이 된다. 사고발생률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가효과는 약 1.8%p, 1사고당 손해액은 약 0.4%p 보험료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요인들은 향후에는 자동차보험 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포화상태에 진입하고 있는 자동차대수의 증가율은 인구성장률 둔화 및 경제성장률 둔화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적으로 사고발생률을 줄이려는 노력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고발생률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시장 성장효과도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에 민감한 소비자의 특성 때문에 직판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렴한 자동차보험상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성장률 둔화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시장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면, 가격경쟁 및 시장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경영위험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정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당 보험료가 큰 자기차량손해담보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상품개발’ 및 ‘기계적 고장을 보장해주는 상품개발’과 같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해서 손해보험회사들은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손해율에 부합한 요율적용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전략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출구전략 추진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 및 과제

김대환(연구위원)·최이섭(연구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0년 여름호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불황의 장기화를 우려한 적극적인 통화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구전략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금리인상을 중심으로 한 출구전략은 보험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출구전략과 관련한 최근의 경제적 여건을 금리인상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금리변동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회복 속도, 고용, 가계소득 등 경기후행지표들이 개선되어 출구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경제지표들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리인상은 금융시장의 안정 및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확인된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인상폭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출구전략이 시행되더라도 타 금융권 상품 대비 보험상품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리의 변동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상품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며, 금리와 연계성이 강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경기회복뿐만 아니라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생명보험 상품 중에서는 생존 및 생사혼합보험, 투자형 보험상품의 강세가 유지될 것이며, 손해보험 상품 중 금리와 연계성이 가장 높은 장기성 손해보험의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구전략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해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저축성 보험의 성장에 따라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영업 측면에서는 보험상품이 장기적이고 전통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이차역마진에 대한 부담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고금리에 근거한 경쟁전략은 판매극대화 및 수입보험료의 성장을 유도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경영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유자산을 평균예정이율별 그리고 잔존 만기별로 구분하고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리변동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이차역마진에 대한 가능성, 이차역마진의 규모 및 이차역마진의 해소 가능기간 등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당국은 고금리에 기반한 금융기관들의 과당경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감독을 해야 한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저금리 상황 하에서도 이차역마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므로 모든 보험회사를 포괄하는 일괄적인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각 보험사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는 기업의 자율성과 장기적인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계층의 보험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

유경원(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0년 여름호

금융위기 이후 서민계층의 금융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대출위주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

나 현행 서민금융 지원체제는 가계의 다양한 금융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위험에 대한 대비가 매우 제한적이고 고비용의 사적 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험의 접근용이성이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저소득계층의 보험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액보험사업을 정책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저소득계층의 보험가입 확대는 미시적으로는 저소득계층의 부담 가능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공급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안정 또는 빈곤탈피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확장에 기여한다.

둘째,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보험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

셋째,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제고한다. 즉, 소액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보험의 혜택이 더욱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안정화에 기여한다.

넷째, 보험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소액보험 사업의 활용이 가능하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이들 지역에 적합한 소액보험 상품 공급을 통해 기업이미지 제고와 향후 이들 국가에서의 보험가입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소액보험사업의 현황 및 시장 여건을 검토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의 경우 저소득계층의 보험 니즈는 높으나 낮은 소득으로 인해 실제 가입은 저조한 반면, 공급자는 저소득계층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보험상품 공급을 꺼리고 있어 소액보험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초기 시장조성단계에서는 미소금융재단과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공적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회공헌기금 등의 자원과 연계하여 현재의 소액보험 사업규모를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계층의 보험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소액보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소액보험사업은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하는 소액보험 시장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시장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급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하고 있는 시장접근방식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여기서는 저소득계층도 민영보험의 목표시장이 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의 공급측면에서 사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지원 체계는 소액보험 등의 제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빈곤극복 예방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금융소외 현상 완화를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빈곤층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액대출 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저축과 위험대비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종합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경제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서 더 나아가 적정한 소액보험 상품 개발을 통해 보장과 아울러 자산형성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외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유가증권 투자 성과와 시사점

이경희(전문연구위원)·최원(선임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0년 가을호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2000년대 초반 저금리, 증시침체 등으로 국내 자산운용 환경이 크게 악화되자 이차역마진을 해소하고,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10년 3월 기준으로 22개 생명보험회사 중 81.8%에 달하는 18개사가 해외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해외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운용자산(현·예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대비 해외유가증권 비중은 FY2000 3.8%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점차 확대되어 FY2009에는 8.2%로 높아졌으며 전체 유가증권 대비 비중도 동기간 7.9%에서 12.2%로 높아졌다. 해외유가증권의 투자 지역 분포는 미국이 38.5%로 가장 높고, 역외지역 37.7%, 유럽 22.3%, 아시아 1.5% 순이다. 투자 지역별·

자산 항목별로 볼 때, 미국·채권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유가증권 투자 목적이 국내 저금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고수익 추구보다는 자산부채 매칭을 위한 안정적인 장기채권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해외투자로 인한 수익률은 FY2000 중반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시 마이너스 수익률을 시현하였다. 수익률이 높은 회사는 대체로 리스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유가증권 투자에 비해 감내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Y2000~FY2009 평균 전사 위험조정수익률은 국내유가증권에만 투자하면 4.37%인데 비해 해외유가증권을 편입하면 4.16%로 소폭 낮아져 국제분산투자에 따른 다각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1년 4월부터 RBC제도가 의무 적용되고, 이후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요구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유가증권 투자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해외투자는 제반 제약조건으로 인해 국내투자에 비해 높은 성과를 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유가증권을 보완하는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리스크관리를 위한 ALM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및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현황 및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 세제의 종합검토와 개선 방향

김대환(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0년 가을호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리스크 증대, 개인의 장수리스크 증대 등으로 고령화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OECD 주요국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대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더욱 제고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퇴직 후 연금소득대체율은 국제적 권고수준인 70~80%에 훨씬 못 미치는 45% 수준이며, 특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세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퇴직연금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 및 일본의 퇴직연금 세제체계와 비교·검토한 후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제체계는 적립금 납입단계에서 손금산입(사용자) 또는 소득공제(근로자) 혜택(Exempt)을 부여하고,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비과세(Exempt)를 적용하며,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 과세(Taxed)하는 EET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형태에 따라 손금 산입되는 방법이 상이하다. 즉, DC형 퇴직연금 또는 기업형 IRA에서는 납입한 사용자 부담금 전액이 손금산입되지만, 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세제의 기본적인 방향은 대부분의 주요국처럼 운용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적립금 소득공제 및 연금소득과세 측면에서 볼 때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세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은 개인연금 적립금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있어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보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적립금 수령단계에서도 다른 연금과 구별하지 않고 합산과세를 하고 있어 본인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연금의 급여와 타인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적연금의 급여가 동일하게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은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2011년부터 400만원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소득공제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다. 셋째, 퇴직급여 수령 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연금소득공제 혜택이 900만원에 지나지 않는 반면, 퇴직일시금으로 수령 시 적용되는 공제 비율이 높고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짧은 기간동안 노후소득재원을 소진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현행 퇴직연금 세제체계는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되어 있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저소득계층보다 오히려 불입여력이 있는

고소득 계층에게 혜택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퇴직일시금 관련 세제혜택의 축소·폐지를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세제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른 세제와 혼재되어 있는 퇴직연금 세제체계를 분리하여 주요국처럼 독립적인 세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단계에서 근로자의 자조노력을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적립단계에서 세제혜택을 과감히 증가시킬 필요는 있으나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향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배우자, 특수직역 근로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퇴직연금제도의 틀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어 퇴직연금 세제체계를 계층별로 차등화하여 특정 계층에 세제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생명보험의 신계약 동향과 시사점 -보험종목과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이경희(전문연구위원)·김세중(선임연구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0년 겨울호

보험시장의 수요자들이 신계약 상품 및 채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연납화(Annualize Premium Equivalent)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납화는 월납·2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일시납 등 모든 납입 형태의 보험료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신규 매출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상품 종류는 먼저 보장

성과 금융형으로 대분류하고, 보장성보험은 사망보장과 생존보장, 금융형은 연금과 저축으로 중분류하였다. 판매채널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하고, 대면채널은 다시 설계사, 대리점(GA : general agency), 방카슈랑스로 세분하며, 비대면채널은 전화, 인터넷, 홈쇼핑, 다이렉트 대리점 및 기타로 세분하였다.

개인보험의 전체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볼 때 FY2009 17조 7천억원 수준이며, 분기 기준으로는 FY2010 1분기 4조 1천억 원 수준이다. FY2009 기준 보장성보험의 규모는 7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나 최근 4년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금융형보험은 9조 9천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월납 신계약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연납화 보험료 기준 대면채널 비중은 92% 수준에 달하며, 비대면채널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채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면채널 의존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채널 의존도는 설계사 비중이 60% 수준을 초과하여 가장 높고, 방카슈랑스 15%, 대리점(GA) 14% 순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채널 비중은 FY2009에는 9.0% 수준까지 높아졌으나, FY2010 1분기 들어 7.6% 수준으로 낮아졌다.

연납화 보험료 기준에 따라 FY2006~FY2009 신계약 동향을 보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영역 발굴을 통한 성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생명보험회사들이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적 상품(innovative product) 공급, 보험가

입 대상자 확대 등 신규 영역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신계약 매출 정보를 통해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납입 방법을 조정한 연납화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월납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보험료를 단순 합계한 방식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납화 보험료 기준 데이터를 생성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지급보장체계 특징비교 및 개선과제

김대환(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0년 겨울호

퇴직연금제도는 고용관계에 기초한 노후소득 보장장치지만 목표로 했거나 약속했던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또는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했을 때 해당 근로자들에게 급여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급여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선진국의 지급보장장치 사례 등을 비교한 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사후적 지급보장체계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 보장장치는 사전적 수급권 보장장치와 사후적 수급권 보장장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적 수급권 보장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도산 시의 사후적 수급권 보장장치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먼저,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였을 때 일정한 퇴직급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기업 도산 시 최소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장기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도입된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이하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서도 체불 퇴직금의 최종 3년치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퇴직금 3년치라고 하더라도 지급 사유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 한하며, 여기서 도산이라 함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산으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를 밟은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금액에 월별 상한액을 설정해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급여형제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퇴직금을 기초로 한 최소적립금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적립금의 기준이 적정수준의 60%에 불과해 기업이 도산할 경우 나머지 40%의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국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지급보증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 형태

는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에게 약속한 퇴직급여액을 파산한 기업 대신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다수의 기업들이 사전에 보험료를 지불하여 일부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급여 미적립이란 동질한 위험을 집단화(risk pooling)하여 소수의 파산기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편적인 보험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보험의 원리를 활용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연금지급보증제도를 통해 연금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화하여야 한다. 더불어 보험료 부과 및 감독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급권 보장장치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부수적인 제도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Chapter

2

보험회사 지속성장 기반 구축

-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역할 변화 연구
-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
-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역할 변화 연구

이창우(연구위원)·이기형(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34

연구목적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와 대내외적인 의료환경의 변화는 의료시장의 주체인 의료공급자, 의료수요자, 건강보험자의 행위와 이에 대한 정책적 이슈를 양산하고 있다.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는 의료수요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넘어 의료서비스산업화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의료수요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의료비 증가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당국은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수가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고용인력창출과 고부가가치창출 효과가 있는 의료산업화를 앞당기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료시장의 변화조짐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부문과 비급여 부문을 담보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정책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급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 간 경쟁심화로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역할과 성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시장의 변화와 그 요인을 살펴보고, 민영의료보험의 역할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여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 혹은 의료기술발달 등과 같은 시장변화요인보다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과 국민건강보험의 정책변화가 민영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료시장의 환경변화를 의료비 증가문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과 규모를 제시하고 의료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의료공급자, 의료수요자, 보험자 측면에서 의료시장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의료시장을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과 건강보험의 정책변화에 대해 개괄하였다.

둘째, 의료시장의 환경변화 요인 중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들이 민영의료보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주요 주제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병원경영지원회사, 외국인 환자유치업과 의료시장 신성장동력화의 주제인 유헤쓰케어이다. 각 주제에 대하여 민영의료보험에 미칠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민영의료보험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의료시장의 환경변화 요인 중 건강보험의 정책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정책으로는 간병서비스 비급여화 추진, 국민건

의료시장은 인구고령화, 의료기술발달 등과 같은 시장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과 국민건강보험의 정책변화 등 인위적인 요인에 변화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의료시장 확대 정책과 의료비 관리정책의 변화가 민영실손 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강보험의 상한제, 총액예산제의 도입,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안, 비가격고지제도 등이다. 이들 각 정책 변화에 대해 민영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영의료보험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의료시장의 성장과 의료비 규모의 증가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주는 기회인 신수요 창출과 사업확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장의 성장과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의료비를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의 변화는 의료시장의 성장보다는 의료시장의 재원마련과 공사의 재원부담 범위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를 근거로 민영의료보험이 사적부문 재원의 중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비급여부문에 대한 의료비관리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결론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추진 등 의료부문에 일어나고 있는 정책적 환경변화요인을 조사하고 정책적 변화가 민영실손의료보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영향을 토대로 민영실손의료보험이 대응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경제적 동기를 변화시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부문의 의료비지출을 확대시키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변화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담보범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보장성 변화정책과 의료비관리 정책이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각각의 환경변화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의료비 관리와 신사업에 대한 진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 관리 기능을 가지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신사업에 대한 진출을 위해서는 보험회사만을 배제, 민간부문만 진출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없애고 보험회사도 민간부문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줘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윤성훈(선임연구위원) 외 5명 | 보고서

36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1980년 이전부터 14세 이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총인구가 각각 2017년과 2019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반해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출산율(1.2명)이 OECD 평균 출산율(1.8명)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금융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금융의 기본적인 역할은 금융중개와 위험관리이며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금융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및 가계 위험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첫째,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저출산의 원인은 고용불안정 심화, 주택마련비용 증가,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 다양하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해 이후 세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생산성이 보다 높은 산업에 취업비중이 높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주요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저조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 특징을 보인다.

둘째,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 재정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저축률 하락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인적자본 축적 및 중요소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 재정의 경우 조세수입이 줄어들고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자산수요 변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산수요 변화에 따라 자산공급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가격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금 등 안정적인 노후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저축률 하락에 따라 투자로 연결될 자금이 줄어드는 한편, 위험자산 회피성향 증대, 자산가격의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저출산·고령화가 가계의 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과 노후대비 수준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금융은 가계의 노후소득과 노후 건강을 보장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증거기능 제고를 통해 가계위험과 거시경제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금융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경제전반에 걸친 저출산·고령화 관련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이다.

리는 등 생애주기시설과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은퇴 이후 노후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한편, 노후건강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은퇴 가구의 노후준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경제활동참여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저소득층의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계위험 관리이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의 개혁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의 경우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적연금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0층의 무각출노령연금, 1층의 국민연금, 2층의 퇴직연금,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국민건강보험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고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나 재정 압박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확대 시행과 민영의료보험을 보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급여 대상자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노인빈곤 문제는 사회복지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나 재정부담으로 인해 한계가 있

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축적한 인적자본 및 자산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거시경제위험 관리이다. 먼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출산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고령화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큰 사회서비스 부문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재정경직성이 심화되고 국가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산수요 변화에 금융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수위험과 장기자산운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장기국채시장, 물가연동채권시장, 역모기지제도 등 금융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금융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계위험 관리이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금융은 위험인수자, 위험전자, 위험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스스로 노후건강에 대비하여야 한다. 실손형의료보험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제3자청구제로 전환하는 한편,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른 의료비 관리를 위해 현실적인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간병보험의 경우에도 공사역할 분담 등을 정립해야 하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상품개발을 위해 공적보험의 경험자료에 대한 협조가 요구된다.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라 자산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복잡성, 효율성, 맞춤형 관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복잡성 제고를 위한 보험신탁의 도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판매 인프라 개선,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개선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거시경제위험 관리이다. 금융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금융중개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신용평가능력이 향상되어야 하고, 자본시장에서 우량기업의 상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은행 및 보험 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증권사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금융중개 기능이 개선되면 서비스산업으로서 금융의 경쟁력도 향상되는 한편,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해지고 고령친화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계위험과 거시경제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결론 가계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은 안정적인 소득흐름과 노후건강을 보장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즉, 공적연금과 공적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못하는 노후대비를 위해 사적연금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헤지수단도 금융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의 힘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장기국채시장 등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일정 부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거시경제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은 금융중개 기능 제고를 통해 생산성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가 높은 신성장산업 및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금융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경제전반에 걸친 저출산·고령화 관련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

이경희(전문연구위원) | 정책보고서

연구목적 퇴직연금제도는 근로기간 중 자산을 축적하는 단계와 퇴직 후 축적된 자산을 소득흐름으로 전환시키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급단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주요국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을 의무화 및 디폴트옵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 시행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연금전환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추정하였으며, 전통적인 연금전환의 단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 중심으로 지급 옵션을 제안하였다.

주요내용 주요국에서는 의무 연금전환 정책(칠레, 영국) 또는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스위스, 미국 DB제도)을 활용하여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은 연금전환을 기본 값으로 제시하고 개인이 일시금을 선택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연금전환이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방식이다. 반면, 미국 DC제도 및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명시적인 정부(연금기금) 정책이 없고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일임하고 있다.

칠레는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완전대체함에 따라 적립금 전부를 연금전환하도록 하며

종신형과 연생연금만 허용하는 등 매우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은 공적 연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시금을 25%까지 허용하며 75세까지는 프로그램인출도 허용하는 등 부분(점진적) 연금전환 방식을 시행한다. 스위스에서는 의무 부문에 대해 국가에서 높은 연금지급률(7.2%)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금전환을 유도한다.

정책 효과로 볼 수 있는 연금전환 수준은 의무화 정책을 실시하는 칠레와 영국이 가장 높고, 디폴트 정책이지만 국가에서 높은 연금지급률을 제시하는 스위스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는 미국 DC제도와 호주는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다. 가입자 입장에서 연금전환시 가격경쟁력 지표로 볼 수 있는 연금급여의 재무적 가치(money's worth)는 연금전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금전환 수준과 가격경쟁력간 관련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전환 정책에 따라 위험단체가 달리 형성되면 연금전환시 가격경쟁력도 달라질 것이다. 현재와 같이 자발적 연금전환시 제6회 개인연금사망률을 갖는 위험단체가 형성되고, 의무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제6회 생존·사망률을 갖는 위험단체가 형성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필요성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의무 연금전환 시행 시 개선되는 연금지급률 규모를 추정하였다. 우리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지급옵션을 제시하고 부분 연금전환 정책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역선택리스크를 축소시켜 연금지급률이 0.46%p(55세 남자)~0.81%p(65세 남자)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시 효과는 자발적 연금전환보다는 높지만 의무 연금전환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나타날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금전환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부분 연금전환 방식은 적립금 전체를 일시에 연금전환하는 데 따른 금리리스크와 가입자의 거부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전부 연금전환하는 방식에 비해 정책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활용 가능한 지급옵션은 소득보증 기능 극대화에서부터 유동성·탄력성 극대화까지 매우 다양하다. 소득보증 기능을 극대화시킨 새로운 상품은 고연령에서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가격경쟁력이 높은 고연령거치연금(ALDA)이 있고, 유동성·탄력성을 극대화시킨 상품으로는 변액연금의 최저 종신중도인출금보증(GLWB)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금전환 유도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전환의 대원칙으로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무 연금전환 정책은 효과가 가장 확실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신규 퇴직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만약,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실행하

는 데 따른 부담이 크다면, 차선책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보호하면서 연금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디폴트옵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 제3안은 현재와 같이 연금전환을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되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전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퇴직일시금에 부여하는 과도한 세제 혜택은 폐지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가장 소극적인 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연금전환 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을 둘러싼 환경 요인이 잘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공적 기관 중심으로 개인들이 종신소득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교육을 실시하며,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시켜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정부에서 일시금 인출 한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잔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 효과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과가 높은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최선책으로 검토해야 하며, 여건상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조용운(연구위원)·황진태(연구위원)·김미희(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목적 최근에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실손형과 정액형을 합하여 위험보험료 기준으로 10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급보험금 규모가 예상을 벗어난 것은 계약인수 과정의 느슨함, 공격적인 판매정책, 기대보험금 지급률의 잘못된 측정 및 평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의 부족과 리스크 관리의 소홀함에 기인한 결과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은 규모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기법의 부재로 인하여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리스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영의료보험의 통합상품을 대상으로 이론적 리스크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리스크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향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 동학적이면서 확률론적인 시뮬레이션(historical stochastic simulation) 방법을 중심으로 이론적 접근과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규모의 효과를 실증하기 위하여 전수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대형4

개사와 중소형사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리스크의 통합(risk aggregation)을 통한 리스크의 분산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CRM(collective risk model)을 이용할 것이다. CRM은 여러 보험 사업을 하나의 행렬로 통합하여 보험 사업들 사이에 상호의존성(co-dependencies)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전문가의 판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CRM에 개별 보험 사업을 하나씩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전체 리스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개별 리스크 요인 즉, 분산효과가 가장 크거나 작은 개별 리스크를 찾는 것이 가능하여 보험리스크 관리의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다.

본 연구는 고유리스크(idiosyncratic risk)와 모수불확실성 리스크를 측정하였다. 고유리스크는 NPA(normal power approximation)를 적용하고 모수불확실성 리스크는 구조적 리스크(혹은 체계적 리스크(systematic risk))와 시스템리스크(system risk)를 반영한 동학적이고 확률론적인 시뮬레이션 모형에 CRM을 적용하여 리스크를 측정 및 평가 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본 연구가 내린 결론은 우선 구조적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가 반영된 민영의료보험의 리스크양 측정결과 리

우리나라는 민영의료보험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의 관리는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본 연구는 리스크 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험회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스크 풀의 규모효과와 분산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된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실제 실손과 정액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분석한 대형4개사의 경우 실손보장의 질병통원과 상해통원이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손의료보험만을 분석했을 때 대형4개사는 질병통원과 상해입원이, 중소형사는 질병통원과 상해 및 질병통원이 총리스크 증가 요인이었다. 반면, 정액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대형4개사는 질병간병비와 상해수술비가, 중소형사는 상해수술비와 질병수술비가 총리스크 증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우리나라는 확률론적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리스크 측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임의성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회사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운영의 측면에서 각 리스크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방침인 리스크관리 정책을 외형적 성장보다는 수익성 및 사업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재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리스크의 분산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적극적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보험금 지급률 관리 중심에서 주된 리스크 요인 관리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다섯째로,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보험리

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여섯째, 경영진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이다.

Chapter

3

효과적인 경영전략 수립 지원

- 생명보험설계사의 활동 및 만족도 분석
-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영방안
-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연구
-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생명보험설계사의 활동 및 만족도 분석

안철경(연구위원)·황진태(연구위원)·서성민(연구위원) | 조사보고서

연구목적 국내 보험유통조직에 속한 설계사는 약 38만 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보험회사 영업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 성장 및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인적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집적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개별 회사의 전략적 차원에 국한하여 정보 집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설계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이 개별 보험회사 차원을 벗어나 금융산업 내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보험설계사와 금융소비자 간 불완전판매나 민원 등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개별보험회사 차원이 아닌 보험소비자를 포함한 보험산업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험설계사의 활동실태, 영업방식, 이탈 성향 및 만족도 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보험설계사의 행동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채널이 다원화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는 기존 보험설계사의 조직 간 이동이나 이탈, 만족도, 충성도 등 다양

한 형태의 이슈가 보험경영 및 정책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체계적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및 정책당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보험유통을 선진화된 제도로 보완 및 발전시키기 위해 현 보험설계사의 실태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요구된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전략, 특히 보험설계사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실태를 조사하여, 채널별 및 회사그룹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자료는 보험회사 및 정책당국이 보험설계사에 대한 회사의 채널전략 및 정책 수행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 보험설계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생명보험설계사의 특성과 영업활동 등을 정리하였다. 즉, 보험설계사의 개인적 특성(교육 수준, 전직장, 지원동기, 전문성 수준 등), 보험설계사의 영업활동 현황(시장확보 방법, 판매 시 고려사항, IT활용 수준, 영업활동 수행 시 조력자, 영업활동 보람, 교류횟수 등)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채널 경영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생보전속 및 GA설계사 등을 분석대상

향후 보험설계사의 영업 활동이 성과중심, 판매자 또는 공급자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보험소비자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회적 평판과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통해 보험설계사가 금융유통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으로 하여 보험설계사의 충성도와 이직의향이 보험설계사의 만족도와 타 금융권의 이미지, 보험설계사의 학력 수준 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험설계사 조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보험영업제도 및 정책 측면에서 채널 경영제도, 교차모집제도 및 모집수수료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미래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유통조직 경쟁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측면, 보험설계사의 평판 및 보험회사 이미지에 대해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론 첫째, 채널경영전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설계사의 활동 지표 비교 분석, 보험설계사의 만족도 제고와 이탈의향 관리방안, 그리고 보험설계사의 평판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험설계사 관련 정부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차모집제도의 개선, 선지급 판매수당 개선, 보험회사 이미지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보험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보험설계사를 통한 지속적인 보험소비자 모니터링과 다양한 니즈의 파악을 통해 소비자 지향적인 보

험판매구조의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보험설계사의 영업 활동은 성과중심, 판매자 또는 공급자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보험소비자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산업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회적 평판과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통해 보험설계사가 금융유통시장 내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진익(연구위원)·김해식(전문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 조사보고서

연구목적 지난 2009년 이후 정부가 녹색금융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고자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녹색금융 재원이 확대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장기능에 기초한 자율적 녹색금융은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은행업계나 금융투자업계에 비해 보험업계는 녹색금융 참여에 더욱 소극적인 상태이다. 보험업계가 녹색금융 참여를 기피하는 이유는 녹색사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험이 큰 벤처금융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관계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우량 녹색기업을 선별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는데 필요한 시장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녹색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점 또한 보험업계가 녹색금융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장자율의 녹색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 사례를 보면, 투자자나 금융회사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녹색보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성장성이 높은 녹색분야를 선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적절한 사업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녹색금융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의 경험을 참조할 때, 국

내 보험업계도 녹색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내용 본 연구의 의의는 녹색금융에 대한 국내 보험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① 국가경제 차원의 성장전략인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고, ② 금융시스템 수준에서 녹색금융과 관련하여 자본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한편, ③ 산업 수준에서 보험산업이 보다 성숙하는 기회로서 녹색금융 참여 기회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보험업계가 시도한 녹색금융은 아직까지 금융거래에 환경요인을 연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이 녹색보험에 소극적인 이유는 녹색보험을 “친환경보험”으로 협소하게 인식하고, 녹색보험 도입을 “새로운 상품”의 개발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위험이 큰 녹색분야에 대한 직접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녹색보험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위험인수, 기존보험의 녹색분야로의 적용, 그리고 녹색금융 참여 투자자에 대한 안전망 제공 등의 차원에서 규정될 수 있다.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이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되면 국내 보험회사들의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대부분이 금융기능 제고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으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능 제고가 핵심이며, 보험회사는 금융보증 제공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사회후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공적보증과 역할분담을 통해 다층적인 안전망 구축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녹색금융 참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시장자율의 녹색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 사례를 보면,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성장성이 높은 녹색분야를 선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적절한 사업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녹색보험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위험관리자로서 녹색금융 참여자(투자자, 금융회사 등)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역할이 강조되어, 녹색사업 개발자가 사업을 조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투자자들이 보험을 요구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대규모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해외의 녹색보험 발전 방향을 보면, 기존 보험상품을 녹색분야(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탄소배출저감 사업,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단일 계약을 통해 다양한 위험요인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보험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 특히 녹색사업으로부터의 산출량이나 수익이 약정수준보다 낮게 실현되면 보험회사가 일정 손실을 보전해주는 형태의 성과보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성과를 정의하는 기준(설비의 기술적 성능, 생산물량, 수익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성과보증이 활용되는 가운데, 종합보험으로서의 금융보증으로 진화해 가는 추세이다.

녹색보험으로서의 금융보증을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국내 보험회사들과 감독당국이 금융보증에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금융보증의 제공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 금융회사들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금융보증으로부터 대형손실의 발생을 목격한 바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금융보증에서 대형손실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보증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금융보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보증 확대로 사회후생은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후생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적 금융보증보다 민간 금융보증이 보다 바람직한 만큼, 민간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금융보증 계약구조에서는 녹색기업의 기대수익은 개선되는 반면 보험회사와 투자자의 기대수익은 악화됨에 따라, 금융보증이 자생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금융보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규모 지분투자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제

로 현실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금융보증 활용 시 투자자의 위험조정성과가 개선되고 보험회사가 금융보증 제공과 소규모 지분투자를 병행하면 위험조정성과가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결론 아직까지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대부분이 공적펀드 조성, 세제지원, 인증제도 운영, 민간 금융회사 녹색금융 참여 독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금융기능 제고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 또한 보험업의 경우 녹색금융 참여 의지나 실적이 타 금융업권에 비해 보다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능 제고가 핵심이며, 보험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녹색기업에 금융보증 제공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사회후생을 개선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금융보증이 조기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정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관건이며, 금융보증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준의 금융보증 제공을 제한하고 보험회사의 자본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재무건전성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적보증과 역할분담을 통해 다층적인 안전망 구축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대환(연구위원)·이상우(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목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기존의 개인퇴직계좌의 문제를 대폭 보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어 개인형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즉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가입층이 보다 확대되고 운용능력에 따른 사업자 간의 차별성도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단순히 통상장치의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가입요건의 완화 및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발 및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새롭게 형성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어떻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여 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냐에 있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금융권별 개인퇴직계좌의 점유율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이 67.4%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가 19.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생보사가 9.6%, 손보사가 4.4%를 차지해 개인퇴직계좌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형 퇴

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할 때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제반영향, 금융권별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실태와 주요국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자인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인식 및 니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부응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입자의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의 수급권 및 운용의 연속성 강화,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부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와 재정부담 완화, 사업자 또는 금융산업측면에서는 퇴직연금시장의 증가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개인형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은퇴관리자로서의 역할증대, 금융산업의 성장견인 등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행 및 증권사가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에

적극적이고 그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는 개인퇴직계좌의 가입대상 제한 등으로 별도의 전담조직 및 계획을 세운 금융회사가 많지 않지만,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별도의 운용조직을 신설하고 투자교육서비스 및 재무설계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상대적으로 증권사 및 은행이 보험사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선진 보험회사는 은퇴자들의 주요관심사가 노후소득 이외에 건강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보장성보험 즉 장기간병보험과 연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미국보험회사는 개인형 퇴직연금가입자가 가장 요구하는 것이 재무설계서비스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재무설계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한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노후소득자산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라이프사이클형 맞춤형 운용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가입자, 중간정산자, 이직자, 명예퇴직자, 일반퇴직자 등처럼 기업에 입사하여 퇴사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를 분류하여 이들의 특성을 고려

하여 시장진출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중간정산자, 이직자, 명예퇴직자 등은 개인영업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신규가입자, 일반퇴직자 등은 본사 법인영업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중간정산자, 이직자, 명예퇴직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개인영업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반면, 신규가입자 및 일반퇴직자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기업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형 퇴직연금가입자 대상을 분류하여 가입자들이 속해 있는 단체나 협회중심으로 한 마케팅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직업을 분류하여 자영업자가 속하는 단체나 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효과적이다. 즉 음식점업을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음식점협회를 통해, 캐디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캐디협회를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개인형 퇴직연금가입자 대상의 속성별 니즈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목표시장을 선정한 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등으로 가입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가입의향이 높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가입의향이 낮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구사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자사의 핵심역량과 가입자의 니즈, 그리고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에게 퇴직연금 권유 및 판매허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조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전국적인 영업망을 지니고 있으며 고객을 찾아가는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영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마케팅의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섯째, 개인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약 74.4%가 건강보장을 가미한 개인형 퇴직연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보장을 가미한 개인형 퇴직연금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연령대가 증가하면 할수록, 건강하면 할수록 이들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상품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가족 모두의 건강까지 보장하여 주는 가족종합건강보장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대상자의 선호도가 약 78.1%에 이르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다양한 건강보장상품을 카페테리아 플랜형태나 특약형태로 조합한 상품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대비가 부족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재무설계서비스 제공이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재무설계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론 최근의 개인퇴직계좌 시장 증가율추이를 감안하고 미국 수준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가입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자영업자 등 개인형 퇴직연금 잠재가입자의 가입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롭게 형성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회사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퇴직연금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장진출전략을 수립하여 다른 금융권과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영방안

김대환(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이상우(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목적 퇴직연금제도의 역사가 깊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퇴직연금시장이 확정급여(이하 DB)형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이제는 대부분 확정기여(이하 DC)형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속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력도 급변하여 왔다. DB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에서도 최근 DC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DC형 퇴직연금시장의 규모가 더욱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을 살펴보다라도 DB형 퇴직연금보다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DC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은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뚜렷한 경영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영업에만 주력해 온 나머지 타 금융업권에 비해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시장에서도 DC형의 성장성이 높아진다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상대적 경쟁력 또한 급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를 예측해 보고 그러

한 환경변화가 DC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해 본다.

주요내용 DB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모든 운용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 도산 및 파산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경향은 DC형 퇴직연금시장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근퇴법 개정안에는 복수 사용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가입자의 DB형 및 DC형 동시 설정 허용,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중간정산 및 담보대출 완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산운용환경의 변화 및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도 DC형 퇴직연금시장을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는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59.6%를 차지하는 등 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권사가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을 추월하여 치열한 경쟁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DC형 현황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퇴직연금시

장은 이미 DC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DB형 위주에서 DC형 위주로 개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 모두 DC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퇴직연금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선호도 변화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영향도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재원 마련을 국가의 역할이 아닌 시장의 역할에 의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DC형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금융기관들이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이미지 및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퇴직연금 전문회사를 설립했다. 둘째, 전문회사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과 제휴를 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제휴는 단순히 다른 금융기관의 운용상품을 자사의 운용상품으로 편입하여 근로자에게 패키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다양한 퇴직연금사업의 한 부분을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 퇴직연금전문회사와 같은 전체적인 퇴직연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법과 DC형 퇴직연금만 공략하려는 DC형 퇴직연금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또한 주요

국의 퇴직연금사업자는 전체 DC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특정 시장만을 공략하는 틈새시장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다양한 DC형 퇴직연금 계약형태 중에서 복수형 계약형태만 공략하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운용상품에 건강보험 기능을 가미하여 상품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해외사례와 함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분석한 결과 DC형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영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퇴직연금사업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인적, 물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비즈니스로 장기적인 투자전략이 없는 금융기관은 DC형 퇴직연금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상품에 건강보험 및 타 보험상품들을 번들링(bundling)하여 운용상품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는 순수번들링이 아닌 혼합번들링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DB형 퇴직연금과 달리 DC형에서는 실적배당형에 투자되고 있는 자산비중이 높다. 향후 보수적인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며 보험회사도 라이프사이클펀드(lifecycle fund)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며 타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실적배당형 상품을 다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와 함께 DC형 퇴직연금시장은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보험회사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 금융권에 비해 경쟁열위에 있는 부분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장점을 활용한 특성화된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양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산축적기를 위한 운용상품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시납 즉시연금과 같은 자산소진기를 위한 운용상품을 적절히 개발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도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DB형 가입자들에 비해 자산운용 수익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역량 및 이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전문회사 또는 자산운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회사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근퇴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설계사의 퇴직연금 영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만의 판매조직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일 것이다.

결론 재정건전성 강화, 자산운용 및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등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와 함께 DC형 퇴직연금시장은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DB형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만 몰두해 온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환경변화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한 경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타 금융권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경영전

략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 및 증권사에 비해 경쟁열위에 있는 부분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무엇보다 퇴직연금시장의 도입 및 활성화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선점효과가 광고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성장성이 높은 DC형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향후 퇴직연금시장 전체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연구

기승도(전문연구위원)·황진태(연구위원) | 경영보고서

연구목적 2000년대 이후 자동차보험 시장은 성숙시장 또는 성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증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보험 성장잠재력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의 둔화, 1가구당 자동차대수가 1대에 이르는 등의 현상들은 이러한 징후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성숙시장에서는 시장참여자들(손해보험회사들)의 경쟁강도는 점점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성숙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쟁은 과거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시장이 성숙시장으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마케팅 목표도 변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자동차보험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던 상황에서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기존의 마케팅 전략목표는 성장률이 정체되는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케팅 전략 목표를 기존 고객 유지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 시장 상황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성숙시장을 향해 진입하고 있는지 상황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 성숙시장에 부합한 마케팅 전략 목표인 충성도(Loyalty)를 달성하기 위해서 손해보험회사들이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자동차보험 시장의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자동차보험 시장은 성숙기 시장이거나 성숙기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대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당 인구수를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구감소 추이, 고령화 비율 증가, 경제성장률 수준, 온라인자동차보험 시장의 규모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성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보험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면, 고객이 다음 계약에서도 자기 회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노력, 즉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이 향후 마케팅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 자체의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증가시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비용 효율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충성도가 높아진 고객은 자신이 가입했던 손해보험회사에 계속적으로 가입할 뿐 아니라, 구전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은 시장의 성장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손해보험회사에게 매우 중요한 마케팅 전략의 목표가 될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세분화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마케팅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분시장-상품-가격 연계상품, 채널-가격 연계상품, 위험-가격 연계상품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GAPLM)과 Finite Mixture Regression을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충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는 가격만족도, 상품만족도 및 채널 만족도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만족도 요인은 세분시장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세분시장별로 만족도 요인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분시장별로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장세분화 측면에서 3가지 연구결과를 제안한다.

첫째, 세분시장-상품-가격 통합전략이 필요하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시장의 니즈에 부합한 상품내용과 가격을 결정하여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세분시장-상품-가격 통합 전략으로는 특약접근방법과 주계약접근방법이 있다. 특약접근방법은 현행과 같은 자동차보험 상품에 세분시장별 인구특성(Profile)에 부합한 특약상품을 추가하는 방법이며, 주계약접근법은 세분시장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약접근방법은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 하에서 회사의 의지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지만, 주계약접근방법은 자동차보험관련 법률개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방법이다.

둘째, 채널-가격 연계상품을 통한 상품차별화가 필요하다.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에는 온라인상품과 오프라인상품으로 두 가지의 채널-가격 연계상품이 있다. IT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채널이 출현하고 있는데, 다양한 채널에 연계된 상품을 두 가지로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에 부합한 마케팅전략의 수립 및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채널-가격 연계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세분시장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공급하게 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주행거리연동 상품과 같이 위험도-가격 연계상품이 필요하다. 주행거리와 같이 다양한 위험도 요인을 발굴하고, 이들 요인과 연계된 다양한 상품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개발·공급될 필요가 있다.

결론 자동차보험 시장의 여건은 성숙시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성숙시장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숙시장이 될 경우, 현재와 같

이 단일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높이고, 손해보험회사들은 세분시장에 부합한 마케팅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성숙시장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이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성숙시장의 특성에 부합한 마케팅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세분시장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마케팅 전략의 목표로는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고,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법은 세분시장에 부합한 세분시장-상품-가격을 연계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황진태(연구위원)·기승도(전문연구위원)·권오경(연구위원) | 경영보고서

연구목적 관혼상제의 복잡성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편리하고 조직적인 상조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0년 9월 기준으로 상조업체 수는 337개, 총 가입회원 수는 27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조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였고, 일부 상조회사 대표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늘어나면서 상조회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증가하여 할부거래법의 개정과 시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정 할부거래법에 규정한 상조업 등록요건과 고객예수금 보전조치로 인해 현재 시장에서 활동하는 상조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이 오히려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가적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방지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회사의 상조시장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상조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금융당국의 감독규제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도 받게 되어 소비자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보험산업의 상조시장 진출 및 발전에 기여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보험산업의 상조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보험산

업에 신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강화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우선 우리나라 상조서비스의 시장현황(소비자피해 현황 포함) 및 제도운영, 보험산업의 상조보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해외시장 현황과 제도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1) 주요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장례법규를 근간으로 주별로 제정된 독립적인 프리리드 상조법으로, 영국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으로, 일본은 전불식 할부거래법을 통해 상조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근본적인 목적은 장례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방지와 소비자보호의 강화를 위한 사업자 규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감독규제의 접근방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장례법규나 주별 상조법에 따라 장례용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불공정 행위 방지 등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서 장례서비스 계약에 대한 명시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상조회사의 설립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상조회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상조시장의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와 보험산업의 신 시장 개척을 위해 보험산업의 상조시장 진출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상조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 시 상조회사를 아웃소싱하거나 자회사로 활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형태이다.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면 미국은 전미장례지도사협회(NFDA)의 소비자보호 모범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보험 또는 100% 신탁을 통한 프리니드 상조기금과 상조신탁 요건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전불식 할부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보증금의 공탁금제도이나 전수금 보전조치가 있고, 표준약관을 통한 규제로 상조계약의 철회권(cooling-off)제도, 초과비용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요건, 해지 제한조항 완화와 해지수수료의 인하를 들 수 있다.

한편, 각 국의 상조보험시장을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조보험상품은 상조서비스 제공의 계약이행을 위한 펀드형태로써 판매될 경우 장례서비스 관련 규정의 적용 제외에 해당되어 보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일본도 상조보험상품은 보험상품의 하나로 분류되므로 일본 보험업법이 적용된다.

(2) 상조시장 진출방안으로 SWOT 분석을 통해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경영환경과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였다. 해당 분석에서 보험회사의 강점으로는 적정 보험료 산출, 리스크 관리, 다양한 상품개발 능력 및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한 판매채널 등이며, 약점으로는 상례절차에 대한 경험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이다. 또한, 기

회요인으로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상조 관련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등이며, 위협요인으로는 기존 상조시스템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평판리스크와 보험회사의 상조시장 진출로 인한 과당경쟁 등이다.

(3) 상조 관련 리스크로 사망리스크, 미래가격 변동 리스크, 상조회사 관련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미래가격변동 리스크는 정액형 상조보험이나 자동갱신탁약제도가, 상조회사 관련 리스크는 단순 아웃소싱이나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행 감독규제 하에서는 상조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신고로써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정책당국은 정책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 관련 자회사 설립이 신고로써 가능할 경우 소비자보호 강화와 다양한 고객 니즈에 적합한 상조보험 상품 설계가 더욱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하여 향후 감독당국의 정책방향 수립 시 상조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상조회사들의 끊임없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감안할 때 상조서비스업에 대한 감독규제를 금융당국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규제를 통해 서비스 이행을 위한 기존 상조회

사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아울러 상조 관련 서비스에 대한 표준규제를 제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보험회사의 상조시장 진출(특히,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이 기존의 상조업체가 그 동안 야기하였던 불안요소와 도덕적 해이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장건전성도 조속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장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빠르게 구축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인프라 기반 위에 상조시장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건전한 시장 환경 내에서 우량한 상조회사와 보험회사가 서로 공정한 경쟁 또는 긴밀한 제휴를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혜택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송윤아(연구위원) | 경영보고서

연구목적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보험금누수를 방지할 수도 없고, 보험사기를 완전히 밝혀낸다는 목적 하에 무한대의 조사비용을 지출할 수도 없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부터 누수보험금을 줄이는 한편 지나치게 많은 조사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조사노력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기조사의 수익과 비용을 감안하여 최적화된 조사대상물건과 조사물량을 결정하는 것이 보험사기에 직면한 보험회사의 의사결정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사기조사의 임계점 및 조사물량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구체화하기 보다는 사기조사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단기경영전략에 따라 적정수준의 조사물량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기조사의 임계점 및 조사물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Dionne et al.(2009)의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이론모형을 검토하고 사기조사의 임계점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고

찰하였다. 더불어 가데이터를 생성하여 최적사기조사전략 도출과정을 보이고 동 전략의 특징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보험회사는 사기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비용, 즉 사기의 기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기조사를 수행한다. 즉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조사 물건 및 물량은 사기의 기대비용이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보험회사의 조사전략은 각 청구건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가능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조사가능성은 청구건에 나타난 사기징후와 피보험자의 인적특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조사전략은 θ 타입의 피보험자가 σ 의 특성을 가진 청구건을 접수할 경우 동 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λ 의 확률로 사기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보험회사는 θ 타입의 피보험자가 접수한 σ 의 사기징후를 띠는 청구건을 조사할 가능성 λ 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가능성 λ 는 사기로 인해 예상되는 보험회사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기의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조사물량을 결정하는 보험사기 조사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보험사기 조사전략은 사기로 인해 발생한 보험회사의 제비용을 최소화하며 조사비용을 제외한 순수수방지보험금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최적조사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Dionne et al.(2009)의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이론모형을 검토하고, 사기조사의 임계점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더불어 가데이터를 생성하여 최적사기조사전략 도출과정을 보이고 동 전략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가진다. 첫째, 사기조사의 사기방지효과가 존재할 경우 최적조사전략의 실행에 따른 사기조사의 기대이익은 '0' 보다 작다. 다시 말해 잠재적 사기행위자가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보험회사는 사후적으로 누수방지된 보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조사하는 데에 지출함으로써 사기의 기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사기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질 경우 보험회사는 다소 공격적인 사기조사전략을 공약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기를 억제한다. 그 결과 사기발생이 줄어 누수보험금 및 사기의 기대비용이 감소한 반면 비사기건에 대한 조사가 늘어남에 따라 사기조사의 효율성이 감소한다. 둘째, 청구건수 대비 사기건수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기조사의 기준이 되는 사기징후점수는 낮아지고 조사의 정확도는 증가하며 사기의 기대비용은 증가한다. 여기에서 사기조사의 기준이 되는 사기징후점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사기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청구건수와 사기건수가 동일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사기조사의 기준이 되는 사기징후점수는 청구율에 상관없이 일정한 반면 사기의 기대비용은 증가한다. 넷째, 건당 조사비용이 증가할수록 사기조사의 기준이 되는 사기징후점수, 조사의 정확도, 사

기의 기대비용은 증가한다.

결론 이윤극대화 측면에서 최적화된 보험사기 조사전략의 도출방법과 동 전략이 내포하는 의미는 각각 다음의 현실적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보다 정교한 보험사기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 임계점을 도출하여 조사대상물건 및 조사물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측면의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둘째, 보험사기조사모형에서 도출된 최적조사전략은 보험사기 방지 및 조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 및 태도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Chapter

4

보험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일반공제 규제의 합리화 방안
-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개선방안

일반공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오영수(선임연구위원)·김경환(전문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목적 우리나라에는 2011년 1월 말 현재 60개의 공제조합이 위험관리 기능을 하는 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래 공제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한정된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나, 일부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한정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물론 회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를 본 보고서에서는 다른 공제와 구별하기 위해 일반공제라 규정하였는데, 일반공제는 경제적 기능 및 운영원리상 보험과 구별되지 않고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통합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보호가 취약함은 물론 불공정경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경제적 기능이 보험과 동일한 공제에 대해서 보험과 동일하게 규제 및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규제 및 감독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먼저 공제조직 및 공제에 대한 정의와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 논하였다. 공제조직은 공제상품을 운영하는 조직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공제는 회원들의 위험관리를 위한 상품 및 사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공제의 경우 보험과 비교하여 경제적 기능과 기술적 측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공제조직과 일반공제는 법률 및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 보험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동일 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본질적 요소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4개 일반공제의 규제 현황을 보험 규제와 비교하여 보았는데, 많은 부분에서 규제 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조직 운영의 원리가 달라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규제의 개선을 일반공제 규제가 일치시키는 데 시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분야는 소유 및 지배구조, 사업요건, 사업 범위, 분쟁조정제도, 예금보험제도 등이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분야는 상품 신고 및 확인, 영업행위, 지급여력제도 운영방식, 위험평가제도, 경영실태평가 등이었다.

그런데 향후 보험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해 해외보험제도와와의 조화를 요구하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하여 규제의 공백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규제차익을 제거하려는 금융정책이 강화되며, 또한 일반공제조합 스스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성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일

일반공제는 보험과 경제적 기능과 기술적 측면에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규제 및 감독이 보험과 달라 소비자보호가 미흡함은 물론 공정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과 동일한 규제 및 감독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법규의 일원화 또는 규제 수준의 일치와 함께 감독의 일원화 또는 위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공제는 규제체계 측면에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소비자보호 취약, 불공정 경쟁 지속, 규제의 전문성 및 효율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부적인 규제 내용 측면에서도 법인 미분리 및 공제사업 이외의 복수 사업 겸영으로 인해 리스크 전이의 가능성이 높은 점, 자본확충의 곤란, 대리인 문제로 인한 지배구조상의 취약점,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제 수단의 미흡, 영업행위 규제의 미흡, 분쟁해결절차 및 예금자보호제도의 취약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반해 EU,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는 모든 공제사업에 대한 규제가 보험규제에 통합되거나 아니면 병렬적으로 규제를 받음으로써 공제규제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소극적인 일본에서조차도 보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제계약을 보험계약에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업법 체계 내 모든 공제를 포함시키고 ‘근거법이 없는 공제’와 ‘무인가공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공제에 대한 세계 혜택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일반공제에 대한 규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법률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상법상 공제계약을 포괄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판례에서 공제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제계약에 대해서도 상법 보험편을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규제의 명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는 공제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조항을 통하여 적용하기보다는 보험계약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통해서 공제를 보험계약의 일부로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공제에 대해서 행정법 차원의 규제를 보험규제와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방법과 특별법을 보험업법상의 규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시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험업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공제의 특수성이 있는 부분조차도 보험업법 내에 포함시켜서 규제하자는 목적이 강한 방안으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의조항에서 공제상품, 공제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와 함께 공제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에 일반공제에 대해서만 전면적으로 적용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반공제가 새로운 법률 체계 내에 포함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유예기간과 함께 두 분야로 나누어 단계별로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험업법을 부분적용하는 방안은 보험기술 및 보험영업에 관한 부분인 업무영역, 상품 심사 및 확인제도, 모집제도, 영업행위, 광고, 자산운용, 재무건전성 규제 등의 분야에 한하여 보험업법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분쟁조정제도와 예금보험제도를 보험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 전체에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공제를 규제하고 있는 특별법과 하위 규정 및 감독기준을 개정하여 보험과 규제수준을 동등하게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보험업법을 부분적용하는 방안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 규제수준을 일치시키도록 개정하는 방안인데, 두 규제가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규제차익이 존재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일반공제에 대해서 보험과 규제를 일치시키는 것은 규제 및 감독기구의 통합을 통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일반공제를 규제 및 감독하는 기구가 동일하다면 법률의 개정 및 그에 입각한 감독 및 검사가 일원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규제 및 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

은 경우 공제조직이 공제사업 이외에도 여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주무부처가 해당 공제조직에 대한 감독권한을 놓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제조직의 법인분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그 조직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금융감독당국이 맡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규제 및 감독의 일원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규제의 권한을 갖되, 감독업무를 금융감독당국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일반공제는 상호부조의 순수한 역할에서 벗어나 가입대상과 사업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따라서 일반공제는 보험과 동일한 규제 및 감독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이 가능해짐은 물론 규제 및 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안철경(연구위원)·변혜원(연구위원)·서성민(연구위원) | 경영보고서

연구목적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개인의 다양한 니즈가 결합하여 새로운 마케팅 기법들이 진화하면서 확산되는 추세이다. 바야흐로 산업 전반에 걸쳐 IT와 고객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 사업모형이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을 형성하면서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보험시장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2000년 이전까지 보험시장을 주도하던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전통적 대면채널의 시장지위가 약화되면서 다양한 대면 및 비대면 판매채널이 등장하였다. 예를 들면 2000년 이후 보험통신판매·인터넷(2001), 방카슈랑스(2003년), 홈슈랑스(2003), 독립대리점(2005), 교차모집(2008), 마트슈랑스(2009)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판매채널 또는 판매방식(Platform)이 신채널로 도입되거나 활성화되었다. 기존의 전속대면채널 중심의 판매구조에서 새로운 판매채널구조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보험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보험판매채널을 보면 전속채널 중심에서 독립채널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아울러 대리점, 중개사, 금융기관, 통신·인터넷, 제휴단체, 보험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채널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두드러진 현상은 무선 인터넷과 같은 웹을 통한 판매채널이 보험시장에 새로운 채널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혁신적 변화 트렌드는 모바일 혁명이라 불리우는 스마트폰의 확산 열풍으로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0년 이후 등장한 비대면 판매채널은 소비자의 편리성, 다양한 수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에 부합하고 회사의 저비용 채널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소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채널의 등장은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보험회사가 비대면 판매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보험회사의 채널경영전략 측면뿐만 아니라 규제 측면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즉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비대면 채널에 의한 소비자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간 적절한 균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첫째, 비대면채널의 운영모형 및 실태에서는 비대면채널의 특징과 운영제도 그리고 국내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비대면채널은 대면채널에 비해 비용, 고객접근성, 이용 편의성, 계약 투명성 측

비대면채널 경영전략으로서 채널 특성에 적합한 상품 및 가격전략, 고객접점 확대 전략, 웹마케팅 전략 등이 있다. 규제 측면 개선 과제로는 보험설계사 교육체계 확립, 보험회사들의 불안전판매 개선, 보험광고심의기준 운영의 일관성 제고, 보험종목별 광고 가이드라인 검토, 그리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판매자 책임 규제 신설 등이 필요하다.

면에서 강점이 나타나는 반면, 판매가능상품의 제한성, 판매 시 적극적 권유의 부적합,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 및 신뢰성 저하 등에서 약점이 노출된다. 운영현황을 보면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에 비해 비대면채널의 활용률이 높다. 특히 자동차보험 직판채널의 시장점유율은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채널의 성격에 부합하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유행성 상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밖에도 비대면채널을 활용하는 경우 불안전판매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판매자 책임과 관련한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비대면채널 현황 및 규제를 살펴보았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비대면채널이 대면채널에 비해 거래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을 경쟁 우위로 활용한다. 아울러 채널의 특성에 철저히 부합하는 상품과 이에 부합하는 가격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 부각된다. 국가별로 비대면채널의 활용도가 다른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수준과 소비자의 수요 변화, 그리고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의 차이에 기인한다. 주요 목표시장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나 교육 등이 수월한 젊은 층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셋째,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적 모형을 사용하였다. 우선 탐색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생명보험의 경우 4개의 요인(규제특성, 채널전략, 고객니드, IT인프라)을, 손해보험의 경우 5개의 요인(규제특성, 채널전략, 비대면특성, IT인프라, 소비자보호)을 추출하였다. 이어 확인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을 통해 순위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분석에 사용할 변수들을 선택하고, 순위 프로빗 모형을 통해 각 요인들이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추가적인 변수로서 회사그룹 더미, 주력채널 더미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순위 프로빗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 모두 IT인프라 요인, 채널전략 요인 및 규제 요인이 비대면채널의 성장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요인 중에서 차별화된 상품별 채널전략, 보험회사의 복합채널 전략, 틈새시장 전략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결론 총량적 측면에서의 국내외 비대면채널의 운영현황과 미시적 측면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한 향후 국내 비대면채널의 성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이 비대면채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대면채널 경영전략으로서 첫째, 비대면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널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판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대면채널의 저비용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사업비가 낮은 인터넷이나 DM 등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 홈쇼핑, 모바일채널, 제휴판매 등 신규 고객접점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한 웹마케팅의 활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며,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규제개선 측면에서의 과제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들의 불안전판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광고심의기준 운영의 일관성 제고, 보험종목별 광고 가이드라인 검토와 함께 보험대리점에 대한 판매자 책임 규제 신설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채널에 대한 규제 수준은 잠재적 피해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비대면채널의 사용을 통해 제고될 수 있는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개선방안

오영수(선임연구위원) 외 8명 | 정책보고서

70

연구목적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도 거시건전성 규제와 함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체계 및 감독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볼 때 국제적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안함과 아울러 보험회사가 대응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법률체계와 감독체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외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얻은 후에 법률체계와 감독체계 정비방안, 사전적 소비자보호 제도 및 사후적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개별 회사 또는 산업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법률체계는 업종별로 규율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를 기초로 감독하는 체제는 통합되

어 있다. 그런데 감독체제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는 기능별 또는 목적별 감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업종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금융업권 간 장벽을 뛰어넘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을 적절히 규제·감독할 규제체계가 정비되지 못해 규제차익이 존재하고 규제공백이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법률체계 및 감독체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강화되고 있다. 먼저 통합감독체제의 선구적 위치에 있었던 영국의 경우 통합감독체제의 운영과 감독목적 간 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시 거시적 건전성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었다는 반성에서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독립시키는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체계와 다원화된 감독체제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금융개혁법(Dodd-Frank Act)」 제정과 함께 FRB 산하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신설하는 등 감독체제의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법률 제정과 함께 감독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감독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는 법규체계가 업종별로 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체계화함은 물론 규제의 공백 및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부적 규제 내용상으로도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함에도 업종별 규제로 인해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규제수준이 일치되도록 법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체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의 발전 정도 및 법률적 체계와 잘 부합하는지, 감독목적 간 상충여부와 극복 메커니즘은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용편익적 관점에서 적절성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법률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금융업종을 뛰어넘어 횡단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만, 영업행위와 관련한 사항은 공통사항과 중요사항 위주로 통합법률에 담고 구체적인 규제는 개별업법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판매업자에 대한 인가 및 등록도 개별업법에서 규율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감독체제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분쟁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함께 현 조직 내에서 목적별 감독체제를 구축하는 수준의 개편을 추진하고, 전면적인 개편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므로 법을 통한 규제에 앞서 금융회사의 자율적 노력이 선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규제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영업행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거래시 필요로 하는 정보 위주로 알기 쉽고 접근하기 편리하게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가 많이 제공되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이 높아진 다 하더라도 금융회사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윤리성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업행위규제와 함께 약관제도, 개인정보 보호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즉, 사전적 소비자보호제도는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구조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감독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와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업종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손실을 야기한 불법행위의 책임 여부를 가려 원인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분쟁해결기구의 독립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전문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업무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기능과 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및 해당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해 예금보호한도의 신축적 운영과 공동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보험회사의 대응과제도 제시하였는데, 이렇게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을 소비자신뢰를 제고하는 기회로 적절히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소비자보호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인식 전환,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및 윤리경영 실천, 경영정보의 적극적 제공, 보험소비자 교육을 위한 투자 확대, 업무프로세스별 소비자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결론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 내에서 공급자에 대응한 대등한 거래상대방이자 건전한 수요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비용효율성과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체계 정비는 금융시장의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유연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가 확실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감독체제는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정책적 목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목적별·기능별 감독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개편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성 제고 및 창의성 확대 등을 위하여 자율규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Chapter 5

금융·보험 이슈 연구

- 보험금융연구
- CEO Report
- KIRI Weekly
- Weekly Focus

보험금융연구

74

Long Memory and Structural Breaks in Extreme Value Estimators

권용재(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1호

본 연구는 극단값 변동성 측정치(extreme value estimators)의 장기기억과 구조변화를 측정하였다. 장기기억은 변동성 측정치의 정형화된 사실 중 하나로서 다수의 연구들이 변동성 시계열이 장기기억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Granger and Hyung (2004)과 Choi et al.(2006)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측정된 변동성 시계열의 장기기억이 실은 구조변화에 의해 그 크기가 부풀려져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의 연구를 극단값 변동성 측정치에서 장기기억 연구에 적용하여 극단값 변동성 측정치의 장기기억의 수준이 부풀려져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해 본 결과 극단값 변동성 측정치의 비정기적인 구조변화가 장기기억의 정도를 증폭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이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장기기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개인의 민영건강보험과 개인연금 선택 간의 관계연구

이창우(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1호

건강보험은 의료비 보장, 연금은 노령화 시기의 생활비 보장을 위한 방안이 되며, 이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소비를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의료비와 노후 생활비는 개인의 전 생애의 소비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개인연금과 민영건강보험이 노후생활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연금과 민영건강보험의 선택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과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개인연금을 보유한 개인이 민영건강보험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정하고자 한다.

연금과 건강보험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하지만 연금과 건강보험이 노후보장을 위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개인의 은퇴시기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다. 즉 연금과 건강보험이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연금과 건강보험은 서로 간의 관계 보다는 각기 다른 주제로서 은퇴행위와 저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논문이 대다수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보험과 연금을 개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동시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의 2차 조사(2007)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은 은퇴시점이 가까이 있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조사하였다는 점과 각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노후보장패널은 본 연구를 위해 적절한 데이터이다.

연구방법으로 2변수 프로빗(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연금과 건강보험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후, 이로부터 두 추정식의 오차항간 상관계수를 구하여 개인연금과 민영건강보험 보유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각 개인이 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을 선택할 때 동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행태를 설정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연금보유와 민영건강보험의 보유의 상관관계는 양(+)으로 추정되어 개인연금을 보유한 개인이 민영건강보험을 보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노후대비를 준비하는 개인은 개인연금과 함께 민영건강보험을 보완적으로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금리의 변화가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최영목(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1호

본 연구는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장금리가 자산별

투자영업수익률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제로 시장금리, 금리변동성, 주식수익률, 주식수익률변동성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결정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부분조정모형을 설정하였고, 설정된 모형은 동태적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금리가 투자영업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표본뿐만 아니라 회사 그룹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금리의 상승이 자산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 및 대출채권의 이자수익률이 시장금리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사 그룹별로는 외국사의 투자영업수익률이 금리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사채금리의 변동성은 전체 표본과 회사 그룹별로는 중소기업사 및 외국사의 투자영업수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이들 표본에서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영업수익률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반면 대형사의 경우는 회사채금리의 변동성이 투자영업수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Flannery(1981)가 언급한 바를 비추어볼 때 대형사가 다른 그룹에 비해 금융거래(특히, 대출채권관리)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사의 경우 대출채권관리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주식수익률과 주식수익률변동성은 투자영업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영향력은 시장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채권형 자산포트폴리오를 가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배분 특성상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룹별로는 중소기업사와 외국사의 투자영업수익률과 주식수익률 및 주식수익률변동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산배분에 있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이나 대출부문의 수익성은 변동이 심하지 않은 반면 주식운용 부문의 수익성은 장세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사와 외국사의 경우에는 주식운용부문의 리스크관리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투자영업수익률의 조정속도에 있어 생명보험산업 전체 표본에서 0.89로 비교적 그 조정속도가 높아 생명보험회사들의 실제투자영업수익률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장기균형화의 목표투자영업수익률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그룹별로는 중소기업사 및 외국사의 투자영업수익률의 조정속도가 1에 가까운 반면, 대형사의 경우는 0.56으로서 상대적으로 조정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형사의 자산포트폴리오 만기(듀레이션)가 중소기업사와 외국사에 비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Obesity and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김대환(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1호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통해 민영건강보험(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 EPHI)에 가입하고 있다. 현재 미국 고용주들이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임금과 근로자를 위한 의료비용(건강보험료 포함)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건강리스크가 높은 근로자들을 고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고용 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EPHI를 근로자의 건강리스크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근로자의 비만여부의 고려이다. 즉, 근로자의 비만여부는 특별한 건강검진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고용주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강리스크의 대리변수(Proxy for Health Condition)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비만 근로자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에서 근로하는 가능성을 실증분석함으로써 건강리스크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EPHI) 소유여부를 규명하였다.

EPHI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건강리스크가 높은 비만자를 고용하려 하지 않는 반면, 건강리스크가 높은 근로자는 EPHI를 제공하는 고

용주를 선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리스크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론적인 모델로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리스크에 대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예 : 비만)에는 비만 근로자가 EPHI를 제공하는 기업에 고용될 가능성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만 근로자들이 EPHI를 제공하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에 Decomposition Method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비만인들이 EPHI를 제공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정상 체중의 근로자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남성이 아닌 여성 비만 근로자에게 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 비만자보다 여성 비만자의 의료비용이 높다는 점과 체중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stigma)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유인 검토

진익(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2호

국내외적으로 자산관리서비스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보험회사들은 자산관리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타 업권에 비해 보험회사에 보다 불리한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며 보험회사 스스로도 적절한 사업모형을 발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국내 보험회사들은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신탁업 인가를 받은 회사는 5개사(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에 불과하고 자산관리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모든 보험회사들이 금융투자 중심 프로그램을 사내겸영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보험회사 단독으로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사업모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모형은 해당 분야에서 보험회사들이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정작 보험회사들이 전문성을 갖춘 보험업무와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험신탁을 포괄하는 복합금융 프로그램, 지주회사체제를 활용한 사외겸영, 독립자문인력 및 판매전문회사와 연계한 외부 네트워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시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영전략을 도출하고자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유인, 사내겸영과 사외겸영 선택 유인, 외부 네트워크 활용 유인을 분석하였다. 이때 보험회사가 집중해야 할 핵심서비스로서 기존 금융투자 중심 프로그램과 별도로 보험신탁 프로그램을 상정하고 해당 프로그램 확대가 기업가치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현 시점의 매출규모에 비해 축적된 자

산규모가 큰 대형 보험회사, 수익원이 집중되어 있는 보험회사, 초기 비용 부담 여력을 보유한 수익성 높은 보험회사, 시장위험 노출이 확대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보험회사일수록 자산관리서비스로 업무범위를 확대할 유인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수준 집계치를 사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유인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에서 그 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모든 보험회사들이 사내겸영 방식을 채택하면서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산관리서비스에서 기대되는 수익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상장되고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 한 이후에까지 사내겸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때 보험회사별로 재무상태가 다른 점을 반영하여 사외겸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형사의 경우에는 조만간 사외겸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일부 방카사·외국사·중소형사들은 사내겸영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회사가 보험신탁 활용 시 자본회전률과 매출이익률에서 나타날 영향의 방향과 크기는 판매채널별 효율성과 보험회사의 채널 관리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외부 네트워크 활용 유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신탁 활용 시 신규매출 발생하더

라도 적절한 판매채널을 선택할 경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보험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이익률 측면에서는 방카슈랑스 중심의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이는 방카슈랑스 비중이 증가할 때 사업비 감소효과가 큰 반면 다른 비용(보험금과 환급금 합계) 증가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셋째, 충분한 자본력을 보유하여 인지도가 높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판매전문회사를 활용하는 한편, 업무절차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자산관리 프로그램의 목표고객에 따라 외부 네트워크 내 판매채널별 비중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현재와 같이 표준형 금융상품 중심 프로그램에 주목한다면 기존의 설계사나 대리점 채널의 비중이 커질 수 있겠지만, 고부가가치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시에는 충분한 자본력과 자문능력을 갖춘 별도의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또한 자산관리서비스 목표고객을 부유고객과 일반고객으로 구분하고, 각 목표고객에 대한 별도의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각 프로그램별로 판매채널을 조합하는 경영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The Asset Price and Investment Technology

유진아(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2호

자본재에 대한 투자(investment)는 장기적으로 탄력적인 성격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이러한 투자의 단기적 비탄력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본재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을 사용한다. 그런데 기업의 규모 또는 산업의 발전 및 특성에 따라 자본재 조정비용은 다른 형태를 보인다. 가령 규모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같은 규모의 투자를 실행하였어도 실제 투자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은 축적된 기술 및 인적자본을 활용하게 되면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효율적으로 자본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자본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규모의 증감이 투자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규모가 예전과 동일한 경우 기존에 확보한 인력 등을 활용해서 자본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규모를 늘리게 되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본재 설치의 효율성을 떨어질 수 있다. 본고는 자본재 설치비용이 기존 자본재의 규모 또는 자본재 투자비용의 증감의 함수로 표현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분석한다.

기업의 투자결정은 추가적인 자본재가 새로이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가치는 설치된 자본재의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재 설치비용함수와 기업가치는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고에서 고려하는 2가지 자본재 설치비용함수는 서로 생산, 투자 및 기업가치의 동태적 추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충격반응 곡선을 도출하여 비교한다.

자본재 설치비용이 투자증감률의 함수인 경우 양(+)의 생산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가치는 설치비용이 투자-자본재의 함수인 경우보다 더 크게 반응한다. 즉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양(+)의 외부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 기업보다 기업가치가 더 빠르게 성장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또한 설치비용이 투자증감률의 함수인 경우 기업은 자본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투자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게 된다. 한 기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충격의 영향을 여러 기간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양(+)의 생산충격에 대하여 낙타등 형태의 반응곡선을 그린다. 충격의 효과를 여러 기간에 분산시키는 반응곡선은 기존 계량모형의 결과와 일관성을 보인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자 특성분석에 따른 가입강화 방안 연구

강기훈(한국외대 교수)·기승도(전문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2호

최근 자동차보험 산업은 자동차등록대수 성장을 정체에 따라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외생변수로 보험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보험회사가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담보(위험보장 상품)를 발굴하여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사고의 경제적 위험을 보험으로 해결하는 상호 이익이 되는 성장방안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제도 하에서, 자동차보험 시장참여자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의미있는 성장방안 중 하나는 자기차량손해담보와 같이 가입률이 낮으면서 대당보험료가 큰 담보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가범부분선형모형(**Generalized Additive Partial Linear Model**)으로 현재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자 특성분석을 분석하고,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운전자 특성에 부합한 마케팅 방안’, ‘자기차량 손해담보 상품의 다양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중 자기차량손해담보 상품의 다양화방안으로 분손 위험을 보장한도별로 세분화하는 방안, 자기부담금과 보상최고한도를 다양화하여 저렴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를 유도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거시경제변수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황진태(연구위원)·서대교(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3호

2001년 7월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된 변액보험은 방카슈랑스의 도입에 따른 판매채널의 강화, 변액보험상품의 다양한 투자옵션,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활황 등에 힘입어 2009년 3월 말 현재 약 17.6조 수준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변액보험은 생명보험 시장에서 23.9%에 해당하는 구성비를 차지함에 따라 사망보험과 함께 생명보험 산업을 대표하는 중요한 종목이 되었다.

변액보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 하에서 시장수익률 확보를 통한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특별계정에 포함되는 적립보험료를 모아 펀드로 조성하고 이를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 및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증가하나, 투자실적이 나쁠 경우에는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투자상품으로서의 특징으로 인해 변액보험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가, 금리 등의 거시경제변수에 반응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액보험의 경우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해당 적립금이 변하므로 금리 및 주가지수의 변화가 보험계약자의 변액보험 가입유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변액보험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보험산업에 있어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즉, 변액보험이 생명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생명보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와 각종 거시경제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거시변수에 대한 각각의 외생적 충격에 있어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 초회보

험료는 실업률을 제외하고 비교적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먼저 이자율(국고채 5년 금리) 충격에는 초기의 일시적인 양(+)의 반응 후 지속적인 음(-)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즉, 이자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경우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융상품 구입에 대한 유인이 커져 변액상품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후 상대적으로 금리변화에 둔한 보험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타 금융상품으로의 대체 효과가 크게 나타나 점차 변액상품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리고 금리 충격에 대한 음(-)의 반응은 변액연금인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충격의 경우 두 상품 모두 음(-)의 항구적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는 물가상승이 우연히 발생할 경우 전반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고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KOSPI 지수 충격에 대하여 변액연금의 양(+)의 반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시장의 활황 충격이 변액연금 및 유니버설 초회보험료 모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업률 충격의 경우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변액연금 초회보험료는 항구적인 양(+)의 반응을 보였으나, 변액유니버설은 항구적인 음(-)의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 변액연금은 점차 축소되어 사라진 반면, 변액유니버설은 항구적인 양(+)의 반응을 보여주었다.

한편, 분산분해의 경우 변액연금의 예측오차의 변동성에 대한 공헌도로서 KOSPI 지수, 국

고채 5년 금리 충격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액유니버설의 경우는 자신, 그리고 실업률 충격으로 인한 변액유니버설 초회보험료의 예측오차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액연금 초회보험료 자신의 충격은 변액연금 초회보험료의 예측오차 변동성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변액연금의 경우는 KOSPI 지수와 국고채 5년 금리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 상품 모두 외생적 거시경제충격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해당 상품들이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변동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의미한다. 즉, 보험회사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경기변동 예측능력 배양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보험 정산거래와 한국 보험시장에서의 가용성

김해식(전문연구위원)·김석영(원천재보험) |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3호

생명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보험증권을 해지를 통해 보험회사에 되팔 수도 있지만 제3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정산거래(또는 전매거래)도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정산거래는 보험계약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만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사례는 해약환급금보다 많은 정산금액을 받는 보험계약자와 자본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

는 투자자 모두에게 윈-윈 게임임을 보여준다. 현재 미국의 정산시장은 초기의 시한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산시장이 보험금선지급특약 제공 등 보험회사의 적극적 대응으로 쇠퇴하였다가 거래 대상을 고령층으로 확대하면서 다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변경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정산거래가 가능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자의 관점에서 과연 정산거래가 시장에 제공될 여건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는 보험계약자와 투자자 간의 거래인 생명보험 정산거래가 국내 시장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정산거래를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국내에서 판매된 CI종신보험을 대상으로 정산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만족하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산거래의 경제적 체결 조건은 보험증권의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투자자가 납부해야 할 미래보험료의 현재와 해지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사망보험금의 현재보다 작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정산될 금액은 위 두 금액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 종신보험의 각종 기초율은 시장 평균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산시장의 경우 경험사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정산거래 체결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당한 투자기간을 필요로 하는 일반 정산시장은 국내에서 형성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CI 종신보험계약은 언제 발병하느냐에 따라 정산거래 체결조건을 충족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 종신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발병한 후 2년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에만 경제적 체결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산거래 기회가 단기간에만 존재하는 시한부 정산시장은 제한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대 질병이 주로 50세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선지급특약의 존재를 고려하면 매우 제한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보험시장에서 정산거래가 생명보험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가정과 자료의 제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가정과 실제 생존율이 달라지면 분석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산거래 가능 기간에서 다소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어도 중대 질병이 발병하고 나서 단기간에만 정산거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CI 종신보험의 생존율 자료 중 일부만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CEO Report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김대환(연구위원)·이상우(선임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 CEO Report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기업 단위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형태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기업이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이하 “복수사용자제도”라 함.)의 도입 등이 포함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 복수사용자제도는 둘 이상의 사용자(기업)가 비용절감과 가입편의를 위해 공동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도입될 복수사용자제도는 대표사용자형과 표준형이 있다. 대표사용자형은 DC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대표사용자가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이며, 표준형은 다수기업에게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하나의 DC형 퇴직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이들 방식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유인책으로 주요국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가장 유사한 일본은 복수사용자제도를 DC형 퇴직연금에만 한정하지 않고 DB형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연합형

및 종합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일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복수사용자제도의 도입 기업수의 비율이 62%이며, 적립금 규모의 비율이 58%(2007.5기준)에 이른다. 또한, 홍콩 MPF의 경우 복수사용자제도의 자산규모 비율이 97%(2009.3 기준)에 이른다.

향후 우리나라에 복수사용자제도가 도입될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복수사용자제도는 ‘가입 및 운용관리 수수료 등의 비용 감소’ 및 ‘규약 프로세스 작업감축 등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복수사용자제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우선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복수사용자 시장에 적극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동 제도의 시행과 함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성장이 예상된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에서 표준형보다는 협회·조합·단체 등에게 가입이 편리한 대표사용자형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사용자제도 중에서도 표준형의 경우 제도도입 등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표사용자형 제도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표사용자형과 표준형 제도에 가입하는 성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기업 그룹의 경우에는 기업들 간에 결속력이 강하여 대표사용자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기업은 주로 대표사용자형 중에서도 종합형 제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소기업은 표준형 제도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대표사용자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권 간 과당경쟁 및 대표사용자의 이해상충 발생 등 시장질서가 혼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한 보험회사는 복수사용자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장진입 측면에서 대표사용자제도는 기업이 한 번 선택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선점전략이 필요하다. 표준형제도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고객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셋째, 마케팅조직의 강화 측면에서 보험회사가 모집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 모집조직을 활용한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운용능력의 제고 측면에서 은행 및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능력에 대한 전문성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에 특화 또는 전문화된 회사의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비스의 차별화 측면에서 복수사용자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서비스의 원스톱쇼핑이 가능한 번들형 서비스(Bundled Service) 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오영수(선임연구위원) | CEO Report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뿐만 아니라 영업행위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금융업권에 횡단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규제의 공백 및 차익을 제거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보험소비자의 권리의식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보험소비자의 금융 및 보험 관련 지식수준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험회사도 개별 회사 또는 산업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윤리경영 체제의 강화,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도입, 사망자 보험가입 정보 제공 등 보험거래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적극화, 고객 경영참여 제도화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 기준으로 전체 금융업권에서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민원평가지수 1등급에 속하는 보험회사가 하나도 없을 정도다. 물론 보험상품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도 민원발생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보험회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GA, 홈쇼핑대리점 등과

같은 모집조직을 통한 보험판매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난해성, 보험계약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미흡, 보험소비자 교육의 미활성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며 아울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인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등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험회사가 소비자보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평판이 악화되면서 경영상 큰 손실이 야기되고 그 파장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소비자보호 문제를 단순히 민원 해결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경영상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 대응체계를 이사회 차원에서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보험소비자 중심의 업무체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되 이해하기 어렵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시 필요한 문서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함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극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특성 및 상품 유형에 적합한 모집조직을 대응시키고 판매상 요구되는 각종 의무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시 등을 통

해 보험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되,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강한소비자가 강한 보험회사를 만든다는 인식 하에 보험소비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하며 아울러 불완전판매가 축소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보운영 업무에도 소비자 대표 등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험소비자를 중시하는 윤리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윤리헌장, 전담조직, 교육체계 등을 확립하고, 윤리성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산업 차원에서 마련하여 윤리경영이 확산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평판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평상시에도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보험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영상의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평판을 개선시켜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경영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소비자보호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김대환(연구위원)·이기형(선임연구위원) | CEO Report

최근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를 충분히 심사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보험사기 현황 및 관련 법적 제도를 살펴보고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9년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29.7% 증가한 3,305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장기손해보험은 과거 3년 동안 339.4%나 증가하였다. 2009년 적발인원은 5만 4,269명으로 전년 대비 32.3% 증가하였으며, 장기손해보험의 증가율이 자동차보험의 증가율을 추월하였다.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의 총 원수보험료 중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험사기 규모도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기 피해액과 혐의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실제로 보험사기가 증가한 이유도 있겠지만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시스템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전반적인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자동차보험보다는 장기손해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의 적발금액과 적발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방법별로 구분해 볼 경우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보험금심사 과정에

서 적발되는 만큼, 철저한 보험사기의 조사·적발을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지급 심사기간이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심사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학습효과로 인해 보험사기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 의도적인 민원제기를 통해 보험금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로 귀결된다. 결국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보험종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험금지급 시기를 너무 짧게 규정한 나머지 보험사기 및 소송비용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다수 보험계약자의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금 지급기한이 30일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45일이다.

그러므로 보험사고 발생과 관련한 정보가 주로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는 정보의 비대칭을 인정하고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지급 기간을 주요국처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금지급 심사에 대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손해보험 및 기타 보험종목의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이상우(선임연구위원) | CEO Report

최근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기업의 부채 경감 및 근로자의 비상시 자금수요를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는 중도인출이 제한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경직된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중산정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니즈가 확대되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기업 및 근로자가 2010년 퇴직보험(신탁)의 종료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중간정산이 퇴직연금 활성화의 핵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급여의 소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기업의 퇴직금 부담감소, 퇴직금제도에서의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1998년에 도입한 제도로 근로자 또는 기업의 요구만 있으면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2008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70.8%가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6년의 68.3%에 비해 2.5%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중산정산 실시 기업은 제조업의 77.4%가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설

업(66.1%), 서비스업(65.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기업의 80% 이상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84% 이상이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수가 많고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일수록 중간정산을 보다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정산을 실시한 원인으로 “근로자가 몫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법정 퇴직금제도 내의 중간정산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퇴직급여를 임금후불개념이 아닌 사회보장개념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있다. 즉,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개념에 입각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퇴직연금 가입률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를 위해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간정산 확산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반와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중간정산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정산제도를 단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기업 및 근로자의 선택권 제한과 법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인 폐지가 요구된다. 중간정산제도의 단계적 폐지는 제한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단계, 법정 퇴직금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단계, 완전히 폐지하는 단계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폐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조건을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보다 다소 완화함으로써 법정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법정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기능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의 보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중도인출은 무주택자 주택가입시,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시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 충족시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중도인출 허용하도록 하고 담보대출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범위 내에서 담보대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으로 현행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및 퇴직연금)를 퇴직연금중심으로 단일화하여 퇴직연금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등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차원에서 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대비차원에서 퇴직연금 임의가입방식을 향후 의무가입방식으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규모(영세기업→중소기업→대기업), 기여형태(사용자기여분 의무화→근로자 기여분 의무화)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최형선(연구위원) | CEO Report

최근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신용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에 한해서만 신용카드를 수납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들의 협상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및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다시 첨예화되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경우 그 동안 크게 발전하는 가운데 신용카드시장의 제도, 가맹점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개선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정부가 조세 투명화 등을 위해 실시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인해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시장을 규제하는 여전법, 높은 수수료(가맹점수수료, 카드이용수수료)와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시장구조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개선논의를 정리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관련된 신용카드 수납, 가맹점수수료 등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여, 현재 보험회사의 신용카드 수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등에 힘입어 200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수와 신용카드 가맹

점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업종별로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필수재 관련 업종에는 낮은 수수료, 유흥 및 사치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평균 수수료는 2000년을 기준으로 2.29% 수준에서 2008년 2.22%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신용카드시장은 양면시장으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와 가맹점에 신용카드 회원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를 협상력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시장 구조는 3당사자체제와 4당사자체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 규제는 여전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여전법 제3조와 제19조에 따라 신용카드 수납 거부 및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가 금지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 및 지급수단별 가격차별화를 허용하는 추세인 만큼 제3조와 제19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하가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스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나라 평균인 2.22%보다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0.7%), 호주(0.8%), 덴마크(0.9%)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1% 미만이며 나머지 국가도 2.0%를 넘지 않는다. 과도한 수수료는 상품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신용카드시장을 왜곡시켜 신용카드시장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사는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격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사가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가맹점 모두 수수료 협상에서 불필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보험상품은 금융상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 가맹점수수료는 상품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신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장기상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1.2%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 이용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회사도 카드 수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김동겸(선임연구원) | CEO Report

2010년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각 국은 서울 선언문에 합의하였다. 동 회의는 세계경제가 ‘위기를 넘어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서울 선언문을 통해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정망, 글로벌규제 프레임워크, 무역, 비즈니스 서밋, 개발 의제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합의가 이루어졌다.

금융규제 개혁안의 내용은 크게 바젤은행

감독위원회(BCBS)가 제안한 새로운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시스템 상 중요금융기관 규제 및 감독 강화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은행의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는 자본 구성의 강화, 리스크 포괄 범위의 확대,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비율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은행이 보유할 최소자본비율을 현행 바젤Ⅱ보다 크게 강화하였으며, 시기별·국가별·은행별로 규제비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특히, BIS 비율이 높으나 손실을 흡수하지 못하여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실흡수력이 높은 자본인 보통주 자본을 종전보다 엄격히 정의하여 자본의 질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기존의 바젤Ⅱ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신용등급에 무관하게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자본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만기불일치 해소를 위해 국제 최저 유동성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둘째,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상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체계, 작업절차 및 이행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국에서는 자국 내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의 대마불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경우 Global-SIFI로 별도 지정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주로 은행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

다. 그러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준비 중에 있어 보험권 내에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권역별로 자금조달, 투자방식, 핵심사업 부문, 노출된 리스크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 방지를 위한 미시건전성 감독규제에 있어서는 금융권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체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금융시스템의 혼란 방지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에 있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타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전이를 고려한 규제체계 수립이 요구된다. 즉,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도입 시, 산업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 및 감독체계 수립이 요구된다.

첫째,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바젤Ⅲ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본구성의 강화를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바젤Ⅲ의 보통주 자본 위주의 강화보다는 Solvency II의 기본 자본 위주의 강화가 보험산업에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단된다. 2012년 시행 예정인 Solvency II의 경우 이미 높은 리스크를 보유한 사업영역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을 요구하고 있다. 바젤Ⅲ 도입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둘째, 레버리지 비율 규제의 경우 보험산업에서 보험료와 부채에 대해 일정한 자본을 요구하고 있는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특징을 보임에 따라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은 수취업무 이외에도 은행 간 거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본조달이 이루어지는 반면, 보험회사의 경우 대부분 보험영업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게 되어 레버리지 비율의 추가적 도입은 보험영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1년 4월 적용 예정인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의 경우 보험료나 준비금 증가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위험자본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에 모두 자본규제가 적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보험산업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선정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공동계정(General Retail Pool) 운영체계

최형선(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위원) | CEO Report

지난 11월 24일 국회에서 발의(이사철 의원 대표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특정 업권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공동계정 도입과 관련하여 영국의 공동계정(*general retail pool*) 사례가 언급되면서 그 운영체계 및 특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의 공동계정 도입 배경, 운영체계 및 기능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영국은 2001년부터 통합 예금보험기금 체계인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 개별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운영하였다. 이후 금융권의 겸업화 진전으로 기존의 업권별 감독체계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 6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을 제정하면서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를 설립하였다.

FSCS의 운영은 사후각출방식이 원칙이다. 금융회사별 보험료 부담은 기금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은 모든 금융업권이 함께 부담하되, 개별 금융권 소비자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금융업권에서 부담한다. FSCS는 보험료를 과거에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보험료 수준과 향후 1년 이내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납부그룹별로 징수한다. FSCS는 하위그룹 내에서 초과기금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예금보험료를 해당 회사에게 상환하고 있다.

영국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는 2007년 FSCS 예금보험기금 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공동계정 도입이 추진되었다. FSA는 공동계정 도입으로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유사시 필요한 자금을 공적자금의 도움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예금보험 관련 법안의 개정 없이 확대 규정의 해석을 통해 동계정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공동계정이 도입된 예금보험기금 체계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보험료 부과대상은 5개의 상위그룹과 각 상위그룹의

하위그룹 등으로 새롭게 분류하고 있다. FSCS는 사후각출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보험사고 시 하위계정으로부터 분담금 범위 내에서 각출하여 지급하며 자금이 모자랄 경우 상위그룹과 공동계정에서 조달한다. 하위그룹과 상위그룹을 통한 재원조달이 충분치 않을 경우 공동계정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예금보험기금의 연간 보험료 부과한도가 각 하위그룹별로 설정되어 있고 총 한도는 최대 41억 파운드이다. 셋째, 회수된 자금은 규정에 정해진 순서와 분담금 규모에 따라 분배된다.

영국은 공동계정을 도입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보험료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적정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권별로 시스템 위험 가능성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컨설팅이 진행되었고 그 보고서가 2010년 2월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KIRI Weekly

인도 보험시장의 현황 및 시사점

서대교(연구위원)·김미화(연구원) | KIRI Weekly

제66호

우리나라는 보험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성장세도 완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외 보험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거대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 중 하나이므로 인도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인도는 최근 연평균 8~9%대의 급속한 경제성장률과 11억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 확대, 중산층 증가로 인한 인도 소비시장의 확장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는 인도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도 보험시장은 외국인 지분을 한도를 26%로 제한하고 있어 단독 진출은 불가능하며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만 가능하므로 인도 보험시장 진출 시 주재사무소 형태로 진입하여 차후에 합작(Joint Venture)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합작형태로 진출 시에는 인도의 기업문화 및 제도, 현지실정에 맞는 영

업조직과 관리조직의 구축 등을 통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소액보험시장에 대비한 상품개발 및 판매전략 수립도 요구된다. 인도정부는 소액보험 사업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소액보험 분야에서 인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소액보험 관련 상품개발과 판매를 통한 차별화된 현지 보험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손해보험 부채의 리스크 마진 -해외사례 중심-

김소연(연구위원) | KIRI Weekly

제67호

국제보험회계기준 두 번째 도입단계(IFRS 4 Phase II)에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부채의 공정가치 일부인 리스크 마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장가치를 관찰할 수 없는 부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장원리의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공정가치는 현금의 시간가치와 현금흐름과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리스크 마진이란 부채의 최선추정치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분포의 꼬리에 해당하는 사건까지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아

니다.

본고에서는 캐나다 손해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결정론적 방식인 가정 접근방식과 캐나다 생명보험, 호주,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확률론적인 백분위 접근방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확률론적 방식 중에서도 CTE가 타 방식에 비해서 국제계리사회(IAA)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권고하는 리스크 마진의 특성을 잘 반영했다. 특히 왜도(Skewness)가 높은 분포 사용 시, CTE 적용의 타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확률론적 방식과 함께 가정 접근방식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리스크 마진을 처음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보험업계에 참고 기준 역할을 해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 접근방식은 보험상품 간에 혹은 보험산업과 다른 산업 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힘든 점 때문에 단독적으로 사용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회사 자체에 맞는 주요 가정을 잘 선별하면, 분포 추정에 따라 여러 가지 값을 산출하는 확률론적 방식에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거시경제지표로 본 기준금리 인상 국가의 특징 및 시사점

최형선(연구위원)·최원(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제68호

최근 세계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좁은 의미의 출구전략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호주, 노르웨이, 이

스라엘 등은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하반기 기준금리를 각각 인상함으로써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 유럽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급된 단기 유동성은 대부분 회수하였으나 기준금리는 인상하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호주, 노르웨이, 이스라엘의 경우 GDP, 민간소비 등 실물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물가와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호주, 노르웨이의 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를 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의 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를 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국가의 부동산 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실물지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호주, 노르웨이, 이스라엘의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은 실물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국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경기회복보다는 물가 및 부동산 시장 회복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DB형 퇴직연금 적립규제동향 및 시사점

신종협(연구위원) | KIRI Weekly

제69호

OECD 국가의 퇴직연금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인 확정기여형 비중은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확정기여형 비중이 증대하고는 있지만, OECD 국가들에 있어 적지 않은 수의 기업 및 근로자들이 확정급여형을 선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을 통한 DB형 연금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성숙기에 진입한 OECD 국가는 기존의 획일적인 적립규제 정책에서 탈피하여 금융환경의 여건을 반영한 이원화된 적립규제정책을 수립·운용하고 있다. 즉, 금융위기 시에는 연기금의 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존의 적립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여 주고 있는 반면, 경기호황기에는 적립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적립규제정책으로는 연금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합리적 평가, 정량적 기법에 의존한 적립금액 산정의 위험성 인지, 경기호황 시에 적절한 수준의 적립 장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에 잉여금 배당 허용, 적절한 회계기법을 사용한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 신축적인 적립규칙 사용, 안정적 규제환경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OECD 국가의 적립규제 트렌드를 고려할 때, 근로자 수급권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환경의 여건을 적절히 반영한 적

립규제정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정급여형의 시장 점유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OECD 국가의 확정급여형 정책 변화를 고려한 체계적인 적립규제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일천하고 선진국과 같은 수급권 보장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적립금 규제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 수급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OECD 국가의 이원화된 적립규제 특징과 그 유용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특성에 부합될 수 있는 경기 역행적 적립규제정책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행동재무론 관점에서 본 401(k)의 디폴트옵션 정책과 시사점

이경희(전문연구위원)·최이섭(연구위원) | KIRI Weekly

제70호

디폴트옵션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행동재무론자들의 주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401(k) 제도에 적용되었으며 상당한 성과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자동화 프로그램 (automatic program)으로 불리는 디폴트옵션 정책은 인간의 행동에 존재하는 타성의 힘을 인지하고 이를 저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제도 가입, 기여율, 투자 단계에 대해 디폴트 규칙을 옵트 인 방식에서 옵트 아웃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가입 단계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적용 제외를 신청하지 않는 한 특정 기여율 및 자산배분을 요건으로 제도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기여율을 높이기 위해 임금인상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기여율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활용되고 있다. 투자 단계에서는 근로자들의 자산배분 관련 지식이 높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도 이를 제고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산투자 기능이 설정된 투자옵션을 디폴트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자 연령에 따라 자산배분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라이프 사이클 펀드, 밸런스형 펀드, 매니지드 어카운트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6년 8월 제정된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에서 자동가입, 리스크가 존재하는 디폴트 펀드 제공을 적법하다고 인정함으로써 디폴트옵션 정책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탁자 책임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과 같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DC·IRA제도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폴트옵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들이 충분한 퇴직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동기여 옵션을 옵트 아웃 방식으로 디폴트화하는 방안과 적절하게 분산된 투자방식을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대환(연구위원)·김혜란(연구원) | KIRI Weekly

제거호

우리나라의 공적건강보험은 의료비 지출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고, 재정악화로 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와 같은 의약품 부당거래가 만연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및 약국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가 제약회사 전체 매출액의 20%에 달해 사회적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의 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를 인상시켜 국민들의 소득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에 재분배되고 있다. 더욱이 리베이트로 인한 약제비 증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뿐 아니라 민영건강보험의 손해율도 악화시켜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약제비 증가요인으로 지적되는 고평가된 복제약 가격, 보험약가 결정방식, 유통 및 품질관리, 과도한 약 사용량 등이 리베이트를 유발하고, 리베이트는 다시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고평가된 복제약 가격은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들의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제약산업이 영세성과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국에서는 약제비 감소를 위해 복제약의 사용을 유도하지만 복제약 가격이 고평가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제약 사용의 유도 정책이 약제비 및 전체 의료비를 감소시키기에는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리베이트 공급자와 수요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와 같은 직접적인 제재와 함께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을 규제하여 리베이트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완적

인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재수위가 높지 않은 쌍벌죄는 리베이트를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복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게는 면허를 취소시키는 “삼진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이승준(연구위원) | KIRI Weekly

제72호

리스크 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OECD 논의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기업지배구조 체계의 기초,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해관계자의 역할, 공시와 투명성, 이사회들의 책임 등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분야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사회들의 책임에서 주요 경영진 보수의 장기적 주주이익과의 일치와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의 확립을 강조한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써 지나친 단기성과추구와 과도한 리스크 수용으로 이끄는 보수 및 성과체계와 함께 기업조직 내에서 이사진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결여 등 리스크 관리의 실패가 지적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의 실패와 왜

곡된 보상체계는 결국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들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현재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사회들의 독립성과 함께 금융산업의 발전이 불러올 상품구조의 복잡성, 금융복합그룹의 리스크 등을 이해 및 통제할 수 있는 경영진 및 이를 견제할 이사회들의 전문성을 함께 키워야 한다. 특히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보험산업의 경우,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독립성과 함께 다루어져야만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상의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의 비용감소를 통한 손해율 개선 방안

김대환(연구위원)·기승도(전문연구위원) | KIRI Weekly

제73호

자동차보험상품은 각종 법률의 영향을 받아 자동차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 피해자의 모든 경제적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완결된 구조 때문에 모든 손해보험회사들의 상품은 동일한 형태로 단순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취할 수 있는 경쟁방법은 가격경쟁으로 제한된다.

자동차보험료 가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환경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발적으로 손해를

변동에 연동하여 보험료를 인상·인하한다. 즉, 시장원리에 따라 보험료가 균형가격으로 결정되므로, 비합리적인 사회적 압력으로 보험료 수준이 결정된다면 시장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료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압력보다는 손해율이 악화되는 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는 방법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손해율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인은 손해액이므로, 보험료 원가를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해액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도로 및 교통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주행거리에 연동한 제도 도입, 의료수가제도의 개선, 보험사기 줄이기 등이 있다.

평판리스크와 윤리경영의 역할

김경환(수석연구원)·이종욱(연구원) | KIRI Weekly

제74호

현대사회에 있어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risks)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이 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엔론(Enron), 월드컴(Worldcom) 등 유수의 기업이 내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잃고 몰락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많은 기업들은 평판리스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기업의 평판(reputation)이라 함은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expectation)와 경험(experience)을 바탕으로 굳어진 믿음과 의견,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등의 총체를 의미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평판이라 함은 보다 다차원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바, 재무 건전성, 소비자의 신뢰, 사회적 책임, 규제에 대한 순응 등 기업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든 환경적 요소들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에 있어서는 시장·신용 및 금융리스크보다 평판리스크가 기업을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이 기업평판의 관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윤리경영의 평가지표와 연결시켜 본 결과,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업 경영자들이 기업평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평판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자사의 평판리스크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에 투자하기에 앞서, 최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윤리경영을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평판리스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개인과 기업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해당 개인과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 책임이다. 이에 더하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도요타 사태가 시사하는 점을 살펴 보는데, 보험회사는 윤리경영을 실천함에 있어 윤리경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데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본 보험법 시행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영수(선임연구위원)·김경환(전문연구위원) | KIRI Weekly

제75호

일본에서는 보험법이 4월 1일자로 시행됨으로써 보험사업 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보험법의 제정·시행은 1899년에 상법이 제정된 지 100여년만의 일로서, 그동안 분쟁 발생 시 많은 경우 판례에 의존하여 처리되어 오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보험법은 보험계약 이외에 공제계약 등을 통일적으로 규제함은 물론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많은 조항이 개선되었다. 우선 최근 들어 널리 보급되어 중요성이 높아진 상해질병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계약과 구분하였다. 또한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금 지급시기, ‘개입권’제도, 피보험자에 의한 해지청구 제도 등과 같은 조항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의해 보험계약이 불건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중대사유 해지 제도 등도 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가해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금부 청구권에 대해서 선취 특권을 부여하고, 보험금 수령인의 변

경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보험업법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보험계약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담은 일본 보험법의 제정 및 시행은 우리나라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 체계의 정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상법 보험편을 상법에서 독립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소비자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험계약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켜 규제함으로써 일원화된 감독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기 용인도 분석에 의한 보험사기 방지방안

송윤애(연구위원) | KIRI Weekly

제76호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 결과 국내소비자의 보험사기 용인도가 미국소비자의 보험사기 용인도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소비자의 24.3~35.8%는 각 보험사기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미국소비자의 2.2~4.9%는 각 보험사기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국내소비자의 경우 보험금청구경험이 있는 개인일수록 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보험금청구경험이 있는 개인일수록 보험사기 용인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소비자의 보험사기 용인도가 미국보다 높다는 설문결과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대응강화를 시사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 조항의 신설은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보험사기 방지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기의 법적 정의를 통한 범위설정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일부 연성보험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보험사기 사전적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보험금청구경험과 국내소비자의 보험사기 용인도 간 정(+)의 관계는 보상직원의 업무평가구조와 업무태도 및 성향 등 현행 보험금지급체제가 보험사기에 취약함을 방증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상직원의 업무평가에서 조기합의 비중 등 보험금지급체제가 보험사기 방지 관점에서 효율적 이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에 대한 논의

최형선(연구위원) | KIRI Weekly

제7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금지대상 금융상품에 어떠한 보험상품이 포함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동 개정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금지 대상 금융상품은 ①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과 ② 신

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등이다.

보험상품은 금융상품으로서 특히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위험보험료와 일정한 이율이 적용되는 저축(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어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는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상품과 위험보험료와 저축(적립)보험료가 결합된 상품으로 분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위험보험료로 구성된 상품은 대부분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상품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성 상품이다. 다음으로 위험보험료에 저축(적립)보험료가 결합된 상품은 종신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은 보험상품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성 상품이다. 대부분의 장기보험상품 보험료 중에서 저축(적립)보험료는 위험보험료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보험은 예·적금(예정이율 적용) 또는 금융투자상품(변액보험)과 유사한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가 결합된 형태이며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적금과 금융투자상품이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장기보험상품도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정부의 감독규제 방향에도 부합된다.

CDS와 DCDS,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원칙 적용해야

김해식(전문연구위원) | KIRI Weekly

제78호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신용위험 보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금융상품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들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는 금융업권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규제 차익을 유발하고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신용부도스왑(CDS)이나 채무면제/유예계약(DCDS) 등은 신용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신용보험과 동일하나, 신용보험보다 낮은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CDS는 신용보험과 유사하지만 파생상품에 해당하여 그동안 거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은 가운데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일반투자자의 투기적 매입에 대한 전면금지가 논의된 바 있다. DCDS는 외형상 채무자와 채권자의 양자 계약으로서 대출의 일부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위험인수자로서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서 사실상 금융회사가 신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DS와 DCDS에 대해 ‘동일위험 보장, 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DS의 경우 파생상품의 특성을 유지하되 시장 유동성을 제약하는 부작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신용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자본규제 등을 준용하여 규제차익을 줄여야 할 것이다. 한편, DCDS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사실상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DCDS를 보험업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금융기업에게 적절한 건전성 규제를 부여하고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일본의 지급여력제도 변화와 시사점

정동식(수석연구위원) | KIRI Weekly

제79호

미국 NAIC는 C3리스크(금리 및 시장리스크)에 대한 지급여력제도(또는 RBC제도)의 개선을 진행하였다. 이 개선은 원칙중심 및 확률론적 시나리오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NAIC는 최근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가치 기준의 지급여력기준금액 평가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일본 금융감독청도 2009년에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여력제도를 일부 개정하였다. 일본 금융감독청은 부채성 자본, 이연법인세자산 등에 대해서는 한도를 설정하고, 장래이익에 대해서는 계상에서 제외하도록 지급여력금액의 계상 방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위험계수의 신뢰수준, 분산투자에 의한 리스크경감효과 반영방법 등을 일부 개선하는 방법으로 지급여력기준금액의 계상 방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일본 금융감독청도 미국처럼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가치 기준의 지급여력기준금액 평가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지급여력제도 개선 사항은 우리나라 금융감독

당국이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보험회사들이 자기자본의 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회사들이 경제적 가치의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고,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 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미국 및 일본의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당국은 가용자본 내 항목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미국 및 일본의 경험은 국제적 정합성, 은행규제와의 정합성 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및 일본의 사례는 금융감독당국이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관련 위험계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홈쇼핑 보험판매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안철경(연구위원)·서성민(연구위원) | KIRI Weekly

제80호

2003년 이후 TV홈쇼핑 방송을 이용한 보험판매가 시장에 도입되었다. 홈쇼핑 판매는 거래비용 절감, 편리성 및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 확대 등과 같은 장점으로 주목 받고 있다. 홈쇼핑에서 판매한 수입보험료는 FY'09 기준 2조 3천억 원(잠정치)에 달하며, 관련 수수료 수입도 4,8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였다.

홈쇼핑 보험판매는 단순 저가형상품에 부합되는 채널이므로 채널의 성격에 맞도록 홈쇼핑 판매상품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복잡한 상

품을 홈쇼핑 채널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보험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홈쇼핑 보험상품으로는 단순 및 표준화, 저가격 상품군에 속하는 자동차보험, 주택종합보험, 정기보험, 어린이보험 및 단순 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홈쇼핑 채널은 보험설계사(대면채널)에 비해 허위·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홈쇼핑 보험판매는 광고의 활용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홈쇼핑 채널에 대한 규제 강화는 보험소비자 보호가 주된 목적이지만, 규제방식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자 니즈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판매채널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라는 규제 목적 달성과 함께 비대면 판매채널의 활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홈쇼핑의 불완전판매는 광고에 직접 기인하여 유발되기도 하지만, 주로 상담원(텔레마케터)의 부실 설명 등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상담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보험판매방송에서 불공정한 관행 또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홈쇼핑사 또는 광고주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현재는 판매에 관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보험회사에게 귀착되고 있으나, 향후 쇼호스트의 금지어 사용으로 인한 제재금 등 홈쇼핑 광고제작과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 또

는 홈쇼핑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홈쇼핑 보험판매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연합 경쟁법 상의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과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이종욱(연구위원) | KIRI Weekly

제81호

유럽연합(EU)은 2003년에 제정되었던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이 2010년 3월 31일부로 일몰됨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을 채택하여 보험산업의 경쟁촉진적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면제를 연장하였다.

유럽연합 실행조약 제101조는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3항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럽연합은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의 제정을 통해 일부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면제를 명문화하여 왔다.

새로 채택된 일괄면제규정은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험통계의 축적 및 연구와 공동(재)보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보험산업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이는 보험이 보장하려는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함에 있어 과거 경험통계의 축적과 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

며, 특정 형태의 리스크는 여러 (재)보험회사가 공동인수 해야만 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경쟁법의 적용면제를 받아 오던 표준약관과 안전장비의 시험 등과 관련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경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보험업법의 상호협정 인가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를 명문화할 경우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공정거래법 상 공동행위의 인가나 보험산업 적용 제외의 명문화를 통해 경쟁촉진적인 보험산업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법률상 적용이 제외되거나 공동행위를 허가한다고 해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법률비용보험의 특성과 운영체계 구축방향

이창우(연구위원) | KIRI Weekly

제82호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법률서비스를 담보하는 법률비용보험의 수요가 실화책임법 위헌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상해사고 위헌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동안 법률비용보험중합보험에서 특약 형태로 공급되었던 법률비용보험이 향후에는 전문화된 단독 보험상품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비용보험은 신용상품의 일종으로써 서비스공급자와 이용자의 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신용상품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진단하여 수요자에게 적절한 서비스의 양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상품이 해당된다. 이러한 신용상품은 소비자가 사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적절한 양을 결정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공급자가 제공한 서비스가 필요하였는지 혹은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한 상품의 양과 질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신용상품 서비스를 담보하는 법률비용보험은 신용상품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 측면에서 존재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률비용보험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약자인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고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과잉서비스 제공 등 기만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신용상품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혹은 필요하지만 이윤이 적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비용보험의 경우도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기만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급자한정 법률비용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금심사 기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완 필요성

이경희(전문연구위원) | KIRI Weekly

제83호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퇴직자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급이 확정된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함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FY2009 기준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80.8% 성장한 6,257억 원으로 추정된다. 즉시연금의 연금지급 형태는 종신행, 상속형, 확정형으로 설계되어 가입자가 원하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종신행과 상속형은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다. 확정형을 제외한 종신행이나 상속형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관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 55세 남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활용하여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과 합산한 확정소득이 64만 원(일시납 5천만 원)~87만 원(일시납 1억 원) 수준에 달한다. 이러한 소득을 통해 필요한 생활비(126만 원)의 50~70% 수준을 충당할 수 있다.

보험회사 및 정부는 퇴직자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회사는 퇴

직 시점에 압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한 노후설계 자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연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금상품(예 : 정액방식과 변액방식을 통합한 하이브리드상품, 위험률세분화상품 등)을 개발하도록 한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연금소득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사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연금소득의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과 손해를 증가율의 관계 검토

최영목(연구위원) | KIRI Weekly

제84호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최근 수년간 장기손해보험에서 매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회사 대부분이 최근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에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한 반면 장기손해보험에서 매년 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정 종목의 높은 성장세가 부적정한 가격책정이나 언더라이팅을 통한 것이라면 손해율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리스크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성장세가 지나치게 높은 보험종목은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높아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종목별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장기손해

보험의 경우 성장률이 높을수록 위험손해를 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적정한 가격책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모든 보험종목에서 성장률이 높을수록 오히려 손해율 증가율이 감소하여 수익성 측면의 문제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높을수록 손해율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반면에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성장률이 높을수록 위험손해를 증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들은 장기손해보험에서 담보별 언더라이팅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면, 감독당국은 지나치게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과 같이 성장률과 함께 위험손해율 증가율도 높은 회사는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한 가격책정 및 담보별 언더라이팅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감독당국은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이 높은 종목의 경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종목별 불완전판매율 공시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옵션 현황 및 시사점

권용재(연구위원) | KIRI Weekly

제85호

생명보험회사가 공지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4월13일 기준으로 18개 생명보험회사가 변액연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최저연금 적립금보증(GMAB)은 18개 회사가 모두 발행하고 있고 전체 수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중에는 기납입보험료 환급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스텝업과 롤업이 그 뒤를 이었다. 스텝업 보증의 경우 다수의 생명보험회사에서 보증수준의 증가에 제한을 둬으로써 최저보증리스크의 현실화를 막고 있는데, 직전 보증 수준의 80%나 120%를 최대한도로 설정함으로써 펀드 가치의 급격한 증가가 보증수준의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회사는 계약자적립금에서 기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채권형 펀드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스텝업 보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변액연금이 다른 종류의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특정 펀드에 대한 편입 비율을 제한하는데, 이는 최저보증리스크를 줄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 등으로 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해약이 쉽고, 채권형 또는 주식 비중이 높은 혼합형 펀드 편입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강제함으로써 보험회사가 감당하는 최저보증리스크를 줄이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변액연금상품은 최저보증리스크의 현실화를 막을 수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경우 리스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품디자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 단체가 시판중인 변액연금상품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산업 손해를 불균형 원인과 개선방안

기승도(전문연구위원) | KIRI Weekly

제86호

자동차보험 실적손해율이 예정손해율을 상회하는 손해율 불균형 현상은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부문 영업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자동차보험산업에서 손해율 불균형 현상이 지속된 것은 ‘보험회사 경쟁 심화’, ‘소극적 언더라이팅 활동’, ‘요율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견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즉, 2000년 이후 자동차보험 진입장벽이 낮아진 이후 직판회사의 시장진입의 영향으로 시장경쟁이 심화되었고, 보험회사들의 언더라이팅 활동은 소극적으로 되었다. 이는 자동차보험 요율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태도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손해율 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손해보험산업 전체적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즉, ‘장기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상품에서 얻은 수익으로 자동차보험 적자를 메우는 형평성 문제’ 및 ‘자동차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손해율 불균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보다는

손해율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율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각종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산업에서 손해율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손해율에 부합한 요율조정’, ‘채널을 활용한 계약자 구성비 안정화’,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의 지속’ 및 ‘소비자와 소통 강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금융감독체계 개편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조용운(연구위원) | KIRI Weekly

제87호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세계적 금융 위기를 초래한 것과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 양원은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 소비자금융보호청, 연방보험감독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연방금융감독 기구의 기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연방금융감독기구의 통합, 국내외 금융산업의 모니터링 강화, 보다 엄격한 건전성 기준부과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및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금융보호청을 신설하여 공시 강화, 거래의 공정성 제고, 금융상품취급자에 대한 자격요건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연방보험감독청을 설립하여 주정부별로 분산되어 있는 보험감독의 일관성을 꾀하고 단일의 국제업무 창구 마련 및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진일보한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개혁의 내용을 보면 자율과 시장경제의 강조 대신에 모니터링과 금융규제강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제의 강화는 그 규제를 지탱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제를 유발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향후 후속적인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활동보장으로부터 얻어지는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통합금융감독기구를 가지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감독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 금융규제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구의 설립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스템 리스크의 조기감지를 위해 국내외의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전적 대응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별도의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립한 점은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김경환(전문연구위원) | KIRI Weekly

제88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6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5년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실질적인 개정작업이 완료되었다.

금번 개정 법률은 보험업 진입규제 완화, 보

협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그리고 보험상품 개발절차 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들이 보험현실을 외면한 채, 형식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보험영업을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정 법률은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파생상품규제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및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 발생원인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영역 및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파생상품 총액 한도를 엄격히 관리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상품제도 도입은 상품개발제도를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심사 위주로 운영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는 것으로써 보험회사의 창의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보험회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비명시적 규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감독 강화보다는 보험계리인력 및 전산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상품개발능력을 개선토

록 하는 등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제사업 감독일원화, 보험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허용, 금융위의 보험사기 자료제출 요청권 등은 보험업법 개정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금융업권 간 또는 부처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쟁점사항들로서 영역 갈등이나 기관 간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존재하는 바,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IFRS 등 환경변화가 손해보험 준비금에 미치는 영향

김소연(연구위원) | KIRI Weekly

제89호

준비금은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성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환경변화는 준비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손해보험 부문에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의 하나로 손해조사준비금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 IFRS 두 번째 도입단계(IFRS 4 Phase II)에서는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비교적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였지만, 높아지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해 올 하반기에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해조사준비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업비

에 포함되었던 손해조사비가 발생손해액으로 분류 변경되고, 손해조사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준비금이 증가된다. 따라서 늘어나는 부채 규모를 가늠하고 새로운 업무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손해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에 의한 감소 폭과 리스크 마진에 의한 증가 폭이 상쇄되어 명목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계산된다. 손해보험영역에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로의 전환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슈로 전환에 의한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과거의 추세와 다르게 물가상승 폭이 확대되면 과거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있는 지급보험금이나 발생손해액의 추이로 예측하는 지급준비금은 부적절하게 계산된다. 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시 물가상승 폭 확대에 따른 필요 증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부분에서는 물가연동채권펀드나 주식을 이용해 물가상승에 의한 원가상승을 일정부분 해지할 수 있다.

FY2009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성과 분석 및 과제

김대환(연구위원)·최원(선임연구위원)·최이섭(연구위원)
| KIRI Weekly

제90호

FY2009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전과 유사하게 장기보험이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을 주도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 둔화 조짐이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투자영업이익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보험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53.2%를 기록하였으며 성장률도 23.4%를 기록하여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FY2009 중반을 기점으로 장기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과거 신규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한 장기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경우는 원수보험료 성장률이 전년 대비 각각 2.6%, 8.7%에 그치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퇴직연금시장은 144.4%의 고성장을 나타냈으나 손해보험회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하여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평가되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보험영업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1조 5,414억 원의 흑자를 시현하였다. 비용증가에 따른 실적 악화로 적자를 보인 보험영업 부문과는 달리 투자영업 부문이 비용감소로 이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회복하였다.

이와 같이 FY2009 손해보험시장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내용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만큼 손해보험회사가 장기적인 성장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영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장기보험의 안정적 성장 유도과 더불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특정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영업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일부 보험시장이 정체되고 저금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의 비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익창출을 위해 투자영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투자수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자동차보험 위장환자 유발요인 및 대응방안

송윤아(연구위원) | KIRI Weekly

제91호

자동차보험 환자는 대부분 경상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율과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높아 불필요한 입원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평균 70.4%로 일본보다 8배나 높으며, 상해급수 8급 이상의 경상환자가 입원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동병상명의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높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과 입원환자의 높은 부재율은 교통사고 경상자와 소규모병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입원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 등 과잉진료는 의료서비스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 불합리한 입원료 체감율과 통합심사평가기구의 부재, 병상의 과잉공급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50일의 입원료 체감율 미적용기간은 평균 입원일수와 진료강도의 지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심사체

계가 각 보험회사에 분산되어 있어 동병상명에 대해서 보험회사별로 다른 진료비가 청구되더라도 이를 적발할 수 없다. 더욱이 실효성 있는 병상공급 관리정책의 부재와 병상의 과잉공급에 의한 병상이용률 감소는 입원의 적정성 문제와 평균입원일수 증가를 유발한다.

자동차보험 환자에 행해지는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진료기능 및 과정을 중시하고 의원급에까지 확대적용되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둘째, 상해 및 질병을 진료강도의 지속성에 따라 분류한 것을 근거로 입원료 체감율을 적용하고 보험회사 간 심사평가기구를 조속히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병상 의료기관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영세병상 의료기관에 대해 허용병상수 및 급여기간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교육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변혜원(연구위원) | KIRI Weekly

제92호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사회금융교육과 학교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금융체제의 개혁, 소비자보호와 아울러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금융감독당국을 중심으로 학교금융교육 기준 마련, 서민금융지원관련 교육 등 체계적

인 금융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체계성이나 실용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금융소비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이 명확한 금융소비자교육이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일부 학자들은 소비자의 금융지식이 제고되더라도 직접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행동을 취하는 데에는 심리적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금융소비자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금융교육 이외에 적절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및 규제정책들과 소비자의 심리적 성향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 평가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재원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시장평가와 시사점

장동식(수석연구원)·이정환(선임연구원) | KIRI Weekly

제93호

유럽은행감독위원회는 2010년 7월 말에 공표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공표하였다. 유럽은행감독위원회의 위기상황분석은 미국의 위기상황분석 경험에다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와 같은 유럽의 특수한 상황을 추가하였다. 시장참여자들은 유럽은행감독위원회의 위기상황분

석은 유럽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렇지만 유럽은행감독위원회의 위기상황분석을 시장참여자들로부터 분석의 엄격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불신을 받고 있다.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유럽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제 위험성이 저평가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유럽은행감독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강제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위험요인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분석의 투명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유럽은행감독위원회의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향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장참여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투명한 실질적인 계획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감독당국은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장참여자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분석의 엄격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당국은 분석방법, 분석결과, 자본확충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여 시장 불안의 지속 또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발표 시기 및 발표 내용의 조절을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예금보험료를 차등화제도 변화의 특징 및 시사점

최형선(연구위원) | KIRI Weekly

제94호

112

지난 4월 13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이사회는 대형·복합금융회사에 대한 차등보험료를 개선안을 승인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FDIC는 1991년 세계 최초로 예금보험료를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복합금융회사의 리스크 차등화를 강화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이들의 예금보험제도와 기금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대형·복합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를 차등화제도를 개선하였다.

동 개선안은 위험 I 등급 내 부보금융회사를 총자산 100억 달러를 기준으로 대형·복합금융회사와 소형금융회사로 구분하고, 대형·복합금융회사에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예금보험료를 산정한다. 총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대형·복합금융회사는 기존의 위험등급 체계가 아닌 스코어카드를 통해 평가한다. 스코어카드의 평가항목은 부보금융회사의 재무위험과 위험대응력을 평가하는 성과점수와 부보금융회사 파산 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손실률점수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도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예금보험료를 차등화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동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동 제도 시행 초기에는 예금보험료율의 차등폭을 작게

유지하면서 평가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미국과 같이 차등 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대형·복합금융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료를 차등화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은행을 비롯하여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에도 적용이 되는 만큼 금융권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제도 확립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도인출금보증 변액연금보험의 현황과 시사점

권용재(연구위원) | KIRI Weekly

제95호

보험권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을 2000년대 초부터 판매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변액연금보험은 일정 수준의 계약자적립금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보증이 부가되어 연금수급자가 기납입보험료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은 연금 개시 직전에 일정한 수준의 적립금을 보증한다. 반면 중도인출금보증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후에 최소한의 연금연액의 지급이 보증되고 펀드가치가 상승하면 추가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어 은퇴예정자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성요소가 될 경우 연금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 안정화에 더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최저중도인출금보증 상품이, 2008년에는 최저중신중도인출금보증

이 소개되었으며, 이를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한다면 은퇴예정자들에게 중요한 은퇴 후 소득흐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형태의 최저보증 이므로 가입희망자는 종신연금 지급률과 보증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중도인출금보증 변액연금보험이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장점을 널리 홍보하여 판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시점까지 기간이 남은 직장인들은 기대여명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변액연금보험의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은퇴예정자들은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인 최저중도인출금보증 변액연금보험을 은퇴자산에 편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OECD국가의 퇴직연금시장 변화와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이상우(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제96호

OECD 주요 국가들은 최근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퇴직연금시장에서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즉,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은 퇴직연금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주식투자의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 투자수익률이 다소 회복함에 따라 자산배분을 장기투자형 위주로 투자수익율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확대 및 개인퇴직계좌 활용의 가시화, 라이프사이클형 투자상품 활성화 및

부채중심 자산배분 전략추진, 고령화에 대비한 장수스왑 등과 같은 퇴직연금 연계 파생상품 및 수입보증상품옵션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 OECD국가들의 변화는 향후 국내 퇴직연금사업에 진출한 보험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중심의 시장재편 가능성을 염두해 두면서 확정기여형제도 내의 수입보증상품 개발과 관련규정의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파생상품(장수스왑 등) 개발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확정기여형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수입이 보증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상품개발과 더불어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파생상품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확정기여형제도 중심으로의 근로자 및 기업 니즈 변화, DC형 중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국회 상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중심으로의 시장재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투자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연금부채의 변동성을 감안해 적립금을 관리할 수 있는 부채중심 자산배분 전략의 모색과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개발로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부채사이드를 고려하지 않은 자산중심 자산배분이 아닌 부채의 변동성을 고려한 자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자산관리기법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산 배분을 기간별로 조정하여 목표한 수익률을 얻기 위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개발 등으로 수익률확보를 통한 소득대체를 제고가 필요하다.

상조시장 관련 보험산업의 역할과 시사점

황진태(연구위원) | KIRI Weekly

제97호

114

최근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해 상조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일부 상조업체 대표의 횡령을 비롯한 일련의 상조회사 관련 도덕적 해이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민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의 규제를 목적으로 개정할부거래법이 최근 들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소비자피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한편, 대기업을 비롯한 농협과 신협 등이 상조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상조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회사의 상조시장 참여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가운데 상조 관련 보험상품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상조회사와의 단순제휴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시 정액 또는 실손 형태의 상조지원금만을 지급하므로 상조회사가 약정된 상조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 역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되어 보험회사를 통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일부 보험회사가 모든 장례서비스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는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상품을 출시하였는데, 이 상품은 상조업체로부터 야기되는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편

리하고 안정적인 상조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의 상조시장 참여와 관련하여 일각에선 상조 관련 보험료가 상조업체의 회비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상조시장 진출은 적정 보험료 산출기법, 상품개발, 자산운용, 판매채널 등의 경험을 활용할 경우 상조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최근의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불만을 다소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상조시장 진출은 소비자 만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성장동력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상품과 같은 안정적인 장례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상조시장 진출이 상례절차 및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보험회사에게는 중요한 경영상 약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모형 수립 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시장 참여동향 및 시사점

유진아(연구위원) | KIRI Weekly

제98호

2009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의 국내채권 매수세가 확대되었고 그로 인한 국고채 수익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외국인의 매수세와 더불어 국내의 채권수요도 증가하였는데 그 원

인은 부동산 또는 주식과 같은 대체수단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의 채권매수 목적은 재정거래 차익인데, 이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는 내외금리차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미국경제의 회복속도를 고려하면 내외금리차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외금리차가 유지되면 재정거래 차익 및 외국인의 매수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의 채권시장 참여가 증가하면 국내 채권시장이 외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그런데 채권 매수자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국고채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 초안의 공개와 향후 과제

김해식(전문연구위원)·김소연(부연구위원) | KIRI Weekly

제99호

모든 금융상품을 시가(時價)로 표시하는 금융회계의 기본 틀이 2011년에는 완성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2010년 7월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 초안이 공개되었다. 현재 금융회계는 3단계, 보험회계는 2단계로 나뉘어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금융회계와 보험회계 모두 1단계 기준서가 확정된 상태이며, 2, 3단계의 경우에도 초안이 마련되어 2011년에는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단계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 이후에는 보험산업에서도 본격적인 시가회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단계에서는 보험산업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초안이 제시됨으로써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최종안 마련이 임박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보험시장의 유동성 제약을 반영한 이행가치와 유동성프리미엄 고려, 단기 손해보험에 대한 현재가치 적용 제한, 이익의 초기 인식 금지 등 그동안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2단계 초안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아직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위험마진 부분은 최종안이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현재의 보험회사 수익성 분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준비금의 현재가치, 변동성과 이익을 반영하는 마진, 이자율, 투자수익을 포괄하는 손익 정보는 최근 보험회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내재가치 분석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 정책

-칠레와 영국의 비교견적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경희(전문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00호

정부가 2010년 8월 24일 발표한 세계 개편안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일시금 수령 시 세제혜택 축소 등 퇴직연금 시장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시금에 대한 정률공제율을 기존 45%에서 40%로 축소해 일시금보다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였다. 위와 같은 정

부정책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와 효율적인 연금전환(annuitization)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및 감독기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전환 시장이 발달한 칠레와 영국에서는 정부 및 금융 감독당국에서 중앙집중적인 비교견적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소비자보호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칠레의 SCOMP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의무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상품 공급자들이 소비자의 여건에 부합하는 자사 가격을 제시하면 소비자가 최적 조건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금계약의 63.4%가 최저가격조건으로 전환되었으며, 관련 수수료도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투명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된다. 영국의 OMO (open market option)는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데 감독당국에서 표준적인 연금상품에 대해 보험회사별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지급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최적의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연금전환 관련 비교견적 시스템의 운영은 소비자의 정보탐색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내용 및 주요 쟁점

조용운(연구위원)·김경환(전문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01호

민영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상환제여서 피보험자, 보험회사, 요양기관 모두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목돈을 마련해야 하고,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 따른 불편을 감수(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방문)해야 한다. 또한, 피보험자는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하고,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고 있으며 진료비의 적정수준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진료비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심사 및 진료의 적정성 평가 기회를 갖지 못하여 청구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종이서류를 전산 입력함에 따른 저 부가가치 생산인력의 투입, 행정비용 지출 및 기록누락 등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민영의료보험금 청구용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를 종이문서로 발급하여 다량의 종이문서를 생산하고 행정비용의 지출을 감내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요양기관이 진료량 및 진료비를 결정하지만 이들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 있다. 진료비 허위과잉

청구의 적발이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보험회사가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3자 지급제이다. 그러나 제3자지급제에서는 요양기관은 진료 후 전산매체를 이용한 청구절차를 거쳐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으므로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요양기관의 우려점은 요양기관의 현금유동성 악화, 진료시간 지연, 행정부담 증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이 있다. 보험회사의 실무상 우려점은 과오납의 경우 피보험자의 환급 거부, 과잉진료 가능성, 본인부담금 산출의 어려움 등이 있다.

이러한 주요 쟁점의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하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3자청구제가 있다. 제3자청구제에서는 제3자지급제에서 발생하는 요양기관과 보험회사의 실무적 어려움이 해소된다. 요양기관이 청구를 하므로 피보험자에게는 별도의 복잡한 청구절차가 필요 없다. 모든 진료 건이 요양기관을 통해서 청구되므로 소액보험금의 청구권 포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진료비의 심사와 진료의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금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진단서 등 제 증명서 발급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정비는 국민의료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의료비 절감액을 보상 확대 및 보험료 인하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운영효율성 증대, 국가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산업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국제기구의 논의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02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시스템리스크와 관련된 논의가 금융안정위원회(FSB)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엔 서울에서 개최되는 FSB 총회와 11월의 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IAIS에 의하면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시스템리스크의 영향을 받기 쉬운 반면, 금융시스템 또는 실물경제에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거나 증폭시킨다는 증거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FSB가 제시한 시스템리스크 평가기준인 규모, 대체성의 부족, 상호연관성 등을 보험산업에 적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증폭시키거나 실물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 체계를 통하여 완화시킬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겸업화 및 복합그룹화를 통해 상호의존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리스크 관리 및 부정적 외부효과 제어를 위한 감독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그룹단위감독 및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 구축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스템리스크 증가에 따른 포괄적인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와, 시스템리스크 평가수단의 개발이 FSB를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으므로 그 동향을 면밀히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산업의 특수한 사업모형과 시스템리스크와의 관계를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연구와 계획이 필요하다.

기업의 손해보험 구매와 기업가치의 관계

최영목(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03호

최근 들어 리스크관리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관리의 한 축으로서 손해보험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의 고도화 등에 따라 기업의 리스크 특성이 변화하고 크기도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리스크 헤지(파생금융상품 이용 혹은 손해보험 구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0~2009년 사이에 KOSPI에 상장된 777개 비금융기업의 6,364개 관측치를 대상으로 기업의 손해보험 구매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 구매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 상장기업의 손해보험료는 2000년에 2,127억 원(회사당 3.5억 원)에서 2009년 2,621억 원(회사당 4.3억 원)으로 증가세는 저조한

상황이며 총자산 대비 보험료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기업을 손해보험 구매 수준을 기준으로 5개 및 10개 그룹으로 나누어 연도별 기업가치(Tobin's Q)를 산출한 결과 손해보험 구매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가치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 레버리지, 연구개발비, 수익성, 지배주주지분, 배당수준 등을 통제한 회귀모형에서도 기업의 손해보험 구매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이 손해보험 구매를 단순히 비용증가의 관점이 아니라 리스크관리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비금융기업이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데에는 전문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기업은 리스크관리에 있어 손해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헤지 금융기법과 활용

류건식(선임연구위원)·이상우(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04호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출액 증가에 따라 연금재정이 악화되어 정부재정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연금수급자의 생존연장으로 인하여 연금지급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금의 장수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해결법이

시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기법이 적극적으로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퇴직연금 수급자들의 수명연장으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연금지급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금바이아웃(Pension Buy-out), 연금바이인(Pension Buy-in), 장수스왑 등과 같은 장수리스크 헤지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장수스왑은 정부 또는 연금금 등이 장수리스크에 따른 연금비용의 증가를 스왑계약을 통해 거래 상대의 금융회사에 장수리스크만을 이전하는 금융기법이다. 장수스왑은 2009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영국의 장수스왑 시장은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등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2월말 기준으로 64억 파운드 실적을 거두었으며, 2010년도에 100억 파운드(약 18조 원)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향후 퇴직연금의 연금지급 의무화로 인한 기업의 연금수급자 장수리스크 니즈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기관으로서 장수스왑 등과 같은 선진 금융기법의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수리스크의 이전 및 헤지 기법과 다양한 금융상품개발,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더불어 선진국의 장수리스크 헤지 상품개발 및 시장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수리스크 및 가격산정을 위한 적절한 모형설계 및 데이터 축적, 지수개발 등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수리스크 헤지를 위한 상

품공급 확대에 관심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김경환(전문연구위원)·이상우(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05호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안」이 2010년 9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 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마련,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시행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모호한 법 규정과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회사·단체 등이 회원명부나 비상연락망 등의 작성·배포를 금지하는 사례가 법 시행 후 만연하여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05년 4월 발생한 JR탈선 사고 당시에는 부상자 명단을 일일이 당사자의 허락을 받은 뒤 발표함으로써 유가족이나 부상자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또

한 법 시행 이후 TM(telemarketing), CM(cyber marketing), DM(direct mail) 등의 직판회사는 전화나 이메일(e-mail)을 거부하는 소비자가 많아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온라인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제정은 관련 법제의 기틀을 새로이 정비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향후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동 법안의 제정 시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확대되어 중첩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그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또한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에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주체로부터의 단계별 동의수령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등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개인정보 규제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동 법률 도입 시의 혼란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광고 규제의 개선 방향

안철경(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06호

보험시장에서 통신판매, TV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광고 규제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광고는 상품의 특성 상 타 산업과 비교할 때 광고 방법과 내용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고 규제의 정도도 강할 수 밖에 없지만, 현행 보험광고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과잉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광고 본래의 기능 억제, 보험광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심의의 일관성 부족, 금융권역 간 광고 제재의 형평성 결여 등이다. 과도한 광고 규제는 보험광고 본래의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을 억제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생보 및 손보 광고심의위원회를 각기 운영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광고심의의 독립성·형평성·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다. 아울러 광고규제 위반 시 타 금융권 규제 수준과 비교할 때 제재의 방법이나 수준이 상이하여 권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향후 보험광고 규제정책은 광고의 순기능 유도, 소비자의 역량제고, 보험광고심의 위원회의 독립 금융광고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 및 금융권역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을 염두에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 과장·허위광고에 대한 규제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동시에 광고의 순기

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규제방식으로는 사전규제 강화보다는 금융교육 등을 통한 소비자의 역량 제고와 심의의 일관성을 위해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광고 평가 표준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광고심의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독립된 금융광고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사업자로부터 독립성 및 광고심의의 형평성·공정성·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적으로 보험권의 광고심의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광고규제 위반 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국 재보험감독기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07호

재보험에 대한 감독 기준 및 방식이 국가마다 상이하고 각국 감독기관은 타 감독당국에 의해 행해지는 재보험감독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이다. 타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는 해외수재사의 지급불능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부 국가는 해외출재한도 또는 담보요건과 같은 진입장벽을 두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효율적 위험전가를 저해한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이하, IAIS)는 재보험 감독기준의 구체화 및 국제표준화를 통해 재보험거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경 간 거래를 촉진하고자 한다. IAIS는 2002년 ‘재보험사의 감독을 위한 최소요건 준

칙’을 시작으로 이후 재보험 감독에 대한 세부 기준과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 10월까지 재보험 및 기타 위험전가에 대한 준칙을 보험핵심준칙에 삽입할 예정이다. 재보험감독기준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각국이 타 감독당국에 의해 행해지는 감독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되면 해외수재사에 적용된 진입규제 준칙의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최근 EU, 미국, 캐나다 등도 해외수재사에 적용된 진입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함으로써 재보험감독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는 한편, 안전한 재보험거래를 위해 재보험감독기준을 구체화·명문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4월 국경 간 재보험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사라졌으나, 재보험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후속장치가 신속히 지원되지 않는 등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각종 재보험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해외재보험사에 대한 무조건적 진입장벽을 설치하기 보다는 재보험의 실행과 관리에 대한 지침의 구체화·명문화와 재보험인정요건 강화를 통해 재보험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BIS 3와 보험업 건전성 규제

김해식(전문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08호

G20 서울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된 은행업에 대한 새 금융규제안(BIS 3)은 금융업권 간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보험업 자본규제에도 반영

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험권에서도 기본적으로 BIS 3의 기초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험업의 자본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업권 간 일관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BIS 3는 은행이 자본을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여 손실 대응력을 높이고, 부채 만기를 늘리고 안전한 투자를 늘려 유동성을 확보하며, 자산의 보유를 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으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본자본의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유럽 보험업의 새 건전성규제(EU Solvency 2)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선방향과도 일치한다.

다만, 보험업과 은행업의 자산 및 부채 구조가 상이하어 BIS 3에서 제시하는 레버리지와 유동성 규제를 보험업에 반영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은 장기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상대적으로 단기 자산에 투자하는 특성상 BIS 3와 같은 유동성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자산 규모는 이미 자본규제에서 반영되고 있어 추가 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BIS 3가 대마불사 관행의 차단이라는 위험의 집중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보험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논의의 전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지급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특징 및 시사점

최형선(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09호

최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신용카드사와 지급카드 가맹점 간에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000년 2.92%에서 2008년에는 2.22%까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004년 2.33%에서 2008년 1.92%까지 하락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간의 가맹점수수료 차이가 0.30%p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인 만큼 향후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인하 폭은 신용카드보다 더욱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적정한 가맹점수수료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와 그 격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지급카드 가맹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또는 계좌이체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된다면 즉시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험료 수납에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수납을 금지한 일부 보험상품의 보험료 수납에 계좌이체와 함께 체크카드를 활용하게 되

면 보험계약자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수수료 수준에서 체크카드를 통한 보험료 수납이 확대될 경우 보험회사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수수료 인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의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는 지급카드를 통한 보험료 수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유출리스크 증대에 따른 안전망 구축 필요성

산업연구실 | KIRI Weekly

제110호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개인정보침해 건수는 공공부문이 423건(전년 대비 95.8%p 증가), 민간부문이 약 4만건(53.3%p 증가)이며, 이중 약 30~40%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해당한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약 3조 원의 손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체계가 상당부분 법제화되어 있다. 특히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와 관련한 시장참여자들(국민, 공공기관 및 기업체 개

인정보 담당자)의 리스크 인식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개인정보 관리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제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보상 장치 중에서 효율적 범주에 들어가는 보험제도(일명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및 적정 보험료 결정을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안전인증제도 등) 마련과 이에 대한 세심한 확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 Solvency II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 5) 중심으로 -

장동식(수석연구원) | KIRI Weekly

제111호

유럽보험감독자협의회(CEIOPS)는 금융위기 경험, 제4차 계량영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법을 제5차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제5차 계량영향 평가를 통해 가용자본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가용자본의 분류·측정 오류를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기본자본의 요건 강화를 통해 금융위기 기간에 제기된 재무건전성

강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협회의 제5차 계량영향평가는 무형자산위험, 비유동성프리미엄위험, 손해보험의 해약위험 등을 요구자본 산정대상에 포함시켰고, 금리·주가 분석 능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협회는 부동산 및 주식 가치의 급락, 신용스프레드의 급변동, 모든 자산가치의 동시 급락 등을 반영하여 시장위험의 충격 시나리오와 위험 간 상관계수 및 생명보험위험의 충격시나리오를 수정하였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투자영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금리·주가 변동 충격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려된 것이다.

이 같은 협회의 제5차 계량영향평가는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에게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감독당국은 기본자본의 요건 강화, 위험 측정·관리에 대한 보험회사의 능력 제고 등을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은행부와 마찬가지로 보험부문에서도 기본자본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므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는 Solvency II의 충격시나리오, 생명보험위험 평가방법, 무형자산위험 평가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위험을 측정·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Solvency II 처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위험을 요구자본 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의 재보험규제 변화와 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12호

미국의 재보험규제는 주(州)간 규제차이로 인한 비효율, 담보력 감소, 재보험요율 증가, 보호무역주의 등의 이슈로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다. 플로리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해외재보험회사로 하여금 수재위험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만 재보험준비금을 자산으로 계상 또는 부채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러한 100% 담보 설정규제의 본래 목적은 타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재보험회사의 지급책임 이행능력을 제고하여 재보험금을 완벽하게 회수함으로써 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동 규제는 담보력과 재보험요율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건전성 제고를 빙자한 시장제한적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미국은 재보험인정 및 담보설정규제에 대해 건전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살리되 차별적 시장진입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7월 ‘단일 적격 주 감독당국(single-state regulation)’에 의한 통제를 명시한 재보험개혁법(도드-프랭크법에 포함)이 통과되어 주간 규제차이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재보험 회사에 적용된 100% 담보설정규제에 대해서는 플로리다처럼 해외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담보설정비율을 차등화하는 안이 공

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재보험규제 개혁 및 논의의 전개방향은 우리에게 재보험회사의 지급책임 이행능력 및 재보험금 회수 제고를 유도하는 재보험규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는 건전성감독 목적에 충실하되 해외재보험사에 대한 차별적 시장진입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준비금이 100% 면제되는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거나, 신용등급별로 책임준비금을 조건부로 100% 면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적합성 원칙 적용 방향

류건식(선임연구위원)·이상우(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13호

현재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적합성 원칙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연령, 재산상태, 투자경험에 따라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니드와 상반된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장치이다. 적합성 원칙은 미국에서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증권투자 이외에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권유할 경우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가입 근로자 또는 기업이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상품을 비롯한 실적배당형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과 퇴직연금의 근거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퇴직연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설지침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으나, 법률적인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자율규제사항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의무화할 수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감독당국이 제재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자(기업 및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가장 적합한 운용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적합성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나 금융투자상품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중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도입할 경우 적용대상에 확정급여형제도(기업) 및 확정기여형제도(근로자), 개인형퇴직계좌(근로자) 등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실제 적립금 운용자가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회사 현금 보유수준 검토 및 시사점

최영목(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14호

126

손해보험회사의 적절한 현금 보유수준은 유동성관리 및 투자성과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보험회사의 현금 보유수준이 부족할 경우 자금조달을 위한 추가비용 및 긴급한 자산매각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반대로 현금 보유수준이 과다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이에 본고에서 유동비율과 모형을 통해 추정된 현금보유액을 고려하여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현금 보유수준을 평가한 결과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며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유동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사는 보험기간이 긴 장기손해보험 매출비중이 대형사를 초과하고 있어 현금 보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유동비율을 비교하고 기말에 현금부족확률이 최소화되는 기초 현금보유액을 추정하여 실제 현금보유액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부 보험회사는 유동비율이 낮으나 실제 현금보유액이 추정된 수준보다 높았고 일부 회사는 유동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실제 현금보유액이 추정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현금 보유수준 결정과 같은 유동성관리에 있어 유동비율과 함께 미래 현금흐름 및 투자수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즉, 유동성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유동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보다는 장래에 발생할 현금흐름,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 보유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IAIS의 공통감독체계(ComFrame) 논의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오병국(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15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공통감독체계(ComFrame)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3년 이내에 개발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세계적인 거대 보험그룹들은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그룹구조를 최적화시키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그룹단위감독체계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공통감독체계는 국제적으로 활동 중인 보험그룹(IAIGs :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의 적용범위, IAIGs의 구성 및 사업범위, 건전성 등의 양적·질적 요건, 감독협력 및 상호작용, 관할권적 문제 등 5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은 다시 구성요소로 나뉘어 우선순위에 따라 3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도 보험지주회사 형태의 보험그룹의 출현과 이들의 해외 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그룹(IAIGs)의 리스크 관리 등 감독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그룹 단위감독 및 국제적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 구축의 논의과정에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등 금융신흥국의 보험산업 및 보험회사의 특성을 IAIGs 선정과정 및 그룹단위 감독 논의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신흥국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감독체계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감독체계의 구축과정에 각계(학계, 보험 및 금융업계, NGO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소비자 보호 중심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

안철경(연구위원)·김경환(전문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16호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과 하위규정들은 판매채널 선진화 및 영업행위규제 강화를 통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체제를 한 단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보면 첫째,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규제의 신설은 불완전판매나 민원 등을 감소시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줌으로써 보험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시킴으로써 모집종사자의 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보험대리점의 규제 강화는 건전한 보험유통질서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선진화된 보험채널로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 허위·과장광고 규제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의 도입이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감독당국 등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영업행위 규제 준수를 위한 보험회사의 체계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설명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회사별 조직개편 또는 전문회사에 위탁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대면채널을 주된 채널로 활용하는 홈쇼핑, 직판회사(Direct)의 경우 광고규제 준수를 통한 완전판매 달성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감독당국은 설명의무 내용의 중요도 및 현실적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회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에 대해 민원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 계약 및 사고에 대해 서명,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수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상당한 수준의 인프라 비용 및 영업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단계별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효성 및 수행가능성을 고려하여 SMS, 이메일, 팩스 등 전자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교육과 법인대리점 제도 개선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후속조치 및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 방식을 통한 외부 교육의 경우 교육효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평

가와 더불어, 설계사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프로그램 개발, 외부강사 육성 및 교육시설 투자 등 교육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계사 교육 및 법인대리점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들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금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 지속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현물지급형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제공방안

황진태(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17호

최근 급속한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한 상조시장의 확대 속에서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일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상품이 상조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은 사실상 상조회사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한 단순제휴형 상품과는 달리 보험회사가 현물형태의 장례용품 및 서비스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직접 제공하는 방식에 해당되므로 계약자에게 약정된 상조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가능하여 소비자보호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판매 시 보험회사의 리스크는 사망리스크, 미래가격변동 리스크, 상조회사 관련 거래 상대방 리스크 등이 있다.

여기서 현물지급형 상조보험(단순제휴 형태의 상조보험도 동일)의 사망리스크는 일반사망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망을 담보로 하지만 피보험자의 가입연령이 일반사망보험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을 통한 미래가격변동리스크는 보험회사가 장례용품이나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노출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한편, 보험회사가 상조회사와 연계하여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상조회사의 서비스 미이행, 파산, 범죄 등의 상조회사 리스크에도 노출될 수 있다.

이 중 사망 및 미래가격변동리스크는 적정요율 산출을 통해서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다. 반면, 연계된 상조회사가 야기할 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방식이나 자회사를 활용하여 해당 리스크를 내부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자회사 방식은 상조회사를 자회사함으로써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 니즈에 적합한 상품개발에도 효과적이다.

보험회사가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활용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와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생명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안철경(연구위원)·서성민(연구위원) | KIRI Weekly

제118호

2008년 9월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 도입 이

후, 전체 설계사의 46%(생보설계사 57.8%, 손보설계사 26.8%)가 교차설계사로 등록하여 활동 중이다.

생명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제도를 평가하면 영업기반이 취약한 중소형 및 외자계 소속 설계사의 영업기회 확대, 소득 증대 및 윈스톱 서비스 제공 등 정책 목적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첫째, 교차모집제도가 현행 일사전속제 하의 상품 제한성을 보완함에 따라 고객지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차판매 설계사의 약 52%가 소득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 설계사 소득증대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소득수준이 낮은 설계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차모집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설계사간 소득 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육제도 및 전문성 부재로 불완전판매의 증가, 경유계약 등 모집질서가 혼탁하게 될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차모집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부분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교육제도 및 전문성 부재로 활용률이 떨어지고 경유계약 등 모집질서의 혼란이 야기되는 등 제도 정착의 저해요인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설계사들은 제도 발전을 위해 ‘대리점 방식 또는 지원체제 구축’, ‘교육제도 개선’, ‘교차모집회사 수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차설계사가 한 회사만을 지정하여 모집 시 고객의 선호회사 또는 선호상품에 따라 경유처리 모집관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차모집제도가 동일 업종(생보 또

는 손보)은 전속이지만 타 업종에 대해서는 고객의 선택폭을 수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차모집제도의 규제완화, 특히 다수의 교차모집회사 수를 선택하게 하거나, 대리점 방식을 허용하는 경우 현행의 설계사 보수 교육제도와는 별도로 교차설계사 추가의무교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 및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교차모집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불완전 판매 및 계약자 부실관리의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차모집제도의 개선은 당사자인 설계사의 의향을 포함하여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의 다양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간포커스

남유럽 재정위기 추이 및 전망

신중협(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82호

국가부채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① 재정수입 확대 및 재정지출 감축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 ② 국가부채 탕감, ③ 인플레이션을 통한 국가부채의 실질가치 하락 유도 등이다. 남유럽 국가가 유로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방안이 유일하나 포퓰리즘이 만연된 상황에서 동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유로화를 포기한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이 실행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2001년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상황(높은 인플레이션, 국가신용등급 급락 등)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남유럽 국가의 국가부채 문제는 국제 금융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진정될 수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장기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금융개혁법 상원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진 익(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83호

2010년 5월 20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된 금융개혁법 상원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보호기구 설치, ② 상업은행의 투자은행업무 제한, ③ 상업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취급 제한, ④ 대형

금융회사 규모 제한, ⑤ 대형 헤지펀드 등록 의무화, ⑥ 자기자본 추가 적립, ⑦ 사후정리제도 강화 등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개혁법 상원안에 대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자국의 금융개혁법과 유사한 내용의 금융규제 도입을 회원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각국의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한편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의안 도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격규제 채택을 지지하는 한편 수량규제 채택 시에는 국가별 및 업권별 차별성을 감안한 재량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채의 외부효과 크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한편 채권자를 보호함으로써 부실 전염은 차단하되 SIFI의 부도는 용인하는 가격규제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량규제 채택 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국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용인할 수 있는 재량권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업권별로 부채의 외부효과 크기에 상응하는 차등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보사 상장으로 살펴본 보험사 주식가치 평가 방식

이경아(연구원) | 주간포커스

제83호

생명보험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생명보험계약의 장기성과 수익의 이원적 구조(보험수익 및 투자수익)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PER, PBR, DCF, EVA 등 전통적 방법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내재가치법(EV)은 보험영업활동의 보유계약가치와 투자활동의 순자산가치를 모두 반영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 방법은 평가 시 사용되는 가정에 따라 주식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적용이 요구된다.

물가연동국채 재발행 배경과 시사점

이경아(연구원) | 주간포커스

제84호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조정해 채권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채권으로서 발행자에게는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투자자에게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을 제공한다. 동 채권은 2007년 처음 발행되었으나 만기보유 부담과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채 2008년 잠정적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최근 경기회복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6월부터 물가연동국채를 재발행할 예정이다. 장기듀레이션상품의 이자율 헤지 수단인 물가연동국채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채시장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에 대한 은행세 부과 여부 검토

변혜원(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84호

구제금융비용 회수 및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이 높은 금융회사 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은행세의 경우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 부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한편 IMF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 가운데 은행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은행세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고 ‘금융활동세’를 활용하자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미국 및 IMF의 제안에는 은행세 부과 대상에 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금번 금융위기에서 파생상품을 취급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한 예외적인 보험회사의 행태에 기인한 것이며, 보험회사는 고유의 속성상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은행세 부과 대상에 보험회사가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른 금융회사와 세율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공동채권제도의 개념 및 전망

권용재(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85호

벨기에 소재 싱크탱크 브뤼셀 연구소는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채권(blue bond) 도입을 제안하였다. 동 제안의 아이디어는 유로존 각국의 국가 부채 중 GDP 대비 60%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의 트랜치(tranche)로 묶어 공동채권으로 조달하는 한편, 60%를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각국이 신용도, 비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채권(red debt)으로 조달하자는 것이다.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채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유로화 가치가 안정되는 잠재적 효과가 기대된다. 동 제도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외화차입 규제에 대한 소고

유진애(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85호

2009년 4/4분기부터 5분기 연속 외은지점의 단기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자본 유출입 규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외은지점의 단기차입금 증가는 잠재적으로 외환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또한 외환유동성 관련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외은지점은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유동성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외은지점에 단기차입-장기운용을 통한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외

화유동성 관리 리스크 기준 및 안전자산 의무 비율 등을 외은지점에 확대 적용하면 단기차입금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FRS 시행과 비상위험준비금

김해식(전문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86호

2011년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변경되면,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서 자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7천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비상위험준비금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거대 손실에 대비하여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에게 평상시 적립을 강제하는 일종의 안전기금이다. 그러므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분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현행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 세제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이 보험회사의 결산재무제표에서 부채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신고조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잠재성장을 하락 및 인적자본 축적

유경원(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86호

최근 OECD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OECD를 포

함하여 기존 연구는 일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이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인적자본의 역할이 간과되고 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1인당 인적자본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축적되어 왔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동 자본의 축적 속도가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적자본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부 및 동부 유럽국가의 은행 민영화 사례

유진아(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87호

최근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 민영화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는 주로 동부 및 북부 유럽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헝가리 은행 OTP의 경우 주식시장 공모를 통해 정부 지분이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되었고 폴란드 은행 BH는 투자자 그룹이 정부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도 정부가 동 은행의 전환사채를 보유하였다. 체코에서는 5대 주요 은행 모두가 민영화되었는데 모두 전략적 투자자에게 정부 지분이 매각되었다. 스웨덴의 Nordbank는 정부 지분의 일부가 주식시장에서 매각되었고 이후 민간은행과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분이 감소한 경우이다. 이 밖에도 투자은행이 중개기관으로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정부 지분을 50% 인수한 노르웨이 은

행 Den Norske 사례가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요인별 분석 및 시사점

유진아(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87호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생산자물가와 총수요압력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과 수요 양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러나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되고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도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동보험제(coinsurance)의 특징 및 시사점

최형선(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88호

공동보험제란 은행이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보호한도의 일정 부분을 예금자가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예금자(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예금보험제도 하에서 공동보험제는 금융소비자에게 예금보호한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금융회사 선택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건전한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유

인을 제공할 수 있다.

세계은행(2005)은 보고서에서 예금보험제도와 함께 공동보험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공동보험제 없이 예금보험제도만을 도입한 국가보다 은행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보험제 도입이 금융시장 참가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와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공동보험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공동보험제는 금융위기 시 예금인출사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에 대한 소고

권용재(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88호

정부는 2010년 6월 13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통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하는 규제를 2010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2006년 이후 선물환 거래가 단기외채를 증가시키고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심화시킨 주된 요인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는 출구전략 시행을 앞두고 시의적절하며 거시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구전략 시행으로 금리 상승 및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가 확산될 경우,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제도와 플렉스협의거래(FLEX)제도를 통해서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가계부채 우려와 문제점

유경원(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89호

하반기 금리 인상 가시화,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가계부채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혼재한 상태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과도하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가계의 불안감 및 불확실성을 확대하여 가계의 쏠림 현상을 유발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가계부채에 대한 지나친 우려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를 시장 스스로가 가계부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BIS의 거시건전성 체계 구축 내용

최형선(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89호

국제결제은행(BIS)은 6월 27일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지금이 거시건전성 체계(macroprudential frameworks)를 구축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하였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전통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개별 금융회사들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위험추구 행위

를 억제하는 규제 및 감독을 의미한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한 경우 나타나는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차단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전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레버리지, 상호연계, 경기순응성 등의 제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BIS는 구체적으로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LTV, DTI 및 예대율 규제, 위험가중치 조정, 대손충당금 적립 등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남유럽 국가의 과도한 공적연금 의존과 재정위기

이경희(전문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90호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지출 증대는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은 일부 남유럽 국가(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급증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공적연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영(퇴직)연금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적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은 상태이지만 연금수급자가 늘어나고 이들의 사망률 개선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연금 급여 지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대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과도하게 높은 공적연금 의존과 관대한 급여 정책은 국가 전체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노후소득원을 퇴직연금 부문으로 다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영업자수의 구조적 감소 추세에 대한 소고

이경애(연구원) | 주간포커스

제91호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경기회복에 따라 전체 취업자수는 2,400만 명을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으나, 자영업자수는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자영업자수 감소는 경기 움직임과도 역행하는 것인데 이는 자영업자수 감소가 경기순환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감소 추세의 주요 요인으로는 자영업의 초과공급 및 경쟁심화로 인한 자연적 퇴출과 인터넷 확산에 의한 서비스·유통업의 대형화 등을 들 수 있다. 향후에도 자영업자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자산재평가와 기업가치

김해식(전문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92호

자산재평가는 토지 등 실물자산의 재평가를 통해 자본을 늘리고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자산재평가가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앞두고 허용된 최근의 일회성 자산재평가는 재무비율의 기간별 비교를 어렵게 하고 착시 효과를 초래한다. 자산재평가의 긍정적인 효과

가 나타나려면 주기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자산재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자본이익률(ROE) 하락 압력과 함께 지가변동 등에 따라 기업은 잉여금 감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현행 세법도 자산재평가에 불리하여 IFRS 적용 이후에도 국내 기업들이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 공개초안의 내용과 의미

김해식(전문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93호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측정에 관한 국제보험회계기준(2단계 IFRS4) 공개초안이 지난 7월 30일 발표되었다. 이번 초안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준비금 측정에 관한 관점이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초안은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준비금을 매도하여 보험부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이행을 통해 청산한다는 관점에서 보험부채의 가치를 측정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적립해야 할 준비금 규모가 커지고 공시도 늘어나는 부담을 안게 되지만, 보험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져 자본비용이 줄어들고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유형 및 특징

김동경(선임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93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내정책 및 외환보유액 활용이 위기 대응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는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신용공여, 통화스왑, 역내통화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사용되었던 정책 중, 개별 국가차원의 대내정책 및 외환보유액 활용은 한계가 입증되었고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기존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역시 다양한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TF시장의 성장과 향후 과제

권용재(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94호

2010년 2/4분기에 우리나라 ETF시장은 순자산 규모 기준으로 2009년 4/4분기 대비 1조 원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에는 ETF 특유의 장점, 거래세 면제 등의 제도적인 영향과 신종 ETF의 등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TF를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변액보험펀드가 늘어나는 한편 ETF 종류가 더 다양화될 경우 ETF시장의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들은 신종 ETF의 운용방식과 수수료 부과 체계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2012년에 예정된 거래세 부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타카풀 시장의 최근 동향 및 진출 전략

최이섭(연구원) | 주간포커스

제95호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높은 경제성장, 세계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 수, 고소득자 및 젊은층의 증가 등에 힘입어 이슬람식 보험인 타카풀이 주목받고 있다. 타카풀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대의 비약적인 성장을 시현하였는데, 최근에는 연금 및 저축·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로 생명보험 성격인 가족타카풀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타카풀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장개방이 예상됨에 따라 다국적 보험회사들은 면밀한 시장 조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며 타카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소고

유진아(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96호

주택가격은 3저 호황 및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급등하였으나, 분당 등지의 1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로 1990년대 초반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하향 안정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저금리를 바탕으로 상승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것도 2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건설 전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택공급 확대가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중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Y2009 국내 손해보험사와 외국계 손해보험사의 경영성과 비교

김동겸(선임연구원) | 주간포커스

제96호

FY2009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투자여건 개선으로 전년에 비해 17.6% 늘어난 1조 5,414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특정 상품에 편중된 영업방식과 예금, 채권 등 안전 자산 위주의 투자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주가 금융완화조치 내용 및 시사점

최이섭(연구원) | 주간포커스

제97호

일본은행은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급격한 엔화 강세로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8월 30일 추가 금융완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일본은행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제로금리로 금융기관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시중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출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양적 완화기조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동 완화조치가 엔화 강세를 진정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미국의 추가 금융완화조치 시행과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가 향후 일본 외환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커버드본드의 특징 및 전망

이경애(연구원) | 주간포커스

제98호

커버드본드는 부외거래와 이중상환청구권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주택저당증권에 비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투자자에 대한 위험 전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시장의 자금조달원 다양화, 조달비용 감소, 외화장기자금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커버드본드 활성화 및 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커버드본드 모범 규준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BCBS,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장동식(수석연구원) | 주간포커스

제99호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이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에 적용하는 새로운 국제은행자본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010년 9월 12일에 공표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공표한 새로운 기준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할 때,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새로

운 기준이 현행 우리나라 은행의 자본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이 기준은 보험회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감독당국은 이 기준을 보험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제도에 적용할 수 있고, 또한 보험회사들이 이 기준을 경영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는 자기자본 규제 제도, 경영전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새로운 자기자본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의 금융감독 개혁 방향

이정현(선임연구원) | 주간포커스

제99호

EU 회원국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 금융감독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로지역 내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개혁안을 비준하였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실시를 결정하고, 은행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지속할 뜻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미시적·거시적 금융감독 체제가 강화되고 금융기관의 자기책임도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보험회사에의 시사점

안철경(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100호

향후 고객의 모바일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지원하는 웹마케팅 사업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권에서는 대면채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대면채널의 활성화를 위한 고객정보의 획득, 고객별만 대응, 회사의 이미지 홍보 그리고 웹 보험판매 등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판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문제 등 부정적 영향도 예상되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윤리헌장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 전매거래와 거래당사자 보호

김해식(전문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101호

최근 국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생명보험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보험 전매(또는 정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매거래가 도입되면, 보험소비자로서는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생명보험증권을 되팔 수 있게 되므로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수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건강에 문

제가 없는 계층의 보험증권은 전매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된 전매거래 대상은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계층의 보험증권이 될 것인데, 보험회사의 보험금선지급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으므로 전매거래 대상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과다경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보험소비자는 물론이고 일반 투자자에게도 당초 기대된 긍정적 효과 대신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보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주요국 환율전쟁에 대한 소고

유진애(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102호

남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기대보다 낮게 실현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간에 환율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격렬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쳐 금년 6월 이후 원화 가치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와는 달리 원화의 경우 실질 및 명목가치가 2008년 8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아직 낮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은 경기회복 및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풀린 통화가 미국 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보다는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다른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독자적인

통화정책·환율정책보다는 국제적인 공조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교통법규 위반 건수 감소대책 필요성

기승도(전문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103호

자동차보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교통법규 위반자는 무위반자보다 자동차사고 발생률이 약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 증가와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성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또는 안전운전을 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정책 측면에서 교통법규 위반자 신고제 부활,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강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험제도 측면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장치 사용 등 사고위험과 관련이 높은 위반항목을 할증대상에 포함시키고, 평가대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법규위반 할증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자동차보험의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Solvency II 와 유럽 보험산업

변혜원(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104호

2012년 말부터 유럽 보험산업에 적용될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I는 지역 내 보험회사들의 자본 요건과 위험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이다. Solvency II의 지침(Level 1 Framework

Directive)이 유럽의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규제와 관련된 대차대조표 작성 방법 및 주요 구성요소 등은 사실상 확정되었고 계량영향분석 단계 등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최근 Morgan Stanley/ Oliver Wyman은 CEIOPS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QIS5 모형을 이용하여 Solvency II가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Solvency II가 시행되면 대다수 유럽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하고, 보험산업 내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각화된 다국적 재보험사가 상대적 승자가 될 것이며, 상호회사를 포함한 소규모 보험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상품 및 자본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의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2차 양적완화조치와 G20 정상회의

윤성훈(선임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105호

지난 11월 3일 발표된 미 연준의 제2차 양적완화조치로 인해 진정되던 환율전쟁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실질이자율이 실질경제성장을 하회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환율전쟁이 재개될 경우 글로벌 물가불안, 보호무역 등장 등 세계 경제에 막대한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구속력 있는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외환보유액 확대와 문제점

윤성훈(선임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106호

최근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외환보유액 증가는 외환위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수지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적립금 비율 상향 조정, 자본금 도입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G20 정상회의 환율 합의 이후의 과제

윤성훈(선임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107호

지난 11월 11, 12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환율 문제에 대해 G20 재무장관회의 합의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2011년 상반기 중에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환율전쟁이 진정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환율의 이중적 역할로 인한 ‘펀더멘털’과 ‘시장결정적’ 개념의 상충 가능성,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이행 시 통화정책 제약 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은 재고되어야

이창우(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108호

2010년 11월 12일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민영의료보험업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민영의료보험의 관리·감독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기구를 두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여 민영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와 가입차별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현재와 같은 감독체제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며, 의료비수가 등 의료비관리를 위한 공사협력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시급해 보인다.

미소금융의 신용등급 적용에 대한 소고

유진애(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109호

2010년 하반기부터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대출은 크게 증가하여 누적 대출액이 10월 현재 400억 원을 넘어섰다. 미소금융에 대한 주된 대출자격 요건은 신용등급이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은 높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미소금융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미소금융의 취지가 기존 금융서비스에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상환의지, 자립의지 등을 평가하여 기존 금융제도권에 복귀시키는 것에 있다면 신용등급을 대출 실행 후 관리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논의

이승준(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110호

기업지배구조원이 2010년 11월 26일에 주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활발해지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논의의 연장선에서 최근 불거진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분산된 소유구조 하에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은행 및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CEO와 사외이사 추천·선임을 위한 상시적 이사추천위원회 및 지원조직의 설치와 CEO 교체·승계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임원 등의 보상정책을 결정할 보상위원회의 의무화와 일정 규모 이상 보수의 개인별 공시를 통해 CEO 등 경영진의 보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소유구조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CEO 및 주요 임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 강화방안도 제시되었다.

예금보험기금내 공동계정 신설 논의에 대한 소고

최형선(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111호

지난 11월 24일 국회에서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예금보험기금 내 공

동계정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동계정 도입 목적은 저축은행 계정의 여력 부족으로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동계정 도입에 따라 금융시스템 위험이 낮아지는 편익보다는 오히려 타 업권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실한 특정 업권의 도덕적 해이(고위험 추구)를 조장하는 등의 비용이 더 클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첫째, 저축은행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고수익을 위해 PF대출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여 부실이 발생한 만큼 공동계정이 도입되면 은행,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회사가 이러한 위험추구 행태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공동계정의 도입은 오히려 특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 셋째, 예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공동계정의 수입으로 정할 경우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 등 금융시스템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금융업권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 넷째, 예금보험제도 시행 초기부터 공동계정이 도입되었다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는 저축은행 계정만이 막대한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공동계정 도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는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실패와 예금보험료의 과소 설정 등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시건전성부담금 개요 및 기대효과

변혜원(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112호

정부는 환율의 급변동과 같은 급격한 외화유출입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동 방안에 따르면 첫째, 비예금 외화부채와 단기외채 비중을 고려하여 우선 은행부문이 부과 대상기관이나 추후 업권간 형평성, 우회조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대상기관 확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거시건전성부담금의 부과 요율은 비예금 외화부채의 만기별로 차등화되며, 금융기관 부담정도, 해외 사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구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유럽의 은행부과금과는 차이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금리재정거래 유인 지속이 우리나라 외채를 확대시킨 주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은 금리재정거래 유인을 축소시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낮추고 외채구조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민관 협력 필요성

유진아(연구위원) | 주간포커스

제113호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부

담 증가는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 및 재정경직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정경직성이 심화된 경우 재정은 외부충격에 크게 노출되어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및 영국 등에서는 사회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관 협력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민관 협력체제는 민간부문의 자본 및 서비스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선하도록 공공부문이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재정부담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U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김동겸(선임연구원) | 주간포커스

제114호

EU는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한시적 운영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를 대체할 유럽안정제도(ESM) 도입에 합의하였다. ESM은 EU 회원국에 구제금융이 제공될 때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정안정제도이다. EU의 재정위기는 ESM의 도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확산이 억제될 수 있지만 여전히 세계경제의 잠재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국가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윤성훈(선임연구원) | 주간포커스

제115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에서 그 이전부터 잠복해 있던 국가부채 위험이 노출되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국가부채가 화폐화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통해 국가부채와 통화 가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부채가 화폐화로 해결될 경우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어 국가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비하여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향후과제

류건식(선임연구원) | 주간포커스

제116호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경우 2010년 10월 현재 적립액이 약 21조 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률이 약 17.0%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상의 제반 문제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퇴직연금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간의 역할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도 점진적으로 기금형

지배구조로 전환되어 운용이 보다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건전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별도의 연금지급보장장치 마련, 과감한 퇴직연금세제혜택 부여, 자산운용규제의 완화,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에 대한 소고

유진아(연구원) | 주간포커스

제117호

2010년 12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는 3.5%, 생활물가지수는 3.9% 상승하였고, 국제원자재 가격과 중국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공급측 요인과 과잉 유동성이라는 수요측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물가불안 요인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제반영향

류건식(선임연구원) | 주간포커스

제11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첫째, 근로자에게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전면 허용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선

택폭은 보다 확대될 것이다. 둘째, 확정급여형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마련, 퇴직연금 우선변제 규정 명확화 등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되는 한편, 퇴직연금사업 중단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 마련, 계약이전 및 제도 변경과 관련된 규정 보완 등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가입자보호도 개선될 것이다. 셋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퇴직 시 급여의 개인형 퇴직연금 전환의무화 조치 등은 퇴직연금시장의 확대로 이어져 결국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근퇴법 개정안의 제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금융회사는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게 될 것이다.

는 것이 공정사회 개념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환율의 사회적 비용과 책임

이경아(연구원) | 주간포커스

제119호

우리나라 환율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외환보유액은 크게 증가하여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수입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외환보유액을 유지·관리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며, 동 비용은 국민의 세금 부담과도 연관되어 있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금까지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왔다면 이의 최대 수혜자인 수출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후생 감소와 비용을 감수한 국민에게 보상하

II.

FY2011 주요 연구 계획

보험산업 성장 비전 구축과 경쟁력 강화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소비자 보호 및 규제의 선진화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1

Chapter

보험산업 성장 비전 구축과 경쟁력 강화

- 보험상품 유통채널구조 평가와 개선방안
-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 연구
-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개선방안
-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방안
- FY2011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보험상품 유통채널구조 평가와 개선방안

안철경(연구위원)·이경희(전문연구위원) | 보고서

150

연구배경 현재의 보험모집구조는 기본적으로 금융전업주의에 기초한 사업방식으로 금융겸업 및 글로벌 경쟁 환경에 적합한 소비자 중심의 유통채널이 필요한 실정이다. 겸업화 환경에서의 보험유통채널은 타 금융권과의 경쟁, 시스템의 효율성 및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2010 IAIS 연차회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상품이 점차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방어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 보험유통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환경 하에서 운영되는 국내외 금융유통구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통채널의 전문화, 다양화를 위해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보험영업 환경과 접목함으로써 보험시장 확대방안을 꾀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보험유통구조의 거시적인 발전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현재의 보험사업 유통구조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향후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에 적합한 유통채널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유통채널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 보험상품 유통구조를 보험사업자 측면, 유통채널 측면, 소비자 측면 및 정책(법)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또한 유통채널별 권한과 책임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유통구조를 평가한 후, 구체적으로 현행 모집수수료 제도인 선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둘째, 타 금융상품인 예·적금, 대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카드 등의 유통채널을 조사하고 보험유통채널과 비교하여 그 특성 및 장단점을 제시한다.

셋째, 보험유통채널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안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조개선의 기본방향은 고비용 회사 중심에서 저비용·소비자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보험유통구조를 미래지향적인 소비자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보험회사가 향후 진전된 금융겸업 환경에서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전략을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 연구

기승도(전문연구위원)·이기형(선임연구위원)·황진태(연구위원)·김대환(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목적 2000년대 이후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려는 데 반하여 소비자들은 인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손해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반복되는 갈등은 자동차보험제도를 사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시각과 사회보험의 일종 또는 강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간주하는 소비자의 시각차이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해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반복되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동차보험 요율 제도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연구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 1963년 자동차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동차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자동차보험제도에 남아있는 과거의 잔재들은 무엇인지, 향후 변화과정 중에서 어떤 제도들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대한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자동차보험 시장참여자들이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자동차보험제도를 바라보는 시장참여자의 인식차이가 자동차보험료의 인

상여부에 대해 상이한 반응이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앞서 살펴본 자동차보험제도의 변천단계, 시장참여자들의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토대로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현재의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사항과 현행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자동차보험 요율 인가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도출된 개선방향을 근거로 구체적인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보험업법 등 제 법률, 현행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및 요율조정 관행, 자동차보험 요율 관련 인가제도 전체 절차 등에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가 자동차보험을 바라보는 두 이해관계자의 인식과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시키면서, 다양한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의 유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개선방안

송윤아(연구위원) | 보고서

152

연구배경 우리나라 재보험산업은 해외출수재거래에서 과거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수지차 역조를 보이고 있다. FY2009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외로 출재한 보험료는 2조 383억 원, 출재수지차는 6,225억 원이었으며, 해외로 수재한 보험료는 1조 1,075억 원, 수재수지차는 1,664억 원이었다. 따라서 FY2009 재보험 해외수지는 4,561억 원 적자를 보였다. 재보험거래 특성상 해외출재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재보험수지 적자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우량 담보물건의 과다한 해외 출재로 인한 재보험 수지 역조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재보험 거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먼저 재보험 출수재 실적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보험종목별·국별·출재방식별 해외 출수재 실적을 분석하고, 해외 재보험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규정을 조사한다. 더불어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원인으로서 협의요율 납용과 국내요율 부재, 국내 대형사고 및 자연재해 부재, 원보험사 간 재재보험 기피로 인한 국내 담보력 사용 부족, 위험의 대형화

추세, 그리고 인수위험의 재보험 전가를 통한 원수보험료 확대 등을 상세히 다룬다.

둘째, 재보험 해외수지 개선을 위해 주요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험증권화 활성화, 보험거래소 설립, 국내우선출재제도, 담보설정제도, 손해율 연동 재보험료 적용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재보험 해외수지 개선방안과 과제를 제시한다.

기대효과 국내 담보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량 담보의 해외 출재 납용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재보험의 해외수지 역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방안

황진태(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날씨변화로 야기되는 리스크가 모든 경제주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이상기후현상이 잦아지면서 날씨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리스크 관련 헤징수단인 (지수형) 날씨보험이나 날씨파생상품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심은 미흡한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관련 상품개발은 각 경제주체에게는 날씨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리스크 관리의 경험이 풍부한 보험회사에게는 신시장으로서의 진출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날씨리스크에 대비한 날씨보험 또는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날씨리스크 관련 상품의 적정가격설정(pricing)과 보험회사의 해당 상품판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보험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거래되고 있는 날씨리스크 관련 보험이나 날씨파생상품, 그리고 해당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 특성을 문헌연구나 사례조사를 활용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날씨리스크에 노출되는 각 경제주체의 산업적 리스크 특징을 검토 및 분석한 후, 날씨리스크 관련 보험을 비롯한 파생금융상품

가격결정과 관련한 제모형을 연구하고, 이에 적합한 모형과 가격결정(pricing)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를 위한 관련 법규와 감독내용을 살펴보고, 동시에 해외사례와 비교한 후, 보험회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날씨리스크를 인수할 것인지 그리고 날씨리스크 인수와 관련하여 수립해야 할 경영전략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날씨보험이나 날씨파생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적 대안도 제시할 것이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날씨리스크 관련 금융상품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기본적인 가격결정(pricing)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날씨보험 또는 날씨파생상품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해당 상품의 기본적인 개발방향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에게 신시장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FY2011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동향분석실 | 보고서

154

연구배경 보험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경쟁 심화, 신성장동력의 부재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중장기적 경영전략 및 비전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경제 및 보험산업의 주요 지표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수행함으로써 업계 및 정책당국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베이비붐 세대들의 소비행태 변화 그리고 보험업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의 본격시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환경 및 제도적 변화는 향후 보험수요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 주요 선진국들에 있어서 보험산업의 중장기적 성장패턴과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 및 구조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경제·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변화 등을 살펴본다. 보험산업 외부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된 이후 성장성을 회복한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및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성에는 다양한 이견들이 제시되는 상황이

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보험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비중이 미미했던 변액보험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수입보험료의 경기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장기보험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산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장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보험산업의 향후 구조변화를 조망하고 주요 제도적 변화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보험수요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보험산업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에 대해서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이며 경제규모 및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보험밀도, 보험침투도의 변화 추세 및 보험산업의 수익성 변화도 동시에 전망하고자 한다. 전망작업을 위하여 경제지표, 인구지표, 사회지표, 보험지표 등을 포괄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전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영전략을 필요로 하는 각 보험회사들과 정책당국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hapter

2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보험회사 역할 제고 방안
- 퇴직연금 지배구조 체계 개선방안 연구
- 보험산업 비전 2020
- 은퇴시장에 관한 종합 연구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보험회사 역할 제고 방안

김대환(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156

연구배경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소득과 소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장수리스크가 점증하여 장수리스크 관리자로서의 보험회사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연금소득)과 소비(노년의료비 등)를 고려하여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추정하고 선진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동향(연금상품개발, 장수리스크 헤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입장에서의 장수리스크관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입장에서의 장수리스크관리(보험리스크)를 상호연계하여 보험회사의 역할과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의 재정적 차원에서 중요한 관심 사항이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도 고령화에 따라 노후생활에 충당하기 위한 소득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소득과 소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면할 장수리스크를 규명해 본다. 개인은 소득과 소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은퇴 이후 노후소득의 평활화(smoothing)를 위해 종신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장수리스크는 비단 가입자들의 기대수명 증가뿐만

아니라 연금가입자들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의해서도 초래된다. 전자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지만 후자는 한국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신연금 가입자들의 역선택 존재 여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장수리스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우리나라 국민과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장수리스크 존재여부 및 수준에 대한 인지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보험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연금에서의 역선택은 가용자료의 한계로 여전히 연구되어지고 있는 주제이며, 특히 한국의 샘플을 활용한 시도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의 샘플을 활용하여 종신연금 잠재가입자들의 역선택을 확인해보고, 역선택이 존재할 경우 보험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장수리스크와 이를 헤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헤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퇴직연금 지배구조 체계 개선방안 연구

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대환(연구위원)·이상우(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목적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형태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영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감시기능과 운용의 투명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기업과 사업자인 금융기관이 일대일로 계약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금전 및 거래관계에 의해 계약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금계리사 등 사업자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로 전환하거나 다른 지배구조 형태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지배구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지배구조 관련 규정 및 기금형 운영체계 등을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OECD를 비롯한 국제연금 감독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배구조 관련 규정과 더불어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운영체계의 제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배구조 운영체계에서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 퇴직계좌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용체계상의 특징을 검토하고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상의 감시기능체계, 연금공시체계, 연금감독체계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기초로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운용성과를 살펴보고 기금형 퇴직금 지배구조 도입 시 가입자와 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은 단기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단기방안에서는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골격을 유지하되 기금형에 준하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 중장기방안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가 도입되는 경우를 가정하되, 우리나라 특수성에 부합한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대효과 기금형 지배구조 관점에서 연금감독, 감시기능, 수급권보장, 연금공시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지배구조 개선 및 적용방안 모색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자본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어 퇴직연금시장에서 금융의 역할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보험산업 비전 2020

진익(연구위원) 외 공동연구 | 보고서

연구배경

보험산업이 보장기능을 능동적으로 확대할 경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산업은 경제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그 위상이 위축되고 있다. 보험산업의 능동적 역할 확대 필요성에 대해 여론 주도층과 정책당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보험회사 경영진의 발전비전도 단기적 경영성과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내 보험회사들이 기존의 사업모형을 답습할 경우, 지속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 경영환경을 규정하는 국가 경제 환경을 볼 때, 기존 성장동력 소진을 대체할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 저출산·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금융산업 경쟁력 정체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보험산업(회사)가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우선 본 연구는 국가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들 중 금융기능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 과제들(저출산·고령화, 녹색성장,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신성장동력 발굴, 기후변화 대응, 금융산업 글로벌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조사하고, 각 과

제별로 금융기능을 활용한 능동적 대응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안 과제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기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금융회사·시장의 기능(자금중개, 위험관리, 정보생산 등)의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타 경제주체들의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보장기능을 모색하고자 한다.

끝으로, 보험산업의 능동적 역할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과 관련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국내 보험업의 능동적 역할 확대를 위한 국내 보험제도(요율제도, 준비금제도, 자기자본규제, 진입·퇴출 규제, 업무영역규제, 소비자보호 등)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국내 보험업의 능동적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경영전략 및 사업모형(가격, 상품(판매채널), 자산운용, 업무다각화, 지배구조 등) 전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기능 확충을 통해 국가 경제가 직면한 당면 과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보험회사의 지속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형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은퇴시장에 관한 종합 연구

윤성훈(선임연구위원) 외 공동연구 | 보고서

연구배경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은퇴관련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 1차 베이비 붐(1955~63년생) 세대의 은퇴시기(55세)가 2010년에 도래하였고 2010년 총인구의 11%에 불과한 65세 이상 인구도 2050년 38.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향후 이들 은퇴가구(개인)의 증가는 이들의 자산구조, 소비행태 등의 변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은퇴가구(개인) 및 은퇴전가구(개인)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은퇴관련 주요 주제를 개별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와 관련된 연구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은퇴와 관련하여 첫째, 은퇴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둘째, 은퇴결정요인 분석, 셋째, 은퇴가구의 리스크 분석, 넷째, 은퇴와 재무설계, 다섯째, 은퇴와 사회보장체계 및 정부정책 등에 관해 단계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들 주제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FY2011에는 은퇴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은퇴가구의 경제행태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연구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은

퇴 전후 소비 및 저축행태를 분석하고 은퇴전후 자산보유 및 운용행태를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은퇴대비 소득 및 자산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정도가 앞선 국가들의 은퇴시장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할 것이다.

기대효과 은퇴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은퇴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은퇴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은퇴자산의 형성 및 그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통적인 보험영업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과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은퇴시장 분석에 있어서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고는 은퇴가구(개인)의 경제행태 및 금융행태에 보다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hapter

3

소비자 보호 및 규제의 선진화

-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방안 연구
- 재보험거래의 안전성 제고방안 연구
- 보험회사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조화방안 연구
-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연구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방안 연구

이승준(연구위원)·김경환(전문연구위원)·오병국(연구위원) | 보고서

162

연구배경 2010년에 메리츠화재가 금융위 원회로부터 보험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를 받았고 동부화재 등 다른 보험회사들도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또한 일반지주회사도 중간지주회사의 형태로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등 향후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도 보험지주회사의 출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보험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체계(Group Supervision Framework)를 개발 중에 있는 등 국제적으로도 보험그룹의 감독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보험감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보험지주회사의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적 적합성에 맞는 보험지주회사 감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험지주회사의 규제 및 감독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사의 한 종류로서 은행지주회사와의 공통점 및 보험지주회사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더불어 금산분리 문제 등 한국의 경제 및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지주회사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감독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금융지주회사 감독 관

련 제도 및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지주회사 감독 상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주요 금융선진국의 보험지주회사 감독 제도, 현황과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보험지주회사 감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국내의 금융 및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 제도 및 현황에 대한 조사로부터 우리나라 보험지주회사의 감독 방향에 대한 방안을 찾아본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일반적인 공통점과 보험지주회사의 특수성을 규제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 방안이 제시되면, 보험회사의 규제비용을 낮추어 보험산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보험 및 금융감독의 중복 또는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재보험거래의 안전성 제고방안 연구

송윤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1997년 재보험시장을 개방하여 해외재보험회사들의 국내시장 진입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재보험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할 후속장치의 미비와 그로 인한 감독사각지대로 인하여 각종 재보험사고에 노출되었다. 한편, 재보험거래의 지구적 성격(global nature)과 위험분산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경 간 재보험거래촉진 및 재보험감독기준표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재보험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보험감독기준의 명문화 및 구체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국경 간 재보험거래촉진 및 재보험감독기준표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안전한 재보험거래를 위한 각종 규제는 자칫 시장진입제한 조치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보험거래 규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재보험 글로벌규제 변화에 따른 재보험거래의 안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먼저 우리나라 재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시장 및 규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보험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둘째, 1997년 해외재보험회사에 적용된

국내시장 진입장벽 제거의 영향을 재보험거래의 안전성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안전성 제고에 의거한 시장제한적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셋째,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를 비롯한 주요국의 안전한 재보험거래 도모 방안들을 살펴본다. 이로써 재보험감독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안전한 재보험거래를 통해 국내 보험회사와 계약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기대효과 재보험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재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재보험거래에 대한 법, 제도, 감독기준 정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보험회사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오영수(선임연구위원)·변혜원(연구위원)·김경환(전문연구위원) | 보고서

164

연구배경 보험업에 대한 진입 자유화와 퇴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진입과 퇴출 결정시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진입의 경우에는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며, 퇴출의 경우에는 공적자금 투입 및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에 대해서 규제 및 제도의 문제보다는 경쟁에 대한 시각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과 관련한 제도와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보험산업에서 경쟁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입 및 퇴출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 연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보험시장 내 적절한 경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보험산업 및 보험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경쟁정책으로 인해 건전성과 영업행위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소비자 후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제도 운영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보험산업의 진입 및 퇴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한다.

특히 이미 진입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기준 설정에 대한 기술적 측면보다는 금융감독당국이 시장경쟁과 퇴출을 동시에 고려한 진입규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경쟁정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간에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기대효과 적절한 제도 운영을 통해서 보험시장의 유효경쟁 수준을 높여서 혁신적 경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출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를 기반으로 타 금융회사는 물론 글로벌 보험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조화방안 연구

오영수(선임연구위원)·이승준(연구위원)·김경환(전문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융의 글로벌화, 금융시스템 간 경쟁, 금융규제의 국제적 기준 설정 등이 본격화 되면서 금융규제의 국제적 조화가 중요해졌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관련 국제기관들과 개별 국가 금융정책 및 감독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해졌다. 그리하여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한 거시적 건전성 분야를 비롯하여 지배구조,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규제체계의 국제적 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정책 및 감독의 국제적 공조 및 국내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먼저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규제 및 감독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해지는 배경 및 원리에 대해서 조사·연구한다. 그리고 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 등에서 도출되는 금융 및 보험 규제의 국제적 기준 설정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금융규제의 목적, 이론 및 현행 제도, 국제기구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사를 하면서 금융 및 보험 규제의 국제적 기준 설정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와 한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가 이를 수용하여 국내 규제를 재구축하는 과정상의 현황 및 문제점을 문서와 면담을 통해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면 그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보험을 제외한 금융분야와 보험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금융의 글로벌화 시대에 대응하여 금융규제의 국가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이론 및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불합리한 규제에 의해 효율성 저하가 생겨나는 문제를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연구

조재린(연구위원)·이기형(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보고서

166

연구배경 화재나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피해는 자신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보험가입 등의 리스크관리가 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의 생계와 자녀들의 교육이 곤란해지며 나아가 가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통제하는 사고가 아닌 대부분 경우에 대해 사회보험 또는 의무보험을 통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적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 소진으로 인해 보험금의 본래 목적인 피해가정의 소득보상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가정 보호측면과 인구고령화 측면에서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무보험 중 인적사고에 대한 보상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연금 등의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인적사고 보상을 사회보험방식과 의무보험방식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효용의 차

이점을 도출하고 일시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생애소득과 생애소비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급방식 다양화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시금방식과 정기금방식의 선호도와 선호 이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주요국의 인적사고 정기금 지급방식의 도입배경,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지급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각각의 지급방식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지급방식별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분석하고 지급방식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 및 세제문제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보상금이 단기간에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사고가정의 건전한 복구에 기여하며 조기소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요인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제고를 통해 신뢰를 재구축하고 보험산업 내 운용자산의 축적을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기관으로서 역할이 증대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Chapter

4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현금흐름방식 보험가격 산출방식이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 보험산업의 RBC제도 발전방향 연구
-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보험요율제도 도입 연구
- 보험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현금흐름방식 보험가격 산출이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김해식(전문연구위원) | 보고서

168

연구목적 현재 보험회사는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라는 세 가지 이익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보험가격을 산출하고 있으나, 최근 감독당국은 상품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현금흐름방식 보험가격결정(CFP : cash flow pricing)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FP 도입이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CFP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현금흐름을 평가하여 수익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품개발 단계에서 목표이익을 반영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 판매 전에 이익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보다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표준율 규제와 저금리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비차익에 의존하고 있는 보험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표준율과 표준준비금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감독방식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의 경영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가격산출방식과의 비교, 새로운 보험부채 평가와 가격산출이라는 관점에서 CFP의 개념과 특성을 도출하고, CFP 도입 시 상품포트폴리오, 자산포트폴리오에 나

타날 영향과 소비자 및 감독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CFP 적용과 감독에 관한 해외 사례를 통해서 CFP 시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경영적 요인들을 다루고자 한다.

기대효과 CFP 도입은 보험료를 일반 금융상품과 유사하게 산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이상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FP 시행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새로운 경영성과 분석과 소비자 보호 및 보험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산업의 RBC제도 발전방향 연구

- 생명보험의 사망률 리스크를 중심으로 -

조용운(연구위원) 외 공동연구 | 보고서

연구배경 2009년 11월 금융감독원은 RBC 내부모형 승인기준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지급여력제도의 발전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감독자와 보험회사는 제도도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모형의 사용은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상품구성, 고객속성과 보험자산의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위험액을 측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규모의 효과와 위험분산 효과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보다 발전된 위험액 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확률론적 리스크 측정모형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첫 번째 단계로 확률론적 사망률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감독자의 정책을 지원하고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요내용 정확한 사망률 리스크(Mortality risk)의 측정 및 평가는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사망률 리스크(Mortality risk)의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주요 리스크

인 추세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Carter (1992)모형과 Renshaw & Harberman(2006), Currie(2006), Carins와 2인(2006) 등의 다양한 모형을 데이터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 볼 것이다.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감독자의 제도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보험회사의 사망률 리스크 관리방향을 제시하며, 사망률 리스크 측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기대효과 다양한 사망률 리스크의 측정모형 및 실증분석결과는 감독자의 지급여력제도 개선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명보험의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다양한 확률론적 리스크 측정모형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승인제도 도입효과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보험요율제도 도입 연구

김소연(연구위원) | 보고서

170

연구배경 보증보험과 같이 손해액이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보험종목들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리스크가 크다. 손해보험의 대부분 종목들은 지난 몇 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요율을 조정하지만,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지난 몇 해의 데이터가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예정손해율을 책정하기 어렵고, 실제손해율의 편차도 크기 때문에 타 종목에 비해 요율책정으로부터 오는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경기변동을 반영한 적절한 보험요율 측정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보험종목들의 요율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우선 본 연구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보험종목과 그렇지 않은 보험종목의 손해율 양상과 요율책정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의 보험요율제도를 조사하고, 경기변동과 손해율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 금리, 물가 등 대표적인 거시경제변수와 손해율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또한 경기변동지표를 이용한 손해율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도

적절한 통계 모형을 이용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해외의 경우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보험요율제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기변동 반영 보험요율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경기변동과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는 보험종목의 요율을 개선 것은 중요한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저자가 아는 한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경기변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종목들의 보험요율제도 개선을 기대하며, 특히 일반 손해보험종목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보험요율제도를 모색할 것이다.

보험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이창우(연구위원)·이기형(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최근 한국은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어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 증가는 심각한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자살이 만연하는 환경 속에서 고의적 자해로 보험금을 타고자 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의적 자해는 보험 본연의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보험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자살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자살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자살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험가입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보험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자살률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보험가입자의 자살율과 보험 미가입자의 자살율을 추정하고 비교·분석 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보험 약관상 보장내용과 예외조항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주요국의 보험가입자들의 자살율을 조사하고 자살에 대한 보장내용과 예외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 먼저 보험가입과 자

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자살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질병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의 자살과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회사별 보장내역을 조사하고 자살의 보장여부와 자살률의 관계를 살펴본다.

보험가입과 자살 발생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보험가입으로 인한 고의적 자살의 가능성과 자살을 염두해 둔 보험가입의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기대효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발생률의 감소를 위한 보험 정책수립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의적 자해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FY2010 연구 관련 활동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보험·금융 산업 연구 관련 세미나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보험·금융 도서 정보제공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금융연구』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학술진흥재단에 ‘등재 학술지’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최근 투고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연간 발간 횟수를 3회(3월, 7월, 11월)에서 4회(2월, 5월, 8월, 11월)로 조정하였다. 『보험금융연구』의 편집위원회는 보험연구원에서 편집간사를 맡고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보험·금융 전공 교수 12인을 포함하여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일찍부터 학술지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왔으며 1999년 1월에는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학술지’로 등록되었다. 또한 2010년에 실시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보험 및 금융분야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발간 초기에는 민영보험 분야에 국한된 학술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2005년부터는 금융 및 사회보험 분야로 게재 범위를 넓혔으며 2008년 보험연구원 출범 이후에는 공사보험과 금융전반을 아우르는 보험금융 분야 전문학술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연구윤리 기준’을 시행함으로써 논문의 작성 및 심사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0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제 목	저 자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1호 (2010년 3월)	시장금리의 변화가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최영목, 황진태
	개인의 민영건강보험과 개인연금 선택간의 관계연구	이창우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특히 독립법인 대리점을 중심으로	전우현
	주택관련대출의 가계소비 구축효과 분석	임병인, 강성호
	Obesity and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김대환
	Long Memory and Structural Breaks in Extreme Value Estimators: The Case of the U.S. Stock Indexes	권용재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2호 (2010년 7월)	제 목	저 자
	종신연금과 종신보험의 사망 리스크 헤징 포트폴리오 전략에 관한 연구	성주호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자 특성분석에 따른 가입강화 방안 연구	강기훈, 기승도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사업 효율성 연구	김재현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유인 검토	진익, 김동겸
	Reexamination of Forward Premium Anomaly in Foreign Exchange Markets Allowing for Realized Volatility and Jump Process	한영욱
The Asset Price and Investment Technology	유진아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3호 (2010년 11월)	제 목	저 자
	거시경제변수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중심으로	황진태, 서대교
	한국과 독일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김상호
	생명보험 정산거래와 한국 보험시장에서의 가용성	김석영, 김해식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입증책임의 역할	이운호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종신연금의 효용가치 분석	양재환, 여윤경
가격제한폭의 가격발견지연효과 및 이를 고려한 투자패턴 분석	최우석, 한상일	

2.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은 소비자의 보험가입 실태 및 향후 보험가입 수요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본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영업정책, 채널활용 등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 및 감독당국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집적·분석하여 조사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본 설문조사와 관련된 통계는 보험회사의 영업기획 및 판매실무 분석자료, 각종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2001년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의 경우 전국 20세 이상 일반인(세대주 포함) 총 1,2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방법으로 시행하였으며, 표본추출 방법은 인구통계 변수인 연령·성별·지역·수입규모·결혼유무 등을 기준으로 한 층화표본추출 방법을 전국 비례별로 사용하였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의 내용은 보험가입 실태 및 소비자의 수요파악을 목적으로 한 기본조사와 각 연도별 보험업계의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슈별 조사로 구성된다. 기본조사의 주요 항목은 보험가입 실태, 판매채널 분석, 보험수요, 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 금융기관 선호도 및 보험가입 희망 회사 등이 포함된다.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2011년 2월 중에 조사대행 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기본적인 조사항목인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보험가입률, 가입건수, 가입경로, 가입이유, 가입상품 만족도 및 보험가입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향후 보험가입 의향을 조사하기 위해 상품별·채널별 가입의향, 선호 가입채널 및 그 이유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2011년 보험·금융 관련 주요 이슈 조사를 위해 연금, 고령화, 건강보험, 보험금 지급방법, 보험회사 및 설계사 이미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연 도	주요 이슈
이슈별 설문내용 (2001~2011)	2001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율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2년	자동차보험 갱신, 건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2003년	주5일 근무제도에 따른 보험상품 선호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율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4년	자동차보험 선호도, 종신보험, 민영건강보험, 연금보험상품
	2005년	건강 및 간병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방법, 채널만족 및 방카슈랑스 관련, 자산관리서비스
	2006년	민영건강보험, 고령화 및 연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보험회사 브랜드, 교차모집, 보험사기
	2007년	보험회사 이미지 및 영향 매체,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 보험소비자지수 관련
	2008년	보험회사 및 판매자 신뢰도와 만족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보험광고
	2009년	자동차보험제도,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가계위험, 보험사기
	2010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건강보험(실손의료형보험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실태, 농협보험, TV 홈쇼핑 보험가입 의향, 금융소외(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서비스 및 대출 관련)
	2011년	연금, 고령화, 건강보험, 보험금 지급방법, 보험회사 및 설계사 이미지

3.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3.1 국제 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은 선진 보험·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보험산업 종사자들의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매년 해외의 저명한 보험·금융 산업 전문가 및 학자를 초대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와 신성장 모델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10년에는 ‘보험산업의 신성장과 소비자 신뢰 강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10년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2010년 10월 21일)	보험산업의 신성장과 소비자 신뢰 강화	
	세션 1 보험산업 신성장과 경쟁력 강화	
	- 보험산업의 신성장과 경쟁력 강화 방안	이순재 교수/세종대학교
	- The U,S Retirement Landscape Opportunities for the Industry	Marie Z. Rice/LIMRA
	- 보험산업 신 성장과 경쟁력 강화	김대환 연구위원/보험연구원
	세션 2 보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신뢰 강화	
- 보험산업의 사회적 신뢰 제고 필요성과 과제	오영수 정책연구실장/보험연구원	
- NEW YORK STATE INSURANCE DEPARTMENT	수킴	
- 자동차보험과 소비자 보호	김정동/연세대학교	

3.2 금융기관 유관분야 공동연구

보험연구원은 국내외 경영 및 규제환경의 변화에 대해 타 금융권내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자 2010년 다음과 같은 연구사업 및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연구사업	주관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소주제	발표자
제1회 금융연구기관 공동컨퍼런스 (2010년 10월 5일)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 저출산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 고령화가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 윤성훈/보험연구원 금융제도실장 - 진 익/보험연구원 재무연구 실장
금융감독 유관분야 학술 심포지엄 (2010년 12월 7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국내 금융규제환경 변화 소주제	발표자
		- 보험부문의 규제환경 변화	- 이태열/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 (2010년 11월 24일)	보험연구원, KDI,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소주제	발표자
		- 보험모집채널 선진화 방안	- 안철경/보험연구원 연구위원

3.3 OECD 보험 및 사적 연금위원회 참석

보험연구원은 1993년 7월부터 재무부 국제금융국 주관 OECD 보험작업반에 소속되어 관련 정책 자료 작성과 보험·사적 연금위원회(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Committee)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OECD와 관련한 일련의 회의에서 한국정부가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 한국 OECD 대표부 참사관과 협조하여 올바른 결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때나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보험정책 수립 방향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작성하여 정부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1995년 6월부터 1996년 3월까지 OECD 보험위원회의 추가요청자료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1996년 6월의 제57차 OECD 보험회의부터 2010년 12월의 제86차 OECD 보험회의까지 한국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0년에는 6월에 OECD 사적연금 TF 회의, 보험통계 TF 회의, 보험·사적 연금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며, 12월에 사적연금 TF 회의와 보험·사적 연금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는 금융위기 이후 국제보험 감독자기구(IAIS) 및 금융시장위원회(Money Market Committee)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산업 감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향후에도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정책연구에 적극 활용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4. 보험·금융 산업 연구 관련 세미나

4.1 보험경영인 조찬회

보험경영인 조찬회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과 보험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험업계 임원, 정책·감독 당국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1997년 7월 10일 제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회의 조찬회가 개최되었다. 2010년에 개최된 조찬회는 다음과 같다.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10년 11월 26일(제33회)	201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김대식 원장/보험연구원 원장 이진면 박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4.2 연구포럼 운영

보험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연구활동의 고취를 위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각자 주제발표 및 의견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자율적인 연구포럼을 실행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연구포럼이 운영되었다.

4.2.1 보험정책 연구포럼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10년 12월 29일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본 보험산업 개선과제	조연행 부회장/ 사무국장(보험소비자연맹)
2011년 1월 26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영향과 전망	정기택 교수(경희대학교)

4.2.2 금융제도포럼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10년 5월 26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및 정부대책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6월 16일	소득이전과 노후소득 보장	김희삼(한국개발연구)
2011년 3월 11일	국내표준위험률 산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창수 교수(숭실대학교)

4.2.3 보험산업 연구포럼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10년 6월 9일	고령화의 진전과 은퇴대비실태 및 시사점	손성동(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2010년 7월 21일	재정악화 및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박형수(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2010년 12월 1일	금융상품 판매채널 혁신 및 해외사례	안치홍(한국재무설계)
2011년 2월 9일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에 따른 과제	오창수 교수(한양대학교)

4.3 정책간담회

보험연구원에서는 현재 금융산업의 당면 과제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감독 당국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하고자 2010년 3차례에 걸쳐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개최 일자	주제	발표자
2010년 4월 30일	보험산업의 비전과 역할	진동수 금융위원장
2010년 5월 19일	보험료 신용카드납부 제한	배동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과장
2010년 9월 30일	2010년 하반기 주요금융정책 현안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2010년 11월 12일	금융선진화 정책방향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5.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동향분석실이 주관하고 있는 『KiRi Weekly』는 경제·보험·금융 전반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국내외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간 웹저널로서 주간 이슈, 주간포커스, 국내외 금융뉴스 및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주간 이슈에서는 세계경제 및 보험·금융권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working paper 형태로 금융·보험 및 실물경제에 관한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총 120호가 발표되었다.

주간포커스는 전·금주 발생한 경제·금융 일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배경, 진행, 전망 및 시사점 순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며 2010년 5월부터 추가되었다.

해외금융뉴스에서는 북미·유럽·일본 및 중국지역의 주요 경제, 금융, 보험 뉴스와 정보를 연구기관과 정책·감독 당국자 및 보험회사에게 신속하게 요약·전달하고 있는데, 연구소재 발굴과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금융뉴스는 한 주간에 발생한 국내 주요 금융·보험시장 관련 동향과 법규·제도·감독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 지표에서는 국내외 금리·환율·주가·국제유가 및 금 시세의 추이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하여 현재 금융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6. 보험·금융 도서 정보제공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보험연구원의 업무 및 조사연구 활동 지원과 보험회사 임직원 및 보험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교수들에게 도서 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보험 관련 전문도서 및 최신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정리·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에서는 국내보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NAIC, ISO, SOA, CAS, CII, A.M. Best, LOMA, ABI,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일본손해보험협회, 일본생명보험협회 등 해외 주요 보험 관련 단체들의 보고서와 단행본, 통계자료, 법률서적 등을 1970년대 초반부터 최신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소장하고 있어 보험지식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Maestro-Y」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보험연구원 외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2011년 2월 말 현재 단행본 22,000여 권, 학위논문 1,300여 권, 정기간행물 250여 종, 세미나 자료 및 보고서 2,200여 종, 비도서 자료 10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IV.

일반 현황

경영비전

연혁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임직원 현황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1. 경영비전

보험연구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보험연구원은 세계화·융합화·겸업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물론이고 국내외 금융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금융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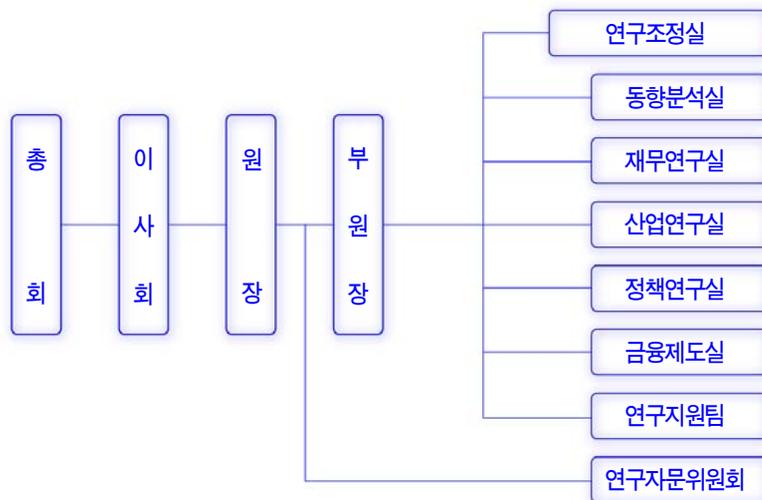
2. 연혁

보험연구원은 2008년 2월 26일 개원한 이후 2008년을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보험연구원은 2010년 보험·금융과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이루었으며,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종합적 연구기능을 갖춘 금융권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 자	주요 내용
보험연구원 주요 연혁	1995년 9월	보험연구소 설치
	1996년 9월	인터넷 문헌정보 서비스 개시
	1999년 9월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
	2004년 7월	제1회 국제 세미나 개최
	2006년 1월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 선정
	2007년 12월	보험연구원 설립 금감위 승인
	2008년 2월	보험연구원 개원, 초대 나동민 연구원장 취임
	2009년 2월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 제호 변경
	2010년 4월	2대 김대식 연구원장 취임
	2010년 11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창립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3.1 조직도



3.2 총회

보험연구원은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011년 3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23개사, 손해보험회사 18개사가 보험연구원 사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기총회는 년 1회 매회계년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안전발생시 의장이 소집한다.

FY2010에는 2010년 10월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총 3회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3.3 이사회

보험연구원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보험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기타 보험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장 2인), 원장, 사원 대표이사(생명보험대표 5인, 손해보험대표 5인), 보험개발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FY2010에는 2010년 12월 제1차 임시이사회를 시작으로 총 3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3.4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가 1년인 연구자문위원은 보험·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택된다. 보험연구원

장은 연구자문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된다.

FY2010년 연구자문위원회는 연구사업 선정에 대한 자문을 안건으로 2011년 1월에 개최되었다.

4. 임직원 현황

(2011. 2월 말 현재)

구분	임원	연구조정실	동향분석실	재무연구실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금융제도실	연구지원팀	계
원 장	1								1
부원장		1							1
연구 구 직	선임연구위원				2	1	1		4
	연구위원		1	3	5	3	1		13
	전문연구위원		1	1	1	1			4
	수석연구위원			1					1
	선임연구원		3		1	1	1		6
	연구원			2	3	2	2		9
행정직		3						5	8
계	1	4	5	7	12	8	5	5	47

5.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연구조정실

- | 연구사업계획의 기획 및 수립
- | 연구사업계획의 일정 및 실적 관리
- | 연구관련 대외업무 및 직원의 대외활동 관리
-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기획
- | 연구관리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등 각종 연구 관련 위원회의 주관
- | 신규연구사업 개발 및 업무 조정
- | 대내외 연구원 홍보 및 소통
- | 발간물의 편집 및 교열
- | 기타 연구 관련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이태열	부원장/실장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거시경제, 계량경제, 금융
김세환	부장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 및 보험
김진억	수석담당역	성균관대 경영학 박사과정	재무관리
정진영	담당역	국민대 국어교육학 석사	보고서 편집 및 교정

동향분석실

- | 국내외 경제, 금융동향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 | 국내 보험시장 동향분석 및 전망
- | 해외 보험시장 정보의 조사 및 분석
- | 금융 및 경제 관련 주요 통계의 집적관리
- | 보험수요 예측모델 개발
- | 보험가입성향 등 수요자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김대환	연구위원/실장 직무대행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박사	계량경제, 보건경제, 산업조직, 노동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생명보험, 퇴직연금
이정환	선임연구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거시경제, 계량경제
최원	선임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리스크 관리, 보험경영
김세중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금융경제

재무연구실

- | 자산운용 연구
- |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재무건전성 감독연구
- | 회사별 경영성과 평가 연구
- | 보험회계 및 세제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진익	연구위원/실장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자산운용, 헤지펀드, 파생상품
김소연	연구위원	University of Waterloo 보험계리학 박사	Ruin Theory, 손해보험
조영현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재무관리
김해식	전문연구위원	St. John's University 리스크 관리 석사	리스크 관리, 보험회계
장동식	수석연구원	고려대학교 통계학 석사	리스크 감독, 생명보험
이혜은	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김혜란	연구원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산업연구실

- |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 일반생명보험에 관한 연구
- | 퇴직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연구
- |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재보험에 대한 연구
- |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재보험기법 등에 관한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실장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경영, 보험정책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생명보험, 리스크 관리, 퇴직연금
안철경	연구위원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마케팅, 판매채널
송윤아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경제학 박사	응용미시, 산업조직, 지배구조
황진태	연구위원	Clems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계량경제, 경제성장
이창우	연구위원	Bos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보건경제
조재린	연구위원	Queen's대 통계학 박사	통계학, 리스크관리
기승도	전문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 박사	통계학, 자동차보험
이상우	선임연구위원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 박사과정 수료	생명보험, 일본금융보험 동향
서성민	연구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금융경제
권오경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회계학
정인영	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정책연구실

- | 보험산업정책 및 제도 개선과제 개발연구 및 지원
- | 보험회사 합병, 겸업화, 진입·퇴출 등 보험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연구
- | 보험모집 및 채널에 관한 연구
- | 업무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지배구조, 자율규제 등에 대한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실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정책, 사회보장정책
조용운	연구위원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건경제, 계량경제, 보험경제
변혜원	연구위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응용미시
이승준	연구위원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기업금융, 응용미시
김경환	전문연구위원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정책, 보험 관련 법규
박정희	선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마케팅
김미화	연구원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오병국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응용미시

금융제도실

- |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 하부구조에 대한 연구
- |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연구
- |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시장에 대한 연구
- | OECD 등 국제기구와 관련한 연구 및 지원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실장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화폐금융, 국제경제, 응용미시
유진아	연구위원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거시 금융경제, 계량경제
김동겸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재무관리
이경아	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김영주	담당역	단국대학교 행정학 전공	보험금융연구 편집

연구지원팀

- | 연구원 경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및 관리
- | 일반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 보험금융연구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출판관리
-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행사 운영
- | 각종 계약 체결 및 관리
- | 사무실 비품, 물품, 차량의 조달 및 관리
- | 결산, 인사, 교육, 복리후생제도 기획 및 입안
- | 예산의 수립·운영 및 통제
- | 의전 및 비서업무
- |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 홈페이지, 인터넷, 사무관리전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 도서·자료의 수집, 구입, 관리 및 해외연수·출장자료의 관리
- | 연구조사정보 DB의 구축 및 도서회원제 운영 및 관리
- | 문서수발, 통제, 보존 및 관리
- | 기타 연구원내 사업추진과 관련한 일반업무 및 행정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업무분야
김선아	수석담당역/팀장	연구지원 업무 총괄
홍성연	수석담당역	회계, 예산, 세무 업무
이상윤	선임담당역	계약, 구매, 행사, 서무, 출판관리, 자산관리
김형진	선임담당역	인사, 교육, 규정, 복리후생

6.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간행물 명	발간 주기	주 관
정기간행물	보험금융연구	연 4회(2,5,8,11월)	금융제도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연간(3월)	동향분석실
	Korean Insurance Industry	연간(7월)	동향분석실
	보험동향	계간(3, 6, 9, 12월)	동향분석실
	재무분석	계간(1, 4, 7, 10월)	재무분석실
	KIRi Weekly	주간	동향분석실

	보고서 명	저 자
용역보고서	외국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제도화방안	이기형 외
	인구고령화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이기형 외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이기형 외
	채무이행보증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진 익 외
	보험회사 지배구조 합리화방안 연구	오영수 외
	미국 금융개혁법과 보험규제에 대한 시사점 연구	오영수 외

2010 연차보고서

발 행 인 김대식
편집위원장 안철경
편 집 위 원 이경희, 조영현
편 집 실 무 박정희, 서성민
제 작 경성문화사 (786-2999)
발 행 일 2011. 3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